

발간등록번호

한사협-2012-10-106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2012. 12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2012. 12.

책임연구원 김 제 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유 재 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효 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위촉연구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사업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조 성 철

발 간 사



2012년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복지담론이 난립한 해였습니다. 최근 시류를 살펴보면 가히 복지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한 시기입니다.

특히, 1970년 ‘사회복지사업’ 규정 법률 도입 31년만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권익을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시행한 원년이기도 했고, 이 법률을 근거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을 근거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복지전달시스템의 왜곡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직접 서비스 전달의 시대를 지나 서비스의 품질과 생산 인프라 개발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는 것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이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정책기능과 정보기능 측면에서 활용할 풍부한 자료를 생산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분보장과 생활안정을 법률로 책임지기 시작했지만, 사회복지사 관련 근로, 권익, 전문성 등 기초적 실태 및 처우와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자료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처우 및 지위, 전문성 등과 관련한 데이터 관리 방식을 대내·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통합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는 57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그 자격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약 11%에 해당하는 6만여명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인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점차 활동 영역 및 직무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욕구 및 그에 대응한 조직적 측면에서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2012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을 발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 실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과 실천이라는 각 영역 간의 긴밀한 연계는 물론, 미래전망의 틀거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통계연감을 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보건복지부와 데이터 제공 또는 직접 참여를 통해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연감이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활용방안과 복지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조성철

이용자를 위한 안내

1. 이 통계연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으로 매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행하는 ‘2012년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 조사 :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와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협회 내 기존 통계들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임
2. ‘2012년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 조사 :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는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모집단으로 하여 시설유형별, 지역별에 따른 비례층화표집에 의해 2012년 10월과 11월 기준으로 응답된 시설 196개소와 그 시설에서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1,209명에 대한 분석결과임. 2013년에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적 조사가 이루어지며, 두 유형 간 비교도 함께 수록할 예정임
3.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통계는 협회에서 수탁받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 보수교육, 현장실습 등의 Database 자료들과 대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취업 및 보수체계 등에 대해 발표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그 현황을 수록한 것임
4. 각 자료의 단위는 <표>나 <그림>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기되어 있으며, 자료 이용 시 각 주의 내용을 참고하고, 작성되는 원고 등에 반드시 본 통계연감에서 인용하였음을 표기할 것
5. 위의 자료들에 대한 원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전화 02-786-0845~7, 홈페이지 www.welfare.net)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차 례

제1부 _ 기초통계연감의 개요 및 구성

I. 통계연감 발간 목적	3
II. 통계연감의 필요성	4
1.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논의들	4
2. 통계연감의 필요성	6
III. 기초통계연감의 특징 및 구성	8
1. 기초통계연감의 특징	8
2. 기초통계연감의 구성	10

제2부 _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 조사 :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I.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13
II. 조사방법	18
III. 설문구성 및 내용	20
IV. 데이터분석	23
1. 시설용 분석	23
1) 응답시설의 특성	23
2) 종사자에 대한 보수지급실태 : 수당과 복리후생	35
3)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제언	45
2. 개인용 분석	51
1) 일반적 특성	52
2) 직무분석	63
3) 보수 및 근로실태	76

4) 인적자원	91
5) 건강상태	118
6) 업무소진 및 이직	121
7)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130
8)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134
V. 요약 및 제언	137

제3부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통계

I. 사회복지사 자격	147
1-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연도별 : 2003-2012	147
1-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 급수별, 연도별, 시도별 : 1996-2012	148
1-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 급수별, 성별, 연도별 : 2001-2012	149
1-4.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 급수별, 성별, 시도별	150
1-5.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급수별, 연도별, 시도별	151
1-6.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구분별 발급 - 월별 : 2012년 1-12월	152
1-7. 사회복지사 자격발급 불합격 사유 - 연도별, 월별 : 2008-2012	153
1-8. 사회복지사 민간 분야별 자격 발급 - 연도별 : 2005-2012	154
1-9.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신규취득 - 연도별 : 2002-2009	155
1-10.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등록누계 - 연도별 : 2002-2009	156
1-1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정원현황 - 시도별	157
II.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58
2-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희망대상자 - 연도별 : 2009-2012	158
2-2.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희망대상자 - 시설유형별	159
2-3.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희망대상자 - 성별	160
2-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록 교육강사 - 교육영역별, 종사영역별 : 2009-2012년	161
2-5.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강사 - 교육영역별, 종사영역별	162

2-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기관 - 시도별, 연도별 : 2009-2012	163
2-7.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집합교육 과정 - 월별	164
2-8. 2012년 보수교육 집합교육 과정 - 교육영역별, 평점별	165
Ⅲ.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및 실습	166
3-1. 전국 사회복지(관련) 전공개설 현황 - 연도별 비교 : 2007년, 2010년 ..	166
3-2. 사회복지 현장실습 평균 인원	167
3-3. 학교유형별 현장실습 인원(한 학기 평균)	168
3-4. 기관형태별 실습지도 인원	169
3-5. 기관형태별 실습시간	170
3-6. 기관형태별 실습기간	171
3-7. 기관형태별 평균 수퍼비전 시간	172
Ⅳ. 사회복지사 취업 및 종사영역	173
4-1.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 - 연도별 : 2009-2012	173
4-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연도별 : 2004-2011	174
4-3.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총원 규모 - 연도별 : 2012-2014	175
4-4. 2012년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현황	176
4-5.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종사자 수 - 연도별 : 2001-2011	177
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및 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복지종사자수 - 전국 및 시도별	178
4-7.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179
4-8.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기관 종사자	180
4-9. 사회복지 관련직 고용 전망	181
4-10. 사회복지시설 현황	182
4-11.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183
4-12.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아동복지시설	184
4-13.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	185
4-14.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정신보건, 부랑·노숙인복지시설	186
4-15.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기타 사회복지시설	187
4-16. 운영법인별 종합사회복지관 수 - 연도별, 시도별 : 2002-2011	188

V. 사회복지사 보수 및 근로환경	189
5-1. 산업평균에 따른 사회복지부문 종사자의 월평균임금 - 연도별 :	
2007-2011	189
5-2. 사회복지 관련직 직업정보	190
5-3. 사회복지 관련직 직업정보 - 월평균소득	191
5-4.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192
5-5.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193
5-6. 복지관(사회, 노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 사회복지직	194
5-7. 복지관(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 일반직	195
5-8. 2012년 복지관 직원 수당 지급기준	196
5-9.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97
5-10. 2012 미국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 MSW	198
5-11. 2012 미국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 BSW	199
VI.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0
6-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 성별	200
6-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 연령별	200
6-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 납입기간별	201
6-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 직종별, 구좌별	201
VII. 사회복지사 관련 기타 자료	202
7-1. 2010년 6.2 지방선거 당선 사회복지사	202
7-2.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참여	203

부록 _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 조사 설문지

1. 시설용 설문지	207
2. 개인용 설문지	211

그림 차례

[그림 1-1] 기초통계연감 발간 목적	3
[그림 1-2] 한국 사회복지사 제도의 변천 과정	5
[그림 1-3] 사회복지사 통계(데이터) 관리 방향	7
[그림 1-4] 연구 대상의 체계	9
[그림 2-1] 시설소재지	24
[그림 2-2] 시설 소재지의 권역별 현황	25
[그림 2-3] 시설 소속 기초지역별 현황	26
[그림 2-4] 도·농지역에 따른 시설 소재지 현황	27
[그림 2-5] 시설 관할의 광역별 현황	29
[그림 2-6] 시설 유형별 현황	31
[그림 2-7] 모법인 형태	32
[그림 2-8] 수당 제공여부	37
[그림 2-9] 복리후생 제공여부	39
[그림 2-10] 연장근로수당 지급 형태	41
[그림 2-11] 휴일근로수당 지급 형태	42
[그림 2-12] 퇴직금 지급형태	43
[그림 2-13] 급여 및 수당의 재원	44
[그림 2-14] 관리 운영의 어려움	46
[그림 2-15] 직원채용의 어려움	47
[그림 2-16] 인적자원 개발의 어려움	48
[그림 2-17]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노력	50
[그림 2-18] 응답자의 성별	52
[그림 2-19] 응답자의 연령	53
[그림 2-20] 응답자의 결혼상태	54
[그림 2-21] 응답자의 종교	55
[그림 2-22] 응답자의 학력	56
[그림 2-23]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57
[그림 2-24] 자격증 취득 경로	59
[그림 2-25] 직장 내 직위	60
[그림 2-26] 평균 직장 경력	63
[그림 2-27] 업무상 주된 대상	65
[그림 2-28] 업무의 비중	69
[그림 2-29]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82
[그림 2-30] 근무형태	87

[그림 2-31] 교대근무형태	88
[그림 2-] 고용형태	89
[그림 2-33] 현 직장 입사경로	92
[그림 2-34] 입사방법	96
[그림 2-35] 슈퍼비전의 빈도	99
[그림 2-36] 슈퍼비전의 유형	101
[그림 2-37] 직장만족도(평균)	103
[그림 2-38]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104
[그림 2-39]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105
[그림 2-40] 교육에 대한 만족도	106
[그림 2-41]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107
[그림 2-42]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08
[그림 2-43]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09
[그림 2-44]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0
[그림 2-45]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한 만족도	111
[그림 2-46] 승진 전망에 대한 만족도	112
[그림 2-47]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도	113
[그림 2-48]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114
[그림 2-49]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115
[그림 2-50]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116
[그림 2-51] 직장 만족도(종합)	117
[그림 2-52] 주관적 건강상태	119
[그림 2-53] 이직 경험	122
[그림 2-54] 이직의도 여부	126
[그림 2-55] 사회에서의 전문성 인식 정도	131
[그림 2-56] 처우개선의 주체	136

표 차례

〈표 2-1〉 표본설계	14
〈표 2-2〉 지역별 회수 현황	15
〈표 2-3〉 시설유형별 회수 현황	16
〈표 2-4〉 분석대상 사회복지사의 특성	17
〈표 2-5〉 조사대상 및 방법	18
〈표 2-6〉 연구 및 조사 과정별 기간	19
〈표 2-7〉 이전(지난 해) 설문 구성 및 내용	20
〈표 2-8〉 이번 연도의 설문 구성	21
〈표 2-9〉 사회복지시설용 설문내용	21
〈표 2-10〉 사회복지사 개인용 설문내용	22
〈표 2-11〉 시설 소재지의 광역별 현황	24
〈표 2-12〉 시설 소재지의 권역별 현황	25
〈표 2-13〉 시설 소속 기초지역별 현황	26
〈표 2-14〉 도·농지역에 따른 시설 소재지 현황	27
〈표 2-15〉 시설 관할의 광역별 현황	29
〈표 2-16〉 시설 소재지 및 관할지 비교	30
〈표 2-17〉 시설 유형별 현황	31
〈표 2-18〉 모법인 형태	32
〈표 2-19〉 종사자 현황	33
〈표 2-20〉 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34
〈표 2-21〉 예산규모	34
〈표 2-22〉 수당별 제공 현황	36
〈표 2-23〉 복리후생 제공여부	38
〈표 2-24〉 연장근로수당 지급 형태	40
〈표 2-25〉 휴일근로수당 지급 형태	42
〈표 2-26〉 퇴직금 지급 형태	43
〈표 2-27〉 급여 및 수당의 재원	44
〈표 2-28〉 관리 운영의 어려움	45
〈표 2-29〉 직원채용의 어려움	47
〈표 2-30〉 인적자원 개발의 어려움	48
〈표 2-31〉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노력	49
〈표 2-32〉 응답자의 성별	52
〈표 2-33〉 응답자의 연령	53
〈표 2-34〉 응답자의 결혼상태	54

〈표 2-35〉 응답자의 종교	55
〈표 2-36〉 응답자의 학력	56
〈표 2-37〉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57
〈표 2-38〉 자격증 취득경로	59
〈표 2-39〉 직장 내 직위	60
〈표 2-40〉 자격 등급에 따른 직장 내 직위	61
〈표 2-41〉 가구 총소득 및 총지출	62
〈표 2-42〉 직장 경력	63
〈표 2-43〉 업무상 주된 대상	64
〈표 2-44〉 성별에 따른 업무대상자	66
〈표 2-45〉 연령에 따른 업무대상자	67
〈표 2-46〉 업무의 비중	68
〈표 2-47〉 성별에 따른 담당 업무의 비중	71
〈표 2-48〉 자격 등급에 따른 담당 업무 비중	72
〈표 2-49〉 직장 내 직위에 따른 담당 업무 비중	73
〈표 2-50〉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74
〈표 2-51〉 자격 등급에 따른 근무시간	75
〈표 2-52〉 연봉총액	76
〈표 2-53〉 성별에 따른 연봉	77
〈표 2-54〉 월 기본급 수준	78
〈표 2-55〉 특성에 따른 월 기본급	79
〈표 2-56〉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81
〈표 2-57〉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83
〈표 2-58〉 성별에 따른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85
〈표 2-59〉 실제 연봉액과 적정 연봉수준의 차이	86
〈표 2-60〉 근무형태	87
〈표 2-61〉 교대근무형태	88
〈표 2-62〉 고용형태	89
〈표 2-63〉 자격 등급에 따른 고용형태	90
〈표 2-64〉 현 직장 입사경로	91
〈표 2-65〉 성별에 따른 입사경로	93
〈표 2-66〉 연령에 따른 입사경로	94
〈표 2-67〉 입사방법	95
〈표 2-68〉 성별에 따른 입사방법	97

〈표 2-69〉 슈퍼비전의 빈도	98
〈표 2-70〉 슈퍼비전의 유형	100
〈표 2-71〉 직장 만족도	102
〈표 2-72〉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104
〈표 2-73〉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105
〈표 2-74〉 교육에 대한 만족도	106
〈표 2-75〉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107
〈표 2-76〉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08
〈표 2-77〉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09
〈표 2-78〉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0
〈표 2-79〉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한 만족도	111
〈표 2-80〉 승진 전망에 대한 만족도	112
〈표 2-81〉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도	113
〈표 2-82〉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114
〈표 2-83〉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115
〈표 2-84〉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116
〈표 2-85〉 주관적 건강상태	118
〈표 2-86〉 지각된 스트레스	119
〈표 2-87〉 자아탄력성	120
〈표 2-88〉 주관적 행복도	120
〈표 2-89〉 소진	121
〈표 2-90〉 이직 경험	122
〈표 2-91〉 이직 경험(직전 직장 → 현 직장)	123
〈표 2-92〉 이직 사유	125
〈표 2-93〉 이직의도 여부	126
〈표 2-94〉 이직을 희망하는 분야	127
〈표 2-95〉 이직의도 사유	129
〈표 2-96〉 주관적 전문성 인식	130
〈표 2-97〉 사회에서의 전문성 인식 정도	131
〈표 2-98〉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133
〈표 2-99〉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	135
〈표 2-100〉 처우개선의 주체	136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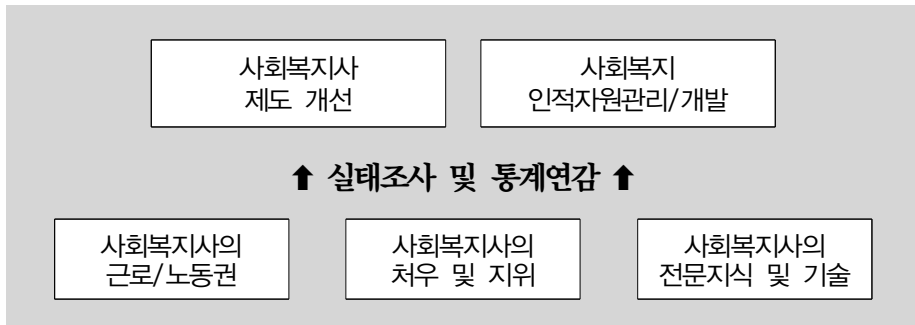
기초 통계연감의 개요 및 구성



I. 통계연감 발간 목적

□ 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의 발간을 통해

- 첫째,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근로, 권익, 전문성 등의 기초적 실태 및 처우와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자료 활용
- 둘째,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욕구 및 그에 대응한 조직적 측면에서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인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제공
- 넷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 실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과 실천 간 긴밀한 연계에 의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방안들의 제시 등을 유도



[그림 1-1] 기초통계연감 발간 목적

-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근로/노동권, 처우 및 지위, 전문성 등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 방식을 대내·외적으로 정책기능과 정보기능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통합화하고자 함
- 정책기능 : 인적자원개발 정책, 신규 및 재진입 인력의 정책, 사회복지부문 인력수급계획 등
- 정보기능 :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정보, 직업연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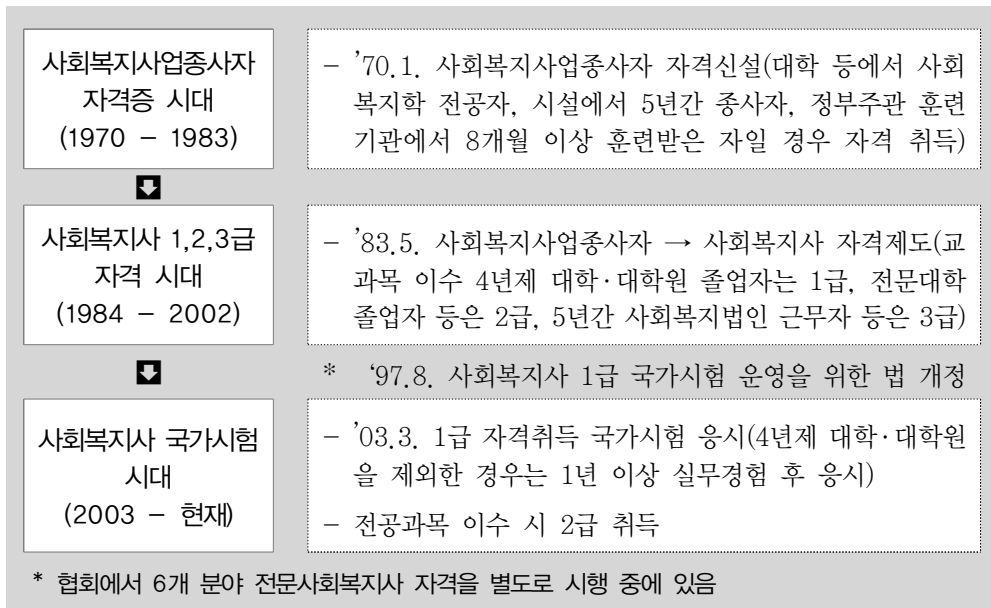
Ⅱ. 통계연감의 필요성

1.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논의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2012년 12월 말 현재 총 560,530명에 이르며, 약 11%에 해당하는 61,355명이 그 자격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음¹⁾
 -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점차 활동 영역 및 직무 범위도 확대 및 다양화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는 전국적으로 1일 평균 600만 명의 서비스 이용자들과 만나며 국민의 최일선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핵심 축으로서 전담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되고 있듯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유일한’ 사회복지전문가임
 - 정부의 <한국직업표준분류>에서도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됨
 -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는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를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직으로 규정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현재와 같은 형태의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2005년부터 관련법령에 의해 필수이수과목으로 규정되었으며, 보수교육은 2009년부터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1) 또한,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약 10,689명(2011년 말 현재)에 이릅니다

-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자격이 신설되었고, 1983년 5월에는 현재의 사회복지사 제도의 틀과 같은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으로 개편(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면 자격취득, 대학원4년제 1급, 2년제 대학 3급)되었다가 1997년 8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에 한해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법 개정(대학원4년제2년제 졸업 후 2급, 1급은 국가시험체제로 개편)이 이루어져 2003년도에 제1회 1급 국가시험이 치러졌음



[그림 1-2] 한국 사회복지사 제도의 변천 과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필수과목²⁾으로 이수하도록 2004년 7월 31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호에서 규정하였음
-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단서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

2) 2005년부터 대학원 및 특수 대학원에서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필수이수과목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총 10과목이며, 대학원은 이 중 6과목 이상(대학에서 기이수한 경우 4과목 이상)으로 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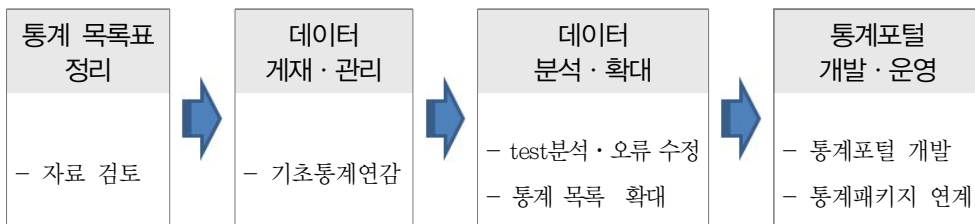
회복지사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올 해에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 의무적인 보수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었음³⁾

- 그러나 오랜 동안 사회복지시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 처우 및 지위와 관련하여 과다한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임금, 인건비, 수당 등) 및 사회적 지위 역시 낮은 수준에 있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오랜 동안 지적되어 왔음. 최근에는 고용형태까지 불안정한 형태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인력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초과된 상태에서 사회복지노동시장의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아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등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남.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의 효과성에도 문제제기들이 있는 상태임
 -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사회복지시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나 직무몰입, 스트레스, 소진, 그리고 이직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최근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자격제도부터 교육훈련제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3) 동 항에서는 보수교육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통계연감의 필요성

- 그 동안 지적되어 온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또는 합리적인 사회복지사 제도의 모색 및 내실 있는 실행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초자료가 체계적인 주제 아래 과학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빈약한 상태임
 - 통계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포털 등을 운영 중이지만, 체계적 측면이나 범위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며 활용도 역시 낮은 한계가 있음
 - 일부 국책 또는 민간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특정의 주제에 한해 부정기적으로 관련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자료집 등으로 발간되고 있으나, 일반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 인적자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는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권익·복지, 전문성·역량강화, 처우 등에 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조사 및 생산되는 Raw Data가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시계열 및 패널 분석 곤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에서는 기초통계연감 발간과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회복지사 제도와 관련된 통계(데이터)를 [그림 1-3]과 같은 방향에서 관리·운영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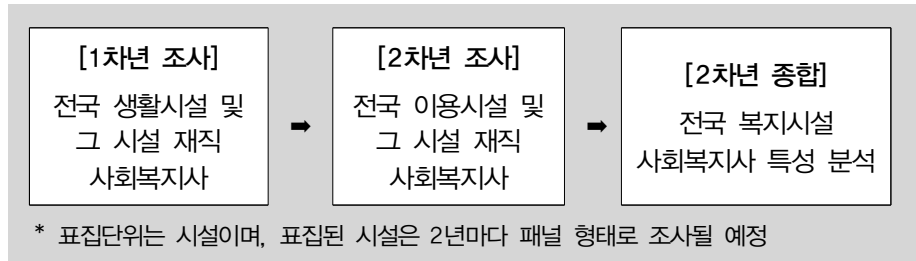
[그림 1-3] 사회복지사 통계(데이터) 관리 방향

Ⅲ. 기초통계연감의 특징 및 구성

1. 기초통계연감의 특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7년 1월 「한국사회복지 근로환경백서」를 발간하였고, 2010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매년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로 및 인적자원 등과 관련된 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을 발간해 오고 있음
- 2007년 「한국사회복지 근로환경백서」 발간 : 2006년 8월 한 달 동안 전국 사회복지시설 1,138개를 표집하여 그 시설에서 재직하는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 6,504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활용(회수율 63.5%)하여 분석한 ‘사회복지근로자 기초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 2010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발간 : 2010년 11월 11-19일 동안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 사회복지사의 이메일 6만 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응답(회수율 3.82%)된 2,292명을 분석한 ‘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
- 2011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발간 :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2011년 12월 2-18일 동안 응답(회수율 4.0%)된 2,479명을 분석한 ‘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
- 이번 연도에는 2012년 2월 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가 설립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자격제도 등의 관련 제도의 개선,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을 확대·개편
-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은 기존과 달리, 4가지 측면에서 발전적 특징을 보임

- 첫째, 실태조사의 방법을 우편으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해 격년으로 각각 조사하되,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조사방법론에 근거한 표집단위를 시설표집으로 설계하여 체계적 과정에 따라 표집 및 회수하여 자료의 타당성 및 일반화를 제고하였음



[그림 1-4] 연구 대상의 체계

- 둘째, 기존 유사 패널들과 달리 본 조사에서 표집된 시설은 2년마다 패널 형태로 조사될 예정으로 표집된 시설의 특성과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사회복지인적자원과 관련된 조직적, 개인적 요인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음
 - 셋째, 측정도구인 설문지에서 척도의 구성을 선행연구 등에 의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대폭 변경 및 확대하여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자가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음
 - 넷째, 서베이된 자료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내부적 자료 및 타 기관의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3부로 수록하여 “통계연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⁴⁾
- 이 자료들이 대내·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되길 바라며, 또한 사회복지인적자원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나 실천가 등에게도 활용되기를 바람

4) 이 자료는 매월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에서 데이터에 대한 클리닝 및 2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데이터(raw data)를 ‘통계포털’로 운영 및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

2. 기초통계연감의 구성

□ 본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은 제3부로 구성되었음

○ 제1부 : 기초통계연감의 개요 및 구성

- 기초통계연감 발간 목적
- 사회복지사 제도 개선 논의와 기초통계연감의 발간 필요성
- 기초통계연감의 특징 등

○ 제2부 : 사회복지사 인적자원 특성 조사 :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 조사방법
- 설문구성 및 내용
- 데이터분석 등
 - 사회복지시설용 : 시설의 특성, 종사자에 대한 보수지급실태, 인적 자원개발 및 처우 개선 등
 - 사회복지사 개인용 : 일반적 특성, 직무분석, 보수 및 근로실태, 인적자원, 건강상태, 업무소진 및 이직, 전문성, 처우개선 등

○ 제3부 : 사회복지사 인적자원 관련 통계

- 사회복지사 자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및 실습
- 사회복지사 취업 및 종사영역
-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CHAPTER

2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 조사

-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I.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 전국의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시설에서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 1,251개소 중 비례층화표집을 통하여 314개소를 표집
 - 1단계 : 전국의 사회복지생활시설 대상으로 대상자별(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보건, 부랑인 등) / 유형별(거주시설, 요양원, 일시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작업장 등)로 시설 분류
 - 2단계 : 각 시설의 관할지역(광역자치단체)별 시설 수에 비례하여 표본 수 선정
 - 3단계 : 지역별 표본 수에 따라 무작위로 조사 대상 시설 선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
 - 설문지는 사회복지시설용과 사회복지사 개인용 설문지로 각각 구분하여 시설용은 1부, 개인용은 각 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수에 비례하여 협조공문, 반송용 우편봉투와 함께 발송
 - 각 시설에는 조사답례품인 볼펜을 동봉한 설문지의 수에 비례하여 함께 발송
- 우편 발송 후, 일주일이 지난 다음 회수되지 않는 시설들을 상대로 유선전화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 총 196개소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설문지에 응답하여 회신함
 - 시설용 설문지의 경우 응답된 196개소가 분석대상이 됨¹⁾

1) 본 조사는 회수율을 높이고 설문내용에 응답자들이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에 의한 서베이방법이 적합하나, 예산 등의 제한으로 우편조사를 선택하게 되어 시설용의 응답 경우 모집단의 특성에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응답 특성을 보이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차후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에서는 표집된 시설에 대한 패넬조사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다만, 본 조사가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인용의 경우 전체 시설의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모집단 특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개인용 설문지의 경우 196개소 시설에서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1,215명이 응답하였으나 무응답 항목이 많은 설문지 6건을 제외한 1,209건이 최종 분석대상이 됨

〈표 2-1〉 표본설계

(단위 : 개소)

구분	노인1)		아동2)		장애인3)		정신보건4)		부랑인5)	
	시설수	표집	시설수	표집	시설수	표집	시설수	표집	시설수	표집
합계	397	99	280	70	452	113	85	21	37	11
서울	31	10	47	15	43	12	7	2	4	1
부산	7	3	22	6	24	7	3	1	3	1
대구	5	2	22	6	17	4	3	1	1	—
인천	23	6	11	2	20	6	2	1	1	—
광주	3	2	11	3	14	4	5	1	1	—
대전	8	3	14	4	16	5	9	2	1	1
울산	2	2	1	1	7	3	1	1	—	—
경기	141	18	30	6	106	25	11	2	3	1
강원	31	8	10	2	24	5	2	1	3	1
충북	33	7	13	4	22	6	6	1	2	1
충남*	29	7	15	3	26	5	14	2	1	—
전북	16	7	16	4	39	9	7	2	3	1
전남	27	8	23	6	19	6	5	1	6	1
경북	25	9	15	2	35	7	5	1	2	1
경남	14	6	25	5	28	7	4	1	4	1
제주	2	1	5	1	12	2	1	1	2	1

주) 지역은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을 기준으로 함

* : 세종시 포함

- 1) 노인 : 양로시설, 노인공공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노인복지생활시설
- 2) 아동 : 양육,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 등 아동 및 청소년복지생활시설
- 3) 장애인 :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중증, 장애영유아 등 장애인복지생활시설
- 4) 정신보건 : 정신요양, 사회복지귀(입소 및 공동) 등 정신보건생활시설
- 5) 부랑/노숙인생활시설

출처 : 시설 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포털에 등록된 사회복지생활시설임

〈표 2-2〉 지역별 회수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모집단(비율)	표집(비율)	회수(비율)	회수율
합계	1,251(100.0)	314(100.0)	196(100.0)	62.4
서울	132(10.6)	40(12.7)	29(14.8)	72.5
부산	59(4.7)	18(5.7)	13(6.6)	72.3
대구	48(3.8)	13(4.1)	10(5.1)	77.0
인천	57(4.6)	15(4.8)	7(3.6)	46.7
광주	34(2.7)	10(3.2)	7(3.6)	70.0
대전	48(3.8)	15(4.8)	6(3.1)	40.0
울산	11(0.9)	7(2.2)	3(1.5)	42.8
경기	291(23.3)	52(16.6)	33(16.8)	63.5
강원	70(5.6)	17(5.4)	9(4.6)	53.0
충북	76(6.1)	19(6.1)	9(4.6)	47.4
충남*	85(6.8)	17(5.4)	11(5.6)	64.7
전북	81(6.5)	23(7.3)	12(6.1)	52.2
전남	80(6.4)	22(7.0)	15(7.7)	68.2
경북	82(6.6)	20(6.4)	11(5.6)	55.0
경남	75(6.0)	20(6.4)	16(8.2)	80.0
제주	22(1.8)	6(1.9)	5(2.6)	83.3

주) * : 세종시 포함

〈표 2-3〉 시설유형별 회수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모집단	표본	회수	회수율
합계	1,251(100.0)	314(100.0)	196(62.4)	62.4
노인복지생활시설	397(31.7)	99(31.5)	42(21.4)	42.4
아동·청소년생활시설	280(22.4)	70(22.3)	50(25.5)	70.0
장애인복지생활시설	452(36.1)	113(36.0)	81(41.3)	72.6
정신보건복지시설	85(6.8)	21(6.7)	13(6.6)	61.9
부랑/노숙인복지시설	37(3.0)	11(3.5)	10(5.1)	90.9

-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13,284명 중 위와 같이 표집방법으로 회수된 시설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1,209명으로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임

〈표 2-4〉 분석대상 사회복지사의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	남성	371	30.8
	여성	834	69.2
연령	20대	316	26.8
	30대	461	39.1
	40대	298	25.3
	50대	97	8.2
	60세 이상	6	0.5
배우자 유무	있음	582	48.9
	없음	662	51.1
	기타	13	1.1
종교 유무	있음	861	72.5
	없음	326	27.5
학력	고교 졸업 이하	21	1.8
	대학 졸업	1,044	87.5
	대학원 졸업	129	10.9
자격 등급	1급	372	31.4
	2급	807	68.0
	3급	7	0.6

Ⅱ. 조사방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조사답례품과 반송용 봉투 동봉)
 - 기존의 웹설문조사 방식의 경우 낮은 비용에 설문자와 응답자 모두가 비교적 간단하게 설문을 실시할 수 있으나 설문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웹설문조사보다는 우편 조사 방식을 채택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을 주기로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분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표 2-5〉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년도	2012년	2013년
대상	사회복지 생활시설 및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조사방법	우편조사	우편조사

* 2014년 이후부터는 조사의 신뢰성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조사를 기반으로 대상 및 방식을 재설계 또는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음

- 조사기간 : 2012년 10월 1일 ~ 11월 10일

□ 조사과정

- 조사 기획 및 조사대상 표본 설계(전국 모집단을 통한 표본 일반화)
- 설문지 디자인 및 자문(교수 및 시설 관계자 등 4인)
 - 사회복지사의 근로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소진, 전문성 등의 척도 보완
- 설문 조사(우편조사)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시설별 유선으로 협조 요청
- 설문지 데이터 코딩 및 데이터 클리닝 작업

- 데이터 분석
- 보고서 작성

〈표 2-6〉 연구 및 조사 과정별 기간

사업내용	4-6월	7-9월	10-11월	11-12월	12월
- 연구 세부내용 기획 - 문헌 및 관련 자료 조사					
- 설문지 구성 - 표본설계					
- 서베이 실시(우편 발송 및 회수)					
-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발간					

Ⅲ. 설문구성 및 내용

- 지난 해까지는 사회복지사 개인용으로만 설문내용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나, 이번 연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용과 사회복지사 개인용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설문내용을 구성
 - 시설용은 시설의 재무 또는 인사 담당자가 작성
 - 개인용은 그 시설에 재직하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직접 작성

〈표 2-7〉 이전(지난 해) 설문 구성 및 내용

항목	설문내용
일반현황	성별, 혼인여부, 연령, 종교, 최종학력, 전공분야, 자격증 급수, 직위, 종사 지역, 근무기관, 운영법인 형태
근로현황 및 근무조건	재직기간, 첫 직장 입사경로 및 입사방법, 고용형태, 근무형태, 사회보험 가입여부, 직장경력, 분야별 경력, 사회복지분야 외 경력, 주업무대상, 업무 중요도, 업무 비중, 현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산전휴가, 육아 휴직
근로환경	근로만족도, 희망임금수준, 이직경험, 이직의사, 복리후생, 교육혜택여부, 교육 현황, 희망분야, 희망시설유형, 선호대상별 유형
사회복지사 전문성	사회복지사 전문성 인식, 전문성 향상 방법, 보수교육 만족도, 희망교육분야
제언	사회복지사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과제

〈표 2-8〉 이번 연도의 설문 구성

사회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 개인용
시설의 특성 종사자에 대한 보수지급실태 종사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및 처우 개선	일반적 특성 직무 분석 보수 및 근로실태 인적자원 건강상태 업무소진 및 이직 전문성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용에 대한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9〉 사회복지시설용 설문내용

구분	내용
시설의 특성	시설 소재지, 시설 관할지, 시설 유형, 주요 서비스 대상자, 모법인 형태, 종사자 현황(전체 종사자 수, 관리자 수, 실무자 수, 사회복지사 수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예산규모(세입/세출)
보수 실태	제공하는 수당, 급여 외 복리후생, 연장근로수당 지급형태, 휴일근로수당 지급형태, 퇴직금 지급형태, 급여 및 수당의 재원
처우개선	시설 관리운영의 어려움, 직원 채용의 어려움, 인적자원개발의 어려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제언

□ 사회복지사 개인용에 대한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10〉 사회복지사 개인용 설문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사항	성별, 출생년월, 결혼여부, 종교, 최종학력,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및 취득경로, 직장 내 직위, 월평균 가구 총소득 및 총지출
직무분석	직장경력(사회복지분야의 경력 / 현 직장 재직기간), 업무 상 주된 대상, 담당업무 비중,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보수 및 근로실태	연봉총액, 기본급,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적정 연봉수준, 근무형태, 교대근무형태, 고용형태
인적 자원	현 직장 입사경로, 입사방법, 슈퍼비전의 빈도, 슈퍼비전의 유형, 현 직장 만족도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된 스트레스(Cohen 등이 개발한 척도 사용), 자아탄력성(Block & Kremen이 개발한 척도 사용), 주관적 행복도
업무소진 및 이직	업무 소진(Maslach & Jackson이 개발한 척도 사용), 이직 경험, 직전 직장에서의 이직 형태, 이직 사유, 이직의도 여부, 이직의도에 대한 희망 분야, 이직의도에 대한 사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주관적 전문성 인식, 사회에서의 전문성 인정 정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 처우개선의 주체, 제언

IV. 데이터분석

1. 시설용 분석

- 전국 314개 사회복지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발송하여, 설문에 응답한 196개 사회복지시설(회수율 62.4%)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시설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복리후생을 중심으로 보수지급실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이 조사되었음

1) 응답시설의 특성

(1) 시설 소재지의 광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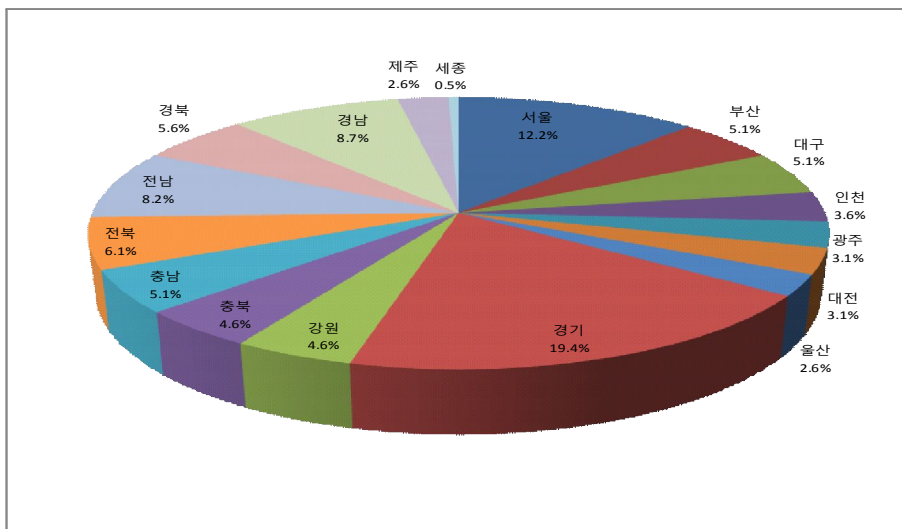
- 시설 소재지의 35.2%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편중 격차 현상이 큼
- 경기도에 가장 많은 38개소(19.4%), 그 다음 서울시에 24개소(12.2%)로 소재하고 있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약 30% 이상이 경기와 서울에 위치
 - 이어 경남 17개소(8.7%), 전남 16개소(8.2%), 전북 12개소(6.1%), 경북 11개소(5.6%), 부산 10개소(5.1%), 대구 10개소(5.1%), 충남 11개소(5.6%), 강원 9개소(4.6%), 충북 9개소(4.6%), 인천 7개소(3.6%), 광주 6개소(3.1%), 대전 6개소(3.1%), 울산 5개소(2.6%), 제주 5개소(2.6%)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1〉 시설 소재지의 광역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서울	24	12.2
부산	10	5.1
대구	10	5.1
인천	7	3.6
광주	6	3.1
대전	6	3.1
울산	5	2.6
경기	38	19.4
강원	9	4.6
충북	9	4.6
충남*	11	5.6
전북	12	6.1
전남	16	8.2
경북	11	5.6
경남	17	8.7
제주	5	2.6
합계	196	100.0

* 세종 1개소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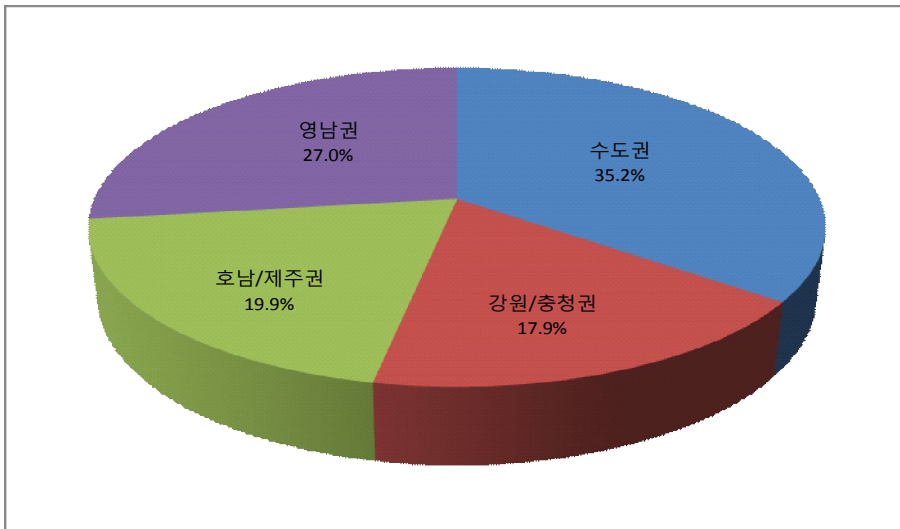
[그림 2-1] 시설소재지

- 시설 소재지를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69개소(35.2%)로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53개소(27.0%), 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39개소(19.9%), 강원/충청권(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35개소(17.9%)의 순

〈표 2-12〉 시설 소재지의 권역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수도권	69	35.2
강원/충청권	35	17.9
호남/제주권	39	19.9
영남권	53	27.0
합계	196	100.0



[그림 2-2] 시설 소재지의 권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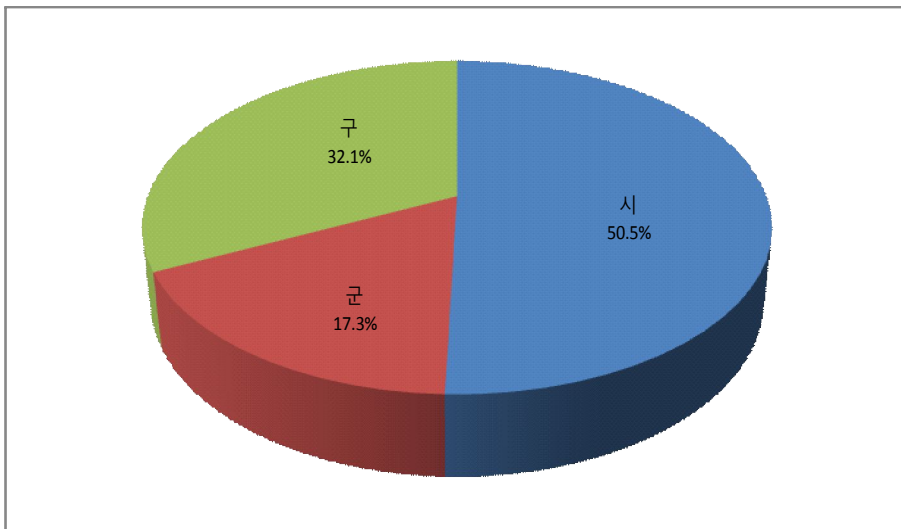
(2)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역별 현황

- 시설의 소재지의 현황을 시, 군, 구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로 살펴보면, 시 > 구 > 군의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 중 시의 형태는 99개소(50.5%), 구의 형태는 63개소(32.1%), 군의 형태는 34개소(17.3%)로 응답됨

〈표 2-13〉 시설 소속 기초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시	99	50.5
군	34	17.3
구	63	32.1
합계	1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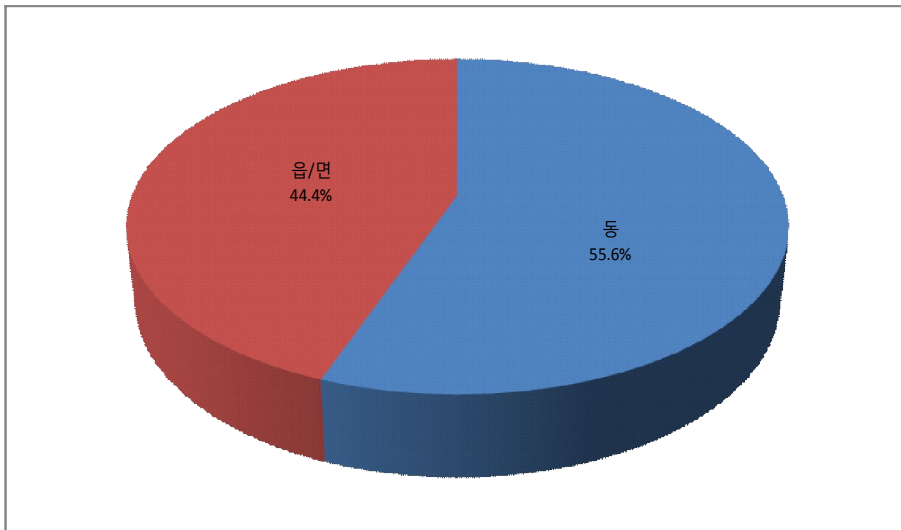
[그림 2-3] 시설 소속 기초지역별 현황

- 도시(동) 및 농어촌(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동’ 지역이 109개소 (55.6%), ‘읍/면’ 지역이 87개소(44.4%)로 응답

〈표 2-14〉 도·농지역에 따른 시설 소재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퍼센트
동	109	55.6
읍/면	87	44.4
합계	196	100.0



[그림 2-4] 도·농지역에 따른 시설 소재지 현황

(3) 시설의 관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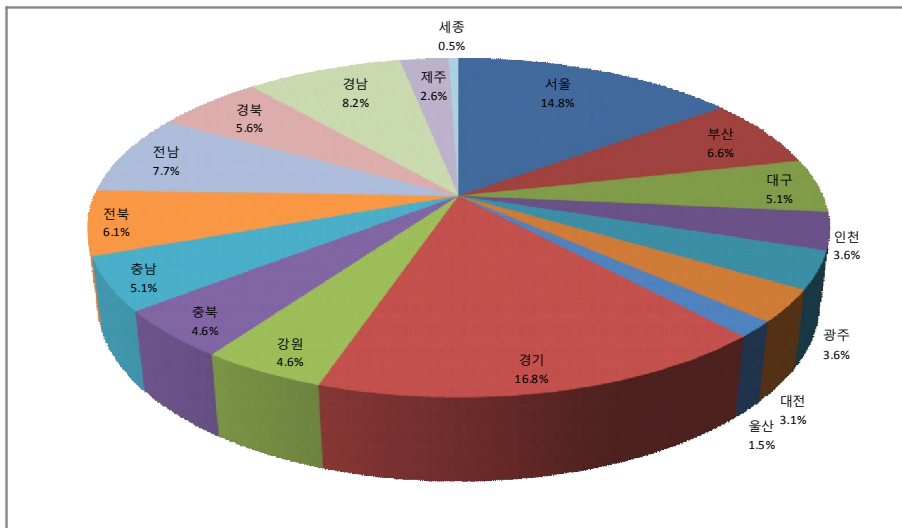
- 시설 관할지의 경우 경기도가 33개소(1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이어 서울이 29개소(14.8%), 경남이 16개소(8.2%), 전남이 15개소(7.7%), 부산이 13개소(6.6%), 전북이 12개소(6.1%), 경북이 11개소(5.6%), 대구가 10개소(5.1%), 충남이 11개소(5.6%), 강원이 9개소(4.6%), 충북이 9개소(4.6%), 인천이 7개소(3.6%), 광주가 7개소(3.6%), 대전이 6개소(3.1%), 제주가 5개소(2.6%), 울산이 3개소(1.5%) 순으로 응답

〈표 2-15〉 시설 관할의 광역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서울	29	14.8
부산	13	6.6
대구	10	5.1
인천	7	3.6
광주	7	3.6
대전	6	3.1
울산	3	1.5
경기	33	16.8
강원	9	4.6
충북	9	4.6
충남*	11	5.6
전북	12	6.1
전남	15	7.7
경북	11	5.6
경남	16	8.2
제주	5	2.6
합계	196	100.0

* 세종 1개소 포함



[그림 2-5] 시설 관할의 광역별 현황

【시설 소재지와 시설 관할지 비교】

- 서울 및 6대 광역시 내에 68개소(34.7%)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설 수는 75개소(38.3%)임
- 따라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의 수에 비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을 관할하는 수가 더 많음

〈표 2-16〉 시설 소재지 및 관할지 비교

(단위 : 개소, %)

지역	시설 소재지		시설 관할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24	12.2	29	14.8
부산	10	5.1	13	6.6
대구	10	5.1	10	5.1
인천	7	3.6	7	3.6
광주	6	3.1	7	3.6
대전	6	3.1	6	3.1
울산	5	2.6	3	1.5
경기	38	19.4	33	16.8
강원	9	4.6	9	4.6
충북	9	4.6	9	4.6
충남	10	5.1	10	5.1
전북	12	6.1	12	6.1
전남	16	8.2	15	7.7
경북	11	5.6	11	5.6
경남	17	8.7	16	8.2
제주	5	2.6	5	2.6
세종	1	0.5	1	0.5
합계	196	100.0		

(4) 시설 유형

□ 장애인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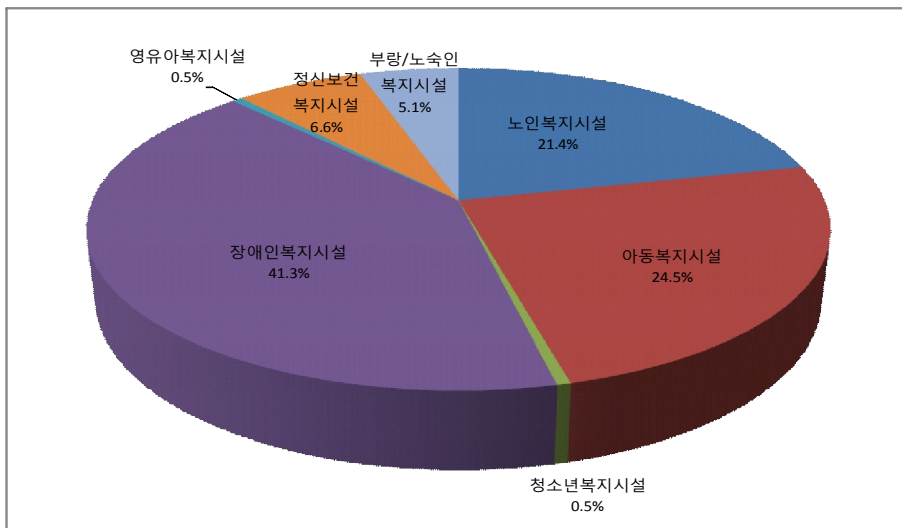
○ 각 시설별 유형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81개소(4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50개소(25.5%), 노인복지시설은 42개소(21.4%), 정신보건복지시설은 13개소(6.6%), 부랑/노숙인복지시설은 10개소(5.1%)

〈표 2-17〉 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노인복지시설	42	21.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50	25.5
장애인복지시설	81	41.3
정신보건복지시설	13	6.6
부랑/노숙인복지시설	10	5.1
합계	196	100.0



[그림 2-6] 시설 유형별 현황

(5) 모법인 형태

□ 시설 운영법인의 다수가 사회복지법인(82.7%)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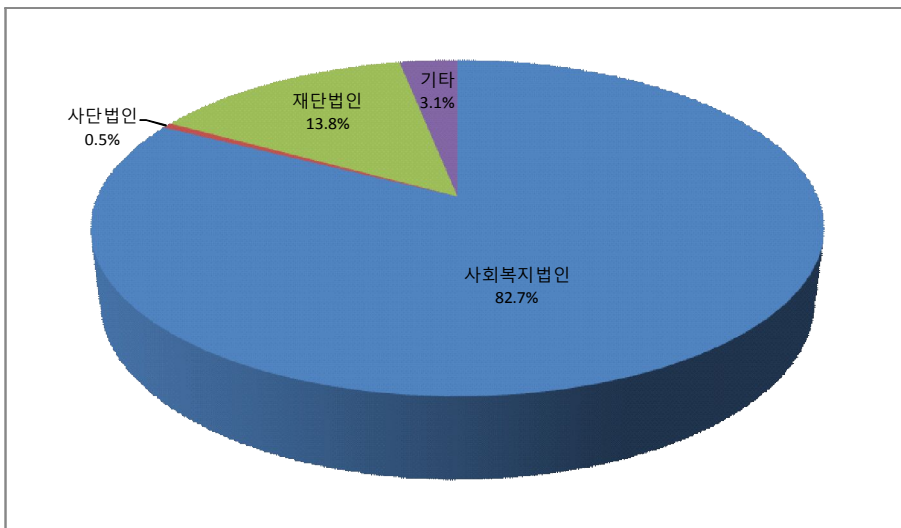
○ 시설을 운영하는 모법인의 형태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가 162개소(82.7%)로 거의 모든 시설이 해당되고, 재단법인은 27개소(13.8%), 기타는 6개소(3.1%), 사단법인은 1개소(0.5%)로 응답

- 기타로는 의료법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개인시설 등이 있었음

〈표 2-18〉 모법인 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사회복지법인	162	82.7
사단법인	1	0.5
재단법인	27	13.8
기타	6	3.1
합계	196	100.0



[그림 2-7] 모법인 형태

(6) 종사자 현황

- 시설종사자의 수는 시설 1개소 당 평균 31.2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약 1명이 과부족 상태이며, 현원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 대상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정원의 평균인원은 32명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현원의 평균은 31.2명으로 기관별로 종사자의 정원에 비해 약 1명이 과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종사자 중 정규직 인원의 평균은 30.3명이었으며, 비정규직 인원의 평균은 약 0.5명으로 시설 내 다수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정규직 종사자 중 시설 내 관리자의 평균 인원은 4.5명이었으며, 정규직 실무자의 평균인원은 26명이었음
 - 시설 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평균 16명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전체 종사자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수준인 것으로 추정

〈표 2-19〉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사자 정원	32.02	26.164	2	204
종사자 현원	31.18	25.542	2	204
정규직 종사자(전체)	30.34	24.990	1	201
정규직 종사자(관리자)	4.48	4.838	1	59
정규직 종사자(실무자)	25.97	24.383	0	194
정규직 종사자(사회복지사)	16.04	13.758	0	63
비정규직 종사자(전체)	0.45	1.506	0	12
비정규직 종사자(관리자)	0.03	0.231	0	2
비정규직 종사자(실무자)	0.37	1.400	0	12
비정규직 종사자(사회복지사)	0.06	0.425	0	4

【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 시설 유형에 따른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평균 43.99명 (이하 평균 인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랑/노숙인복지시설 37.10명, 정신보건 복지시설 26.15명, 아동복지시설 24.60명, 노인복지시설 14.41명의 순

〈표 2-20〉 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노인복지시설	41	14.41	8,826	3	49
아동·청소년복지시설	47	24.60	29,661	2	204
장애인복지시설	81	43.99	22,293	13	138
정신보건복지시설	13	26.15	12,928	4	48
부랑/노숙인복지시설	10	37.10	36,883	12	118

(7) 예산규모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예산규모(2012년 당초 예산 기준)는 세입의 경우 평균 약 18억 7천만원, 세출의 경우 평균 약 18억 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예산규모의 범위가 최소 3,500만원에서 최대 171억원까지 나타나 시설 간 규모 편차가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 2-21〉 예산규모

(기준 : 2012년 당초 예산, 단위 : 원)

구분	시설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세입규모	168	1,866,852,266.16	1,903,731,755.473	35,000,000	17,149,943,000
세출규모	168	1,857,552,785.50	1,906,510,448.630	35,000,000	17,149,943,000

2) 종사자에 대한 보수지급실태 : 수당과 복리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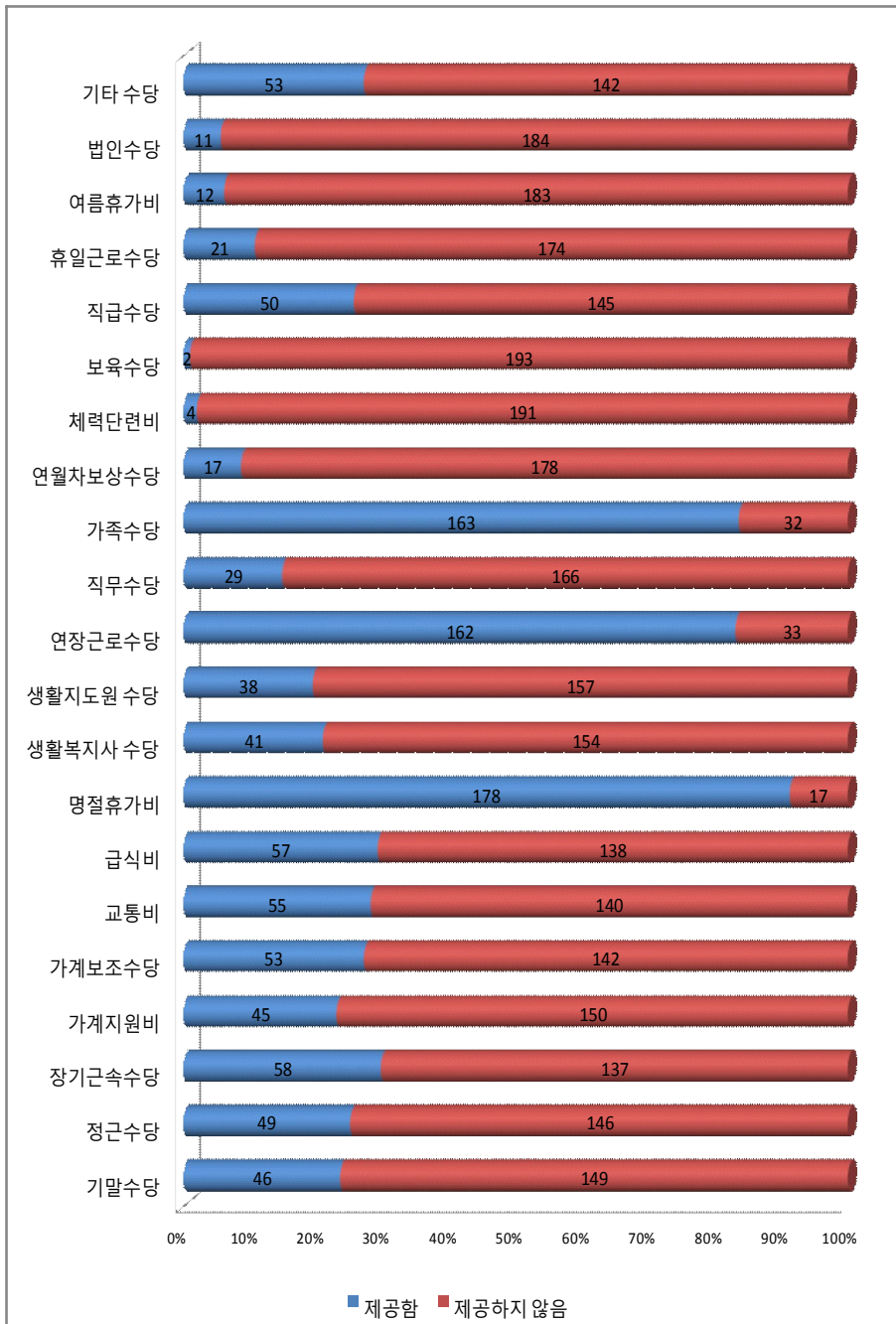
(1) 수당제공 여부

-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주로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인 반면, 보육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거의 지급되지 않는 수당으로 나타났음
- 시설의 약 80% 이상이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각각 178개소(91.3%), 163개소(83.6%), 162개소(83.1%)이었음
 -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은 58개소(29.7%), 급식비는 57개소(29.2%), 교통비는 55개소(28.2%), 가계보조수당은 53개소(27.2%) 등으로 나타났음
- 반면, 보육수당은 단 2개소로 1%, 체력단련비는 4개소로 2%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시설에서 지급되지 않는 수당으로 나타났음

〈표 2-22〉 수당별 제공 현황

(단위 : 개소, %)

수당종류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말수당	46	23.6	149	76.4	195	100.0
정근수당	49	25.1	146	74.9	195	100.0
장기근속수당	58	29.7	137	70.3	195	100.0
가계지원비	45	23.1	150	76.9	195	100.0
가계보조수당	53	27.2	142	72.8	195	100.0
교통비	55	28.2	140	71.8	195	100.0
급식비	57	29.2	138	70.8	195	100.0
명절휴가비	178	91.3	17	8.7	195	100.0
생활복지사 수당	41	21.0	154	79.0	195	100.0
생활지도원 수당	38	19.5	157	80.5	195	100.0
연장근로수당	162	83.1	33	16.9	195	100.0
직무수당	29	14.9	166	85.1	195	100.0
가족수당	163	83.6	32	16.4	195	100.0
연월차보상수당	17	8.7	178	91.3	195	100.0
체력단련비	4	2.0	191	97.9	195	100.0
보육수당	2	1.0	193	99.0	195	100.0
직급수당	50	25.6	145	74.4	195	100.0
휴일근로수당	21	10.8	174	89.2	195	100.0
여름휴가비	12	6.2	183	93.8	195	100.0
법인수당	11	5.6	184	94.4	195	100.0
기타 수당	53	27.2	142	72.8	195	100.0



[그림 2-8] 수당 제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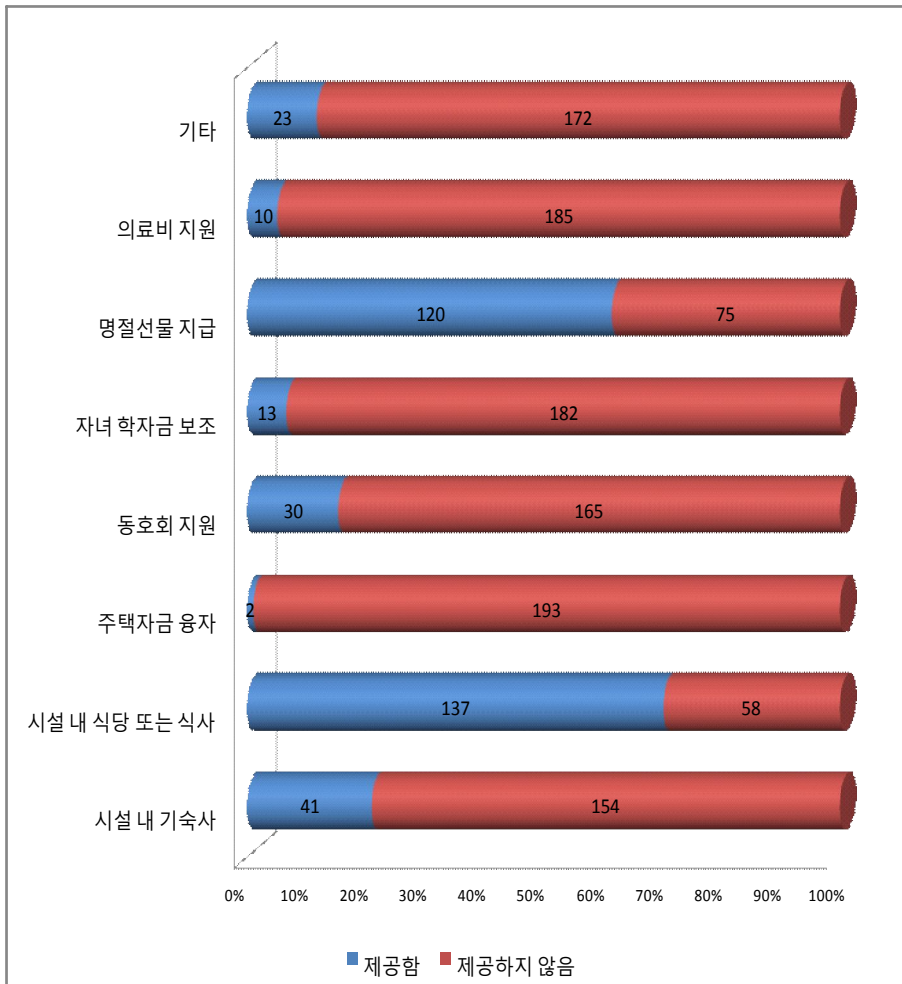
(2) 복리후생 제공

- 복리후생으로 시설 내 식당 또는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70.3%)가 가장 많았음
- 가장 많은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시설 내 식당 또는 식사가 137개소(70.3%)에 이르고 있었으며,
 - 명절선물 지급이 120개소(61.5%), 시설 내 숙소사 41개소(21.0%), 동호회 지원 30개소(15.4%), 기타 23개소(11.8%), 자녀 학자금 보조 13개소(6.7%), 의료비 지원 10개소(5.1%), 주택자금 융자 2개소(1.0%)의 순이었음
 - 기타로는 출퇴근 차량 운행, 친목회 지원, 다과지원, 장기근속 특별휴가, 근무복(유니폼) 지원, 생일휴가, 장기근속 특별휴가 등이 있었음

〈표 2-23〉 복리후생 제공여부

(단위 : 개소, %)

복리후생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 내 숙소사	41	21.0	154	79.0	195	100.0
시설 내 식당 또는 식사	137	70.3	58	29.7	195	100.0
주택자금 융자	2	1.0	193	99.0	195	100.0
동호회 지원	30	15.4	165	84.6	195	100.0
자녀 학자금 보조	13	6.7	182	93.3	195	100.0
명절선물 지급	120	61.5	75	38.5	195	100.0
의료비 지원	10	5.1	185	94.9	195	100.0
기타	23	11.8	172	88.2	195	100.0



[그림 2-9] 복리후생 제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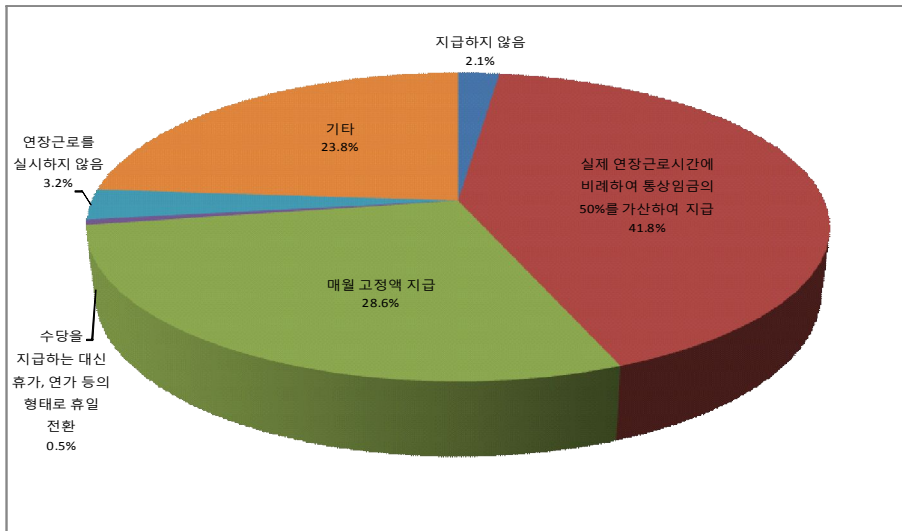
(3) 연장근로수당 지급형태

-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지급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9개소(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매월 고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54개소(28.6%), 기타의 경우가 45개소(23.8%),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개소(3.2%),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개소(2.1%),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연가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1개소(0.5%)로 나타났음
 - 기타의 경우가 많이 응답된 것은 각 시설에 따라서 수당 지급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직무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매월 고정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지급’, ‘수당지급 가능 범위 이외의 시간의 경우 휴가로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었음

〈표 2-24〉 연장근로수당 지급 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지급하지 않음	4	2.1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79	41.8
매월 고정액 지급	54	28.6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연가 등의 형태로 휴일 전환	1	0.5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음	6	3.2
기타	45	23.8
합계	189	100.0



[그림 2-10] 연장근로수당 지급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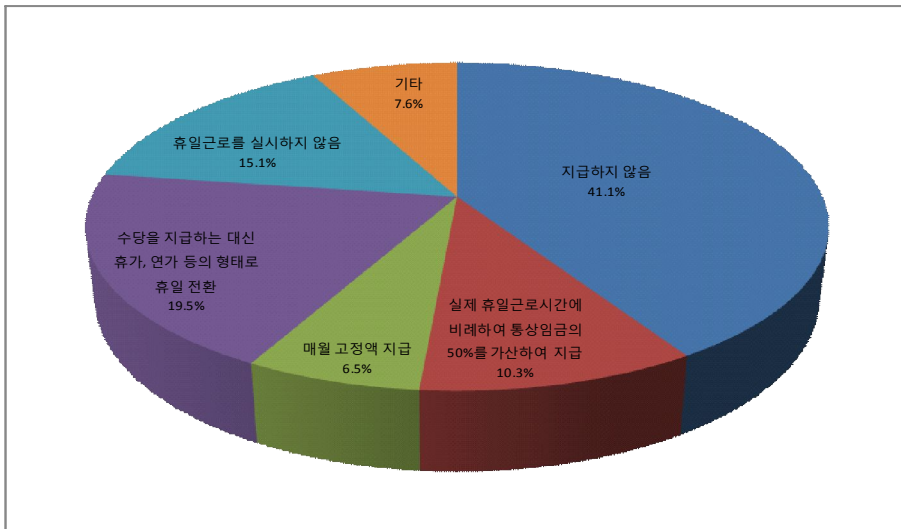
(4) 휴일근로수당 지급형태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형태와 관련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 (41.1%)가 ‘수당 대신 휴가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19.5%) 보다 많았음
- 휴일근로수당 지급 형태를 살펴보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76개소(4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연가 등의 형태로 휴일 전환을 하는 경우가 36개소(19.5%),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28개소(15.1%), 실제 휴일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19개소(10.3%) 등이었음
- 매월 고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장 적은 12개소(6.5%)에 불과하였음
 - 기타의 경우는 14개소(7.6%)로 응답되었는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특정 날짜에 한해서만 휴일 인정’, ‘토요근무는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일요근무는 월요일 대체휴무’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2-25〉 휴일근로수당 지급 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지급하지 않음	76	41.1
실제 휴일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19	10.3
매월 고정액 지급	12	6.5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연가 등의 형태로 휴일 전환	36	19.5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않음	28	15.1
기타	14	7.6
합계	185	100.0



[그림 2-11] 휴일근로수당 지급 형태

(5) 퇴직금 지급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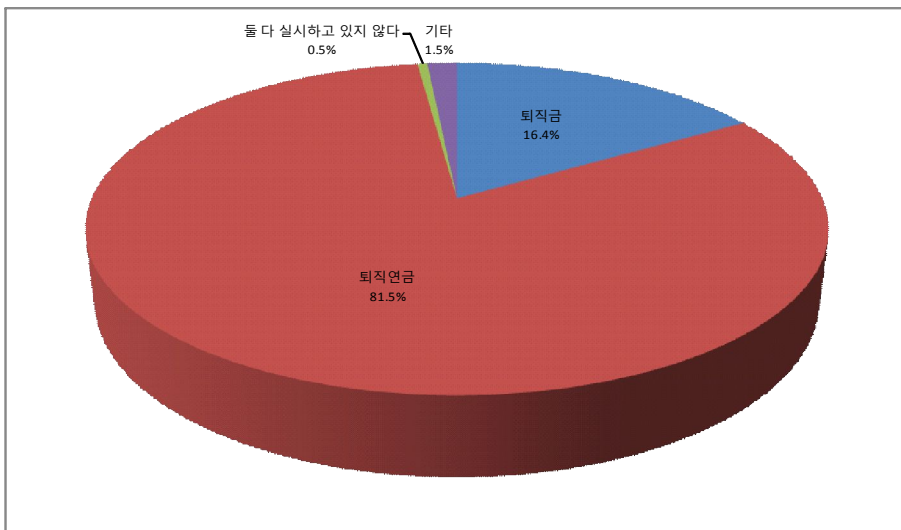
□ 다수의 시설(81.5%)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음

- 퇴직금 지급형태는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가 159개소(81.5%)로 다수의 시설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퇴직금이 32개소(16.4%),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3개소(1.5%), 둘 다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1개소(0.5%)로 나타났다

〈표 2-26〉 퇴직금 지급 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퇴직금	32	16.4
퇴직연금	159	81.5
둘 다 실시하고 있지 않음	1	0.5
퇴직금, 퇴직연금 병행	3	1.5
합계	195	100.0



[그림 2-12] 퇴직금 지급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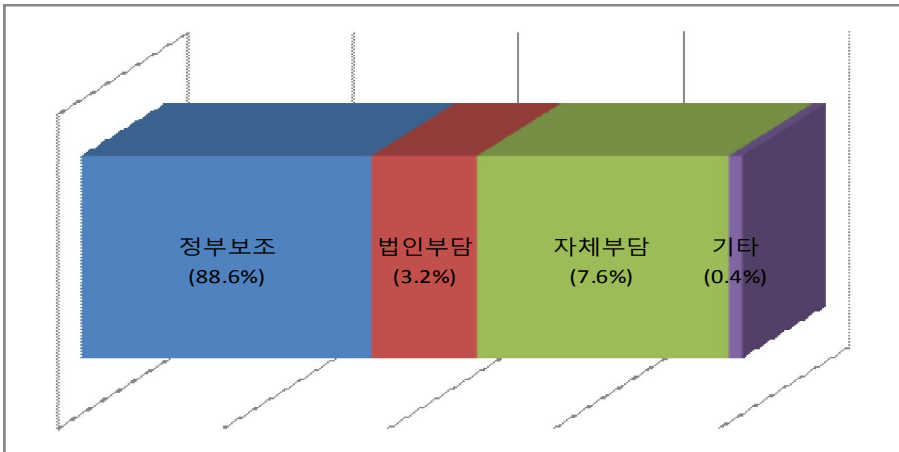
(6) 급여 및 수당의 재원

- 급여 및 수당의 재원에서 정부보조금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 급여 및 수당의 재원은 정부보조인 경우가 평균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어 자체부담이 평균 7.6%, 법인부담이 평균 3.2%, 기타 평균 0.4%로 나타나
급여 및 수당의 경우 대부분이 정부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표 2-27〉 급여 및 수당의 재원

(단위 : %)

구분	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부보조	183	88.6	27.27954	.00	100.00
법인부담	182	3.2	13.53541	.00	100.00
자체부담	182	7.6	23.88519	.00	100.00
기타	182	0.4	2.78325	.00	30.00



[그림 2-13] 급여 및 수당의 재원

3)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제언

(1) 관리 운영의 어려움

□ 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부족(54.6%)과 인력부족(53.1%)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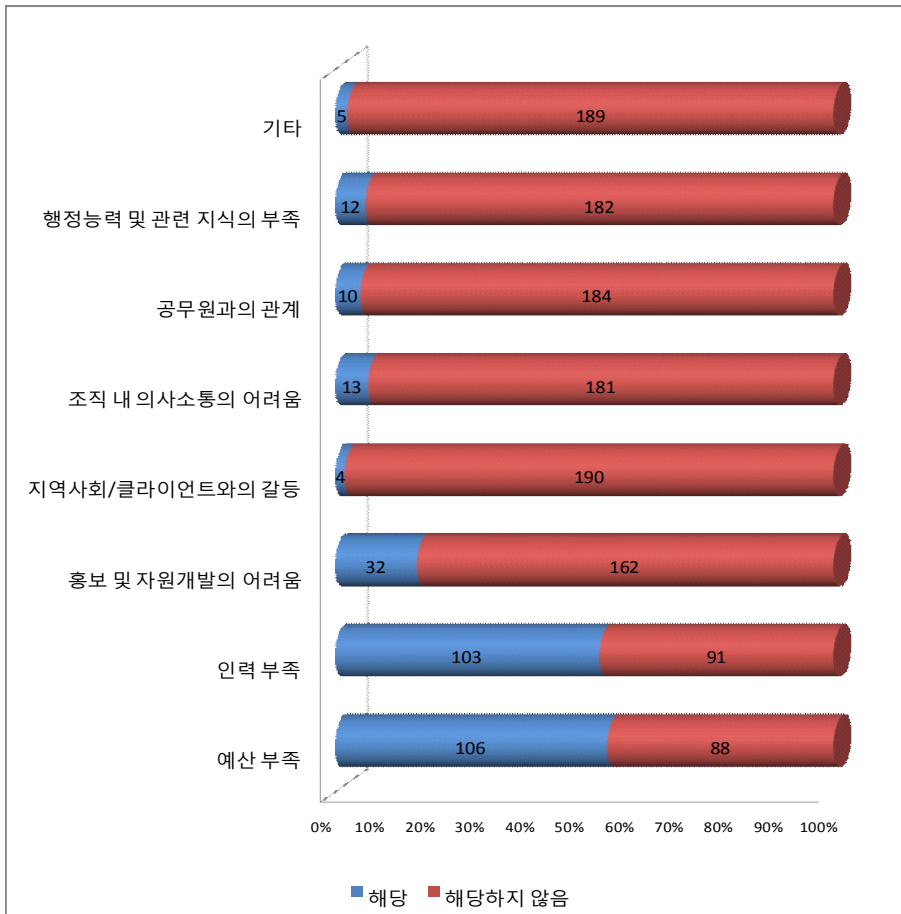
- 관리 운영의 어려움으로 ‘예산부족’ 을 꼽은 시설은 106개소(5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 이어 인력부족 103개소(53.1%), 홍보 및 자원개발의 어려움 32개소(16.5%), 조직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13개소(6.7%), 행정능력 및 관련 지식의 부족 12개소(6.2%), 공무원과의 관계 10개소(5.2%), 기타 5개소(2.6%), 지역사회/클라이언트와의 갈등 4개소(2.1%)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기타로는 ‘공간부족’, ‘비정규직은 예산의 100%가 자부담’ 등이 있었음

〈표 2-28〉 관리 운영의 어려움

(단위 : 개소, %)

어려움	해당		해당하지 않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산 부족	106	54.6	88	45.4	194	100.0
인력 부족	103	53.1	91	46.9	194	100.0
홍보 및 자원개발의 어려움	32	16.5	162	83.5	194	100.0
지역사회/클라이언트와의 갈등	4	2.1	190	97.9	194	100.0
조직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13	6.7	181	93.3	194	100.0
공무원과의 관계	10	5.2	184	94.8	194	100.0
행정능력 및 관련 지식의 부족	12	6.2	182	93.8	194	100.0
기타	5	2.6	189	97.4	194	100.0

* 중복 응답



[그림 2-14] 관리 운영의 어려움

(2) 직원채용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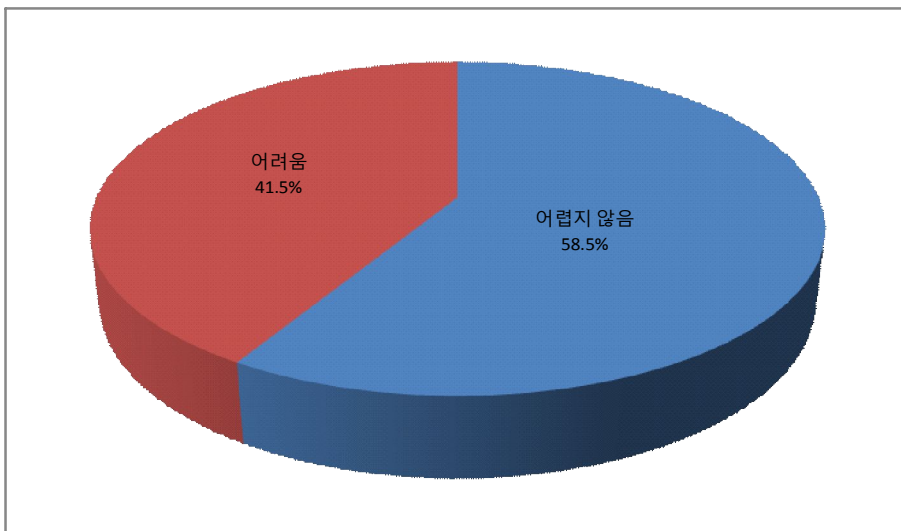
□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80개소 (41.5%),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시설이 113개소(58.5%)로 나타났다

○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지리적 위치/교통불편’ 이 가장 많았으며, 열악한 업무환경과 낮은 보수 등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로 나타났다

〈표 2-29〉 직원채용의 어려움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어려움	80	41.5
어렵지 않음	113	58.5
합계	193	100.0



[그림 2-15] 직원채용의 어려움

(3) 인적자원 개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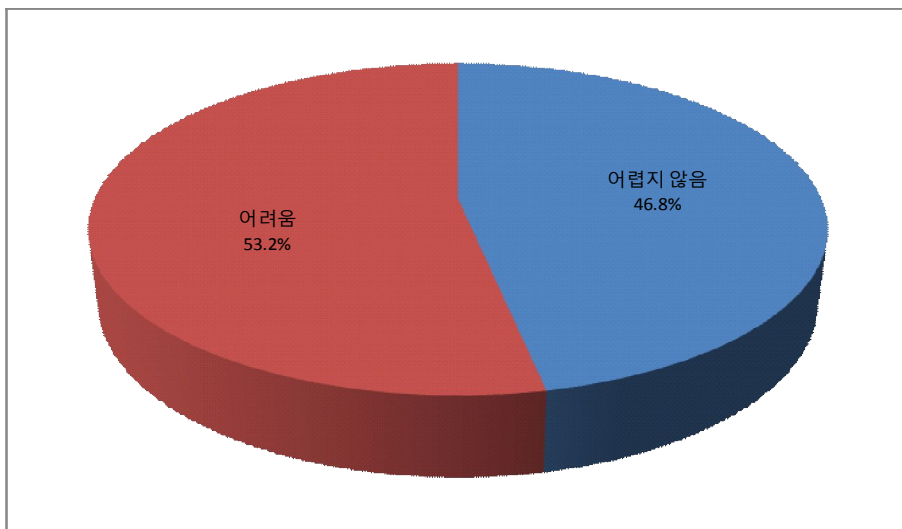
□ 인적자원개발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고 응답한 시설이 100개소(53.2%), ‘어렵지 않다’ 고 응답한 시설이 88개소(46.85)로 나타나 인적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다소 많았음

○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 ‘예산의 부족’, ‘지리적 위치/교통불편’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30〉 인적자원 개발의 어려움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어려움	100	53.2
어렵지 않음	88	46.8
합계	188	100.0



[그림 2-16] 인적자원 개발의 어려움

(4)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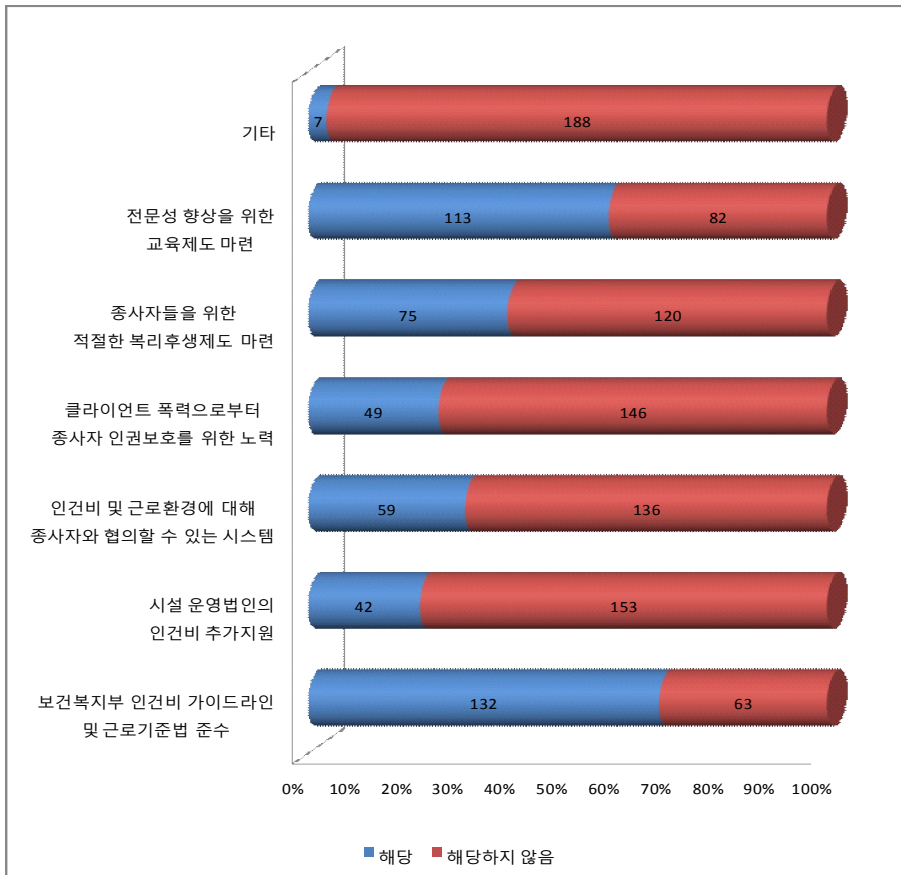
□ 시설에서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근로기준법 준수’가 132개소(67.7%)로 가장 많은 시설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이 113개소(57.9%), ‘종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복리후생제도 마련’이 75개소(38.5%), ‘인건비 및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59개소(30.3%),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49개소(25.1%), ‘시설 운영법인의 인건비 추가지원’이 42개소(21.5%), 기타 응답이 7개소(3.6%) 순이었음

〈표 2-31〉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노력

(단위 : 개소, %)

어려움	해당		해당하지 않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근로기준법 준수	132	67.7	63	32.3	195	100.0
시설 운영법인의 인건비 추가지원	42	21.5	153	78.5	195	100.0
인건비 및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59	30.3	136	69.7	195	100.0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49	25.1	146	74.9	195	100.0
종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복리후생제도 마련	75	38.5	120	61.5	195	100.0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	113	57.9	82	42.1	195	100.0
기타	7	3.6	188	96.4	195	100.0



[그림 2-17]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노력

2. 개인용 분석

- 개인용 조사는 전국 314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209명에 대한 분석결과임²⁾
- 개인용 설문조사는 시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분석, 근로환경, 건강상태, 업무 소진 및 이직,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제언 등의 분야로 나뉘어 조사가 이루어졌음

2) 본 조사는 표집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된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현원이 평균 17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된 시설 196개소의 약 절반의 사회복지사가 응답한 것으로 추정됨

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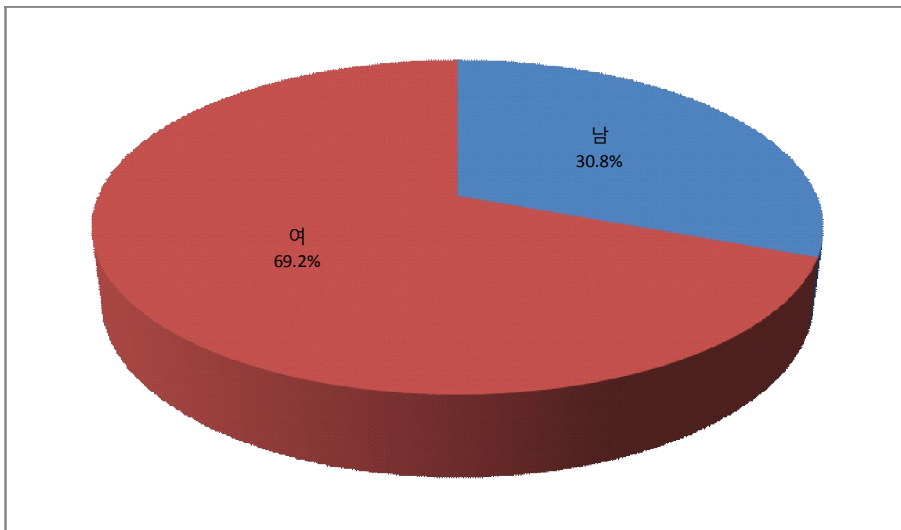
(1)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71명(30.8%), 여성이 834명(69.2%)으로 여성이 남성
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음

〈표 2-32〉 응답자의 성별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남성	371	30.8
여성	834	69.2
합계	1,205	100.0



[그림 2-18]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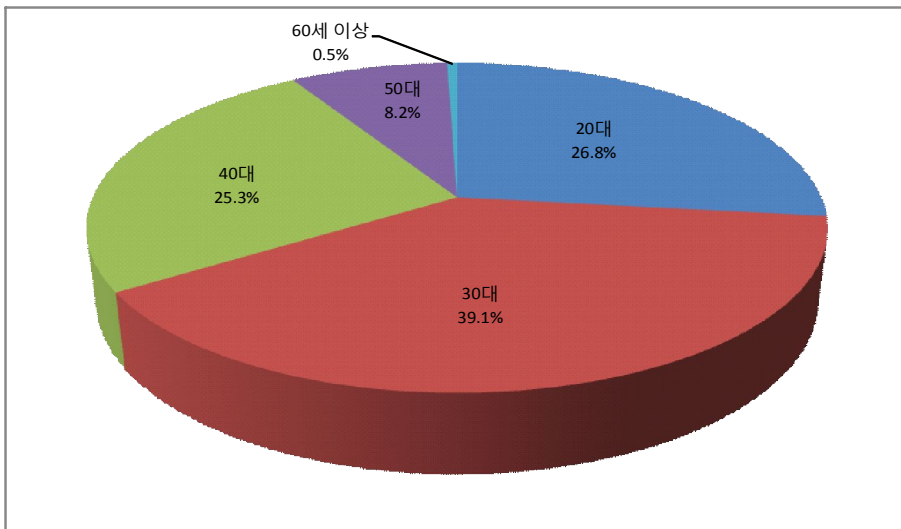
(2) 연령

- 응답자의 다수가 20~30대의 젊은 층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5.2세로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461명(39.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20대가 316명(26.8%), 40대가 298명(25.3%), 50대가 97명(8.2%), 60세 이상이 6명(0.5%) 순이었음
- 응답자의 연령은 20세부터 72세까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연령은 35.9세로 나타났음

〈표 2-33〉 응답자의 연령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20대	316	26.8
30대	461	39.1
40대	298	25.3
50대	97	8.2
60세 이상	6	0.5
합계	1,178	100.0



[그림 2-19] 응답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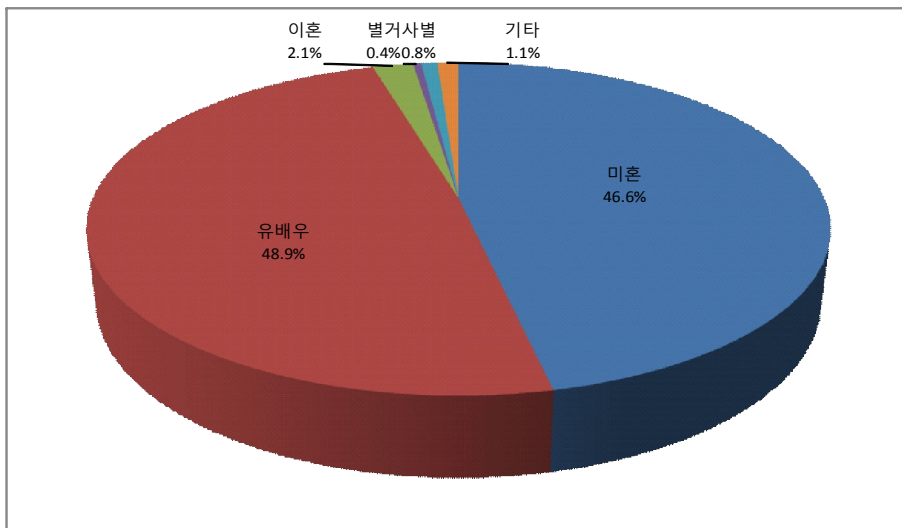
(3) 결혼상태

- 응답자의 결혼 및 배우자 유무 등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607명(51.1%)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582명(48.9%)보다 더 많았음
- 배우자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미혼 554명(46.6%), 이혼 25명(2.1%), 사별 10명(0.8%), 별거 5명(0.4%) 등이었음

〈표 2-34〉 응답자의 결혼상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배우자 있음	582	48.9
배우자 없음	662	51.1
미혼	554	46.6
이혼	25	2.1
별거	5	0.4
사별	10	0.8
기타	13	1.1
합계	1,189	100.0



[그림 2-20] 응답자의 결혼상태

(4)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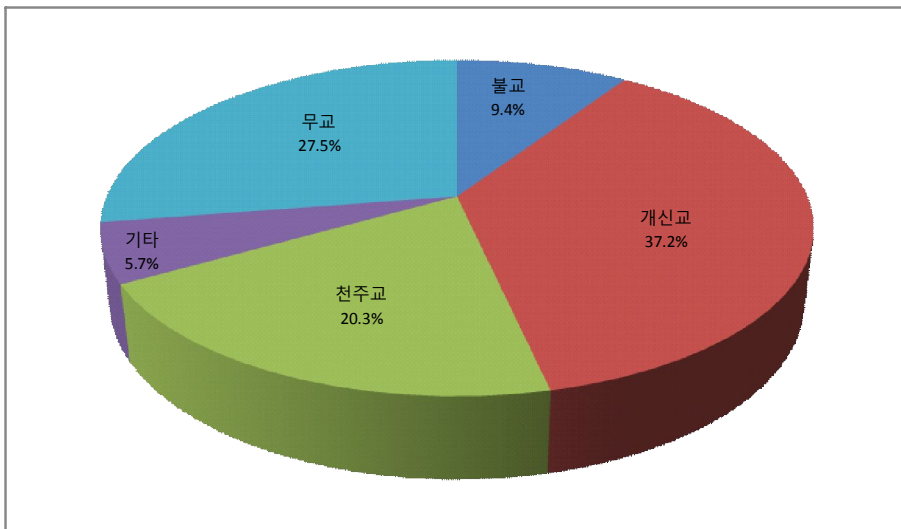
□ 응답자의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없는 경우는 326명(27.5%)이었음

○ 종교가 있는 경우, 개신교가 441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241명(20.3%), 불교 111명(9.4%), 기타 68명(5.7%)의 순으로 나타나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계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

〈표 2-35〉 응답자의 종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종교 있음	861	72.5
불교	111	9.4
개신교	441	37.2
천주교	241	20.3
기타	68	5.7
종교 없음	326	27.5
합계	1,187	100.0



[그림 2-21] 응답자의 종교

(5)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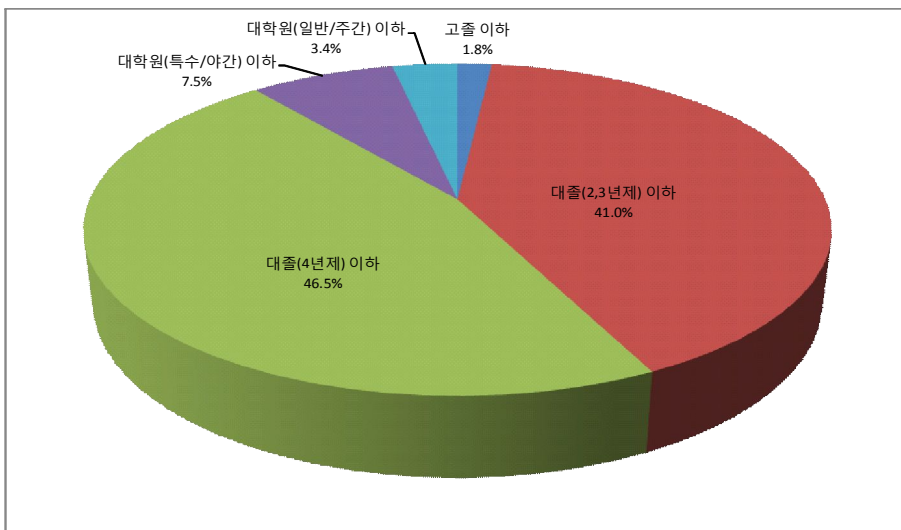
□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이 555명(46.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3년제 대학 졸업’ 이 489명(41.0%)으로, 4년제 또는 2·3년제 대학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특수/야간대학원 졸업’은 89명(7.5%), ‘일반/주간 대학원 졸업’은 40명(3.4%)이었으며, ‘고교 졸업 이하’는 21명(1.8%)에 이름

〈표 2-36〉 응답자의 학력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고교 졸업 이하	21	1.8
2,3년제 대학 졸업	489	41.0
4년제 대학 졸업	555	46.5
특수/야간 대학원 졸업	89	7.5
일반/주간 대학원 졸업	40	3.4
합계	1,194	100.0



[그림 2-22] 응답자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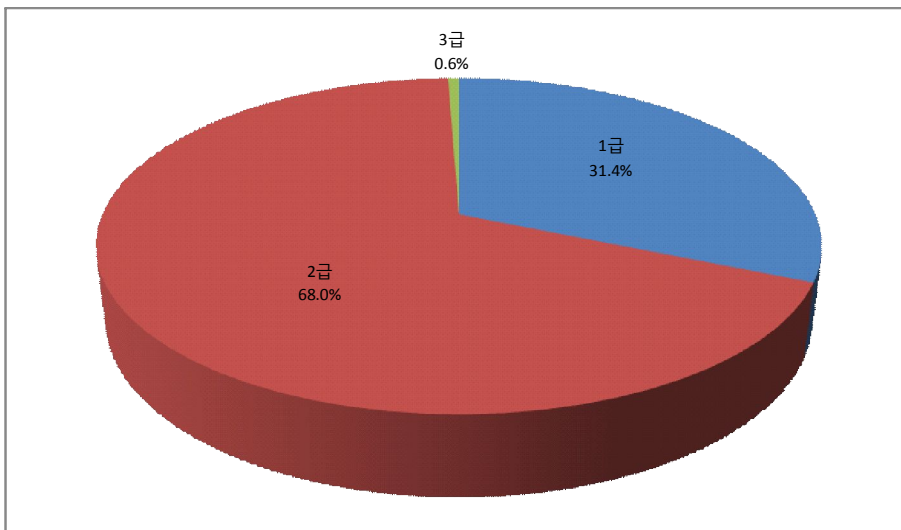
(6)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 응답자의 68.0%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은 2급이 807명(68.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급은 372명(31.4%)이어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2급 자격을 소지한 사회복지사가 더 많았음
 - 3급은 7명(0.6%)에 불과하였음

〈표 2-37〉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급	372	31.4
2급	807	68.0
3급	7	0.6
합계	1,186	100.0



[그림 2-23]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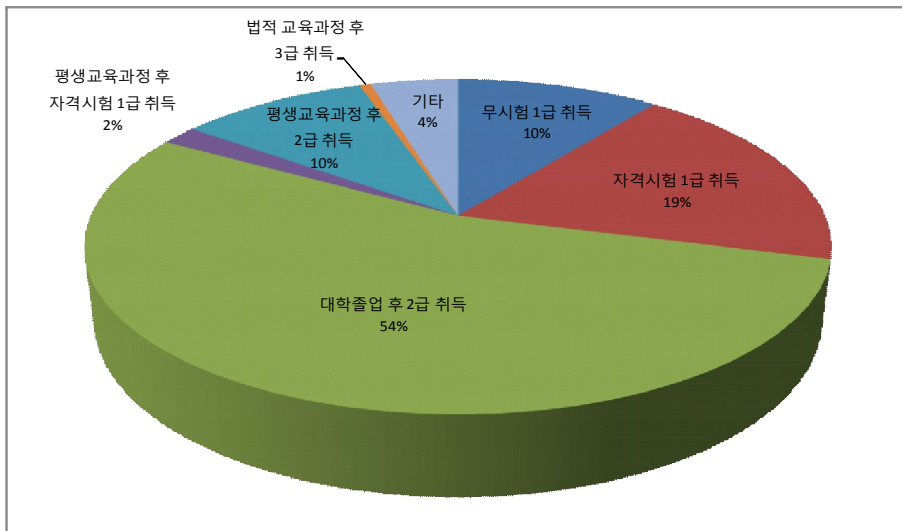
(7) 자격증 취득경로

- 1급과 2급의 경우 모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을 통한’ 취득이 약 83%로서 가장 많았음. 이는 평생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한 취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여서, 대학여부에 따라 사회복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자격증 취득경로를 살펴보면 23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634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으로 1급을 취득한 경우가 218명(18.6%), 대학 졸업 후 시험 없이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123명(10.5%)이었음
- 반면, 평생교육과정 이수 후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114명(9.7%), 기타 53명(4.5%), 평생교육과정 이수 후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으로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22명(1.9%)으로 실제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는 수보다 종사하는 경우는 적음
- 법적 교육과정을 통해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7명(0.6%)이었음

〈표 2-38〉 자격증 취득경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대학 교육과정 후 무시험 1급 취득	123	10.5
대학 교육과정 및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으로 1급 취득	218	18.6
23년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통한 2급 자격 취득	634	54.1
평생교육과정 이수 및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으로 1급 취득	22	1.9
평생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2급 자격 취득	114	9.7
법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3급 취득	7	0.6
기타	53	4.5
합계	1,171	100.0



[그림 2-24] 자격증 취득 경로

(8) 직장 내 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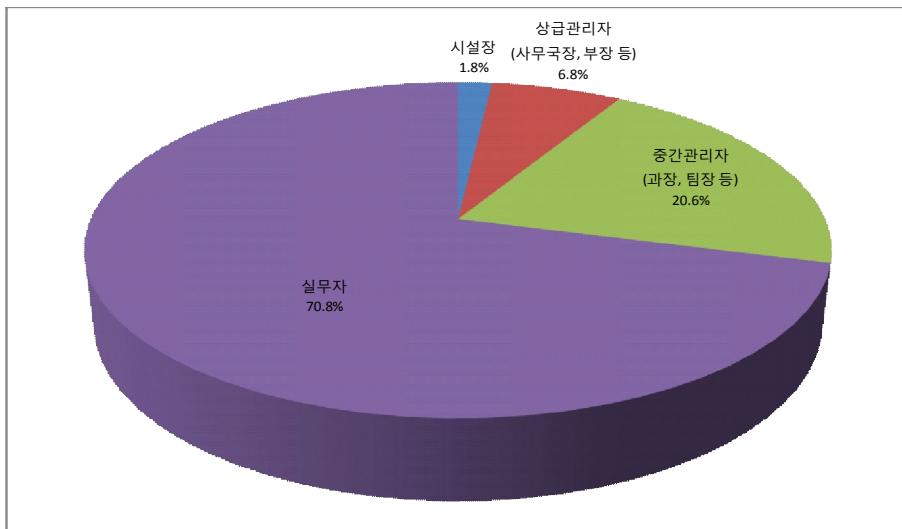
□ 직장 내 직위를 살펴보면 실무자가 848명(7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이어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는 247명(20.6%), 상급관리자(사무국장, 부장 등)는 81명(6.8%), 시설장은 21명(1.8%)으로 조사되었음

〈표 2-39〉 직장 내 직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시설장	21	1.8
상급관리자(사무국장, 부장 등)	81	6.8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247	20.6
실무자	848	70.8
합계	1,197	100.0



[그림 2-25] 직장 내 직위

【자격 등급에 따른 직장 내 직위의 차이】

- 자격 등급(1급, 2급)에 따라 직장 내 직위를 비교해 보면, 관리자(시설장, 상급 관리자, 중간관리자)의 경우는 1급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무자의 경우는 2급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0〉 자격 등급에 따른 직장 내 직위

(단위 : 명, %)

		직위		계	$\chi^2(p)$
		관리자	실무자		
자격 급수	1급	153 (41.13)	219 (58.87)	372 (100.00)	36.137***(.000)
	2급	191 (23.93)	607 (76.07)	798 (100.00)	
	계	344 (29.40)	826 (70.60)	1,170 (100.00)	

†p<.10, *p<.05, **p<.01, ***p<.001

(9) 월평균 가구 총소득 및 총지출

-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354만 6900원, 월평균 가구 총지출은 261만 4900원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지출에 비해 93만 20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가구 총소득 및 총지출

(단위 : 명, 만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총소득	948	354.69	277.289	0	4,000
가구총지출	906	261.49	236.110	0	3,400

2) 직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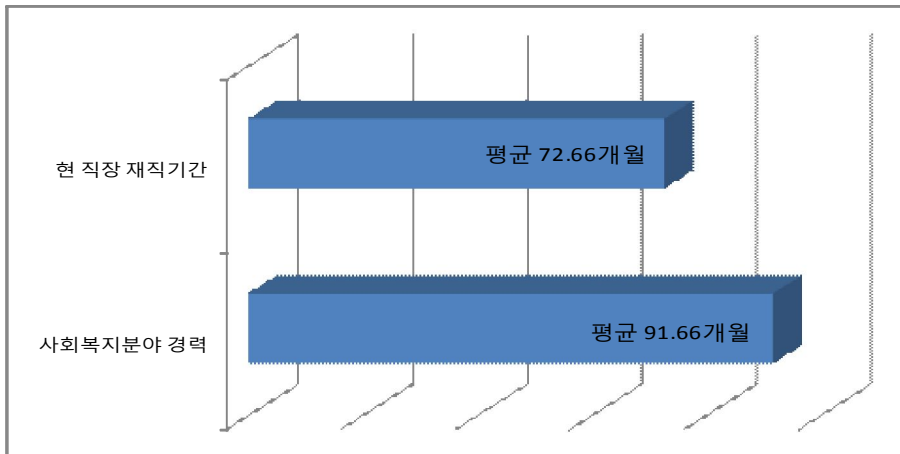
(1) 직장 경력

-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경력으로는 평균 91.66개월(약 7년 8개월)이었으며,
- 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은 평균 72.66개월(약 6년 1개월)이었음

〈표 2-42〉 직장 경력

(단위 : 명, 개월)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복지분야 경력	1,133	91.66	68,290	0	540
현 직장 재직기간	1,160	72.66	63,610	0	424



[그림 2-26] 평균 직장 경력

(2) 업무상 주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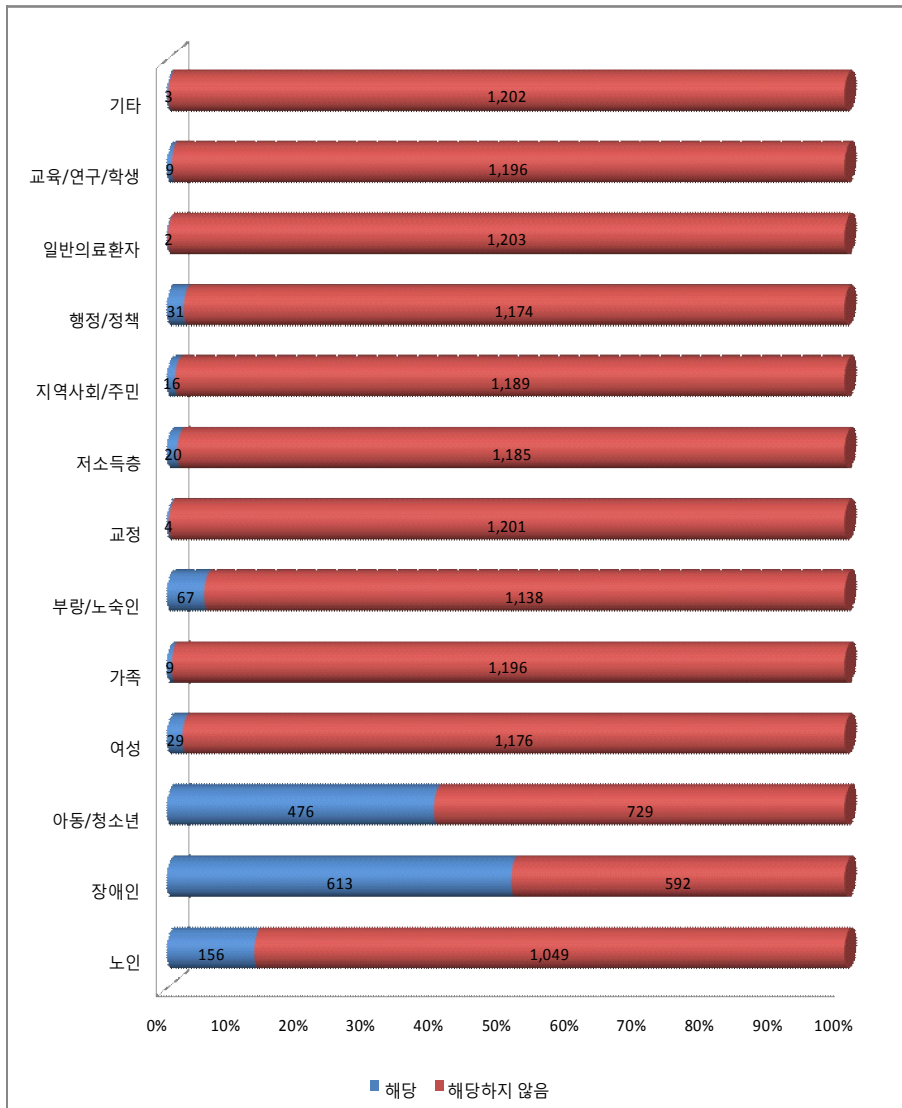
□ 업무상 주된 대상은 장애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업무상 주된 대상은 장애인인 경우가 6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476명, 노인 156명, 부랑/노숙인 67명, 행정/정책 31명, 여성 29명, 저소득층 20명 등이었음

〈표 2-43〉 업무상 주된 대상

(단위 : 명, %)

어려움	해당		해당하지 않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인	156	12.9	1,049	87.1	1,205	100.0
장애인	613	50.9	592	49.1	1,205	100.0
아동/청소년	476	39.5	729	60.5	1,205	100.0
여성	29	2.4	1,176	97.6	1,205	100.0
가족	9	0.7	1,196	99.3	1,205	100.0
부랑/노숙인	67	5.6	1,138	94.4	1,205	100.0
교정	4	0.3	1,201	99.7	1,205	100.0
저소득층	20	1.7	1,185	98.3	1,205	100.0
지역사회/주민	16	1.3	1,189	98.7	1,205	100.0
행정/정책	31	2.6	1,174	97.4	1,205	100.0
일반의료환자	2	0.2	1,203	99.8	1,205	100.0
교육/연구/학생	9	0.7	1,196	99.3	1,205	100.0
기타	3	0.2	1,202	99.8	1,205	100.0



[그림 2-27] 업무상 주된 대상

【성별에 따른 업무 대상자별 차이】

- 장애인과 부랑/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남성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여성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4〉 성별에 따른 업무대상자

(단위 : 명, %)

		해당여부[명(%)]		계	$\chi^2(p)$
		해당	해당없음		
노인	남	36 (9.76)	333 (90.24)	369 (100.00)	4.481*(.034)
	여	118 (14.18)	714 (85.82)	832 (100.00)	
	계	154 (12.82)	1,047 (87.18)	1,201 (100.00)	
장애인	남	218 (59.08)	151 (40.92)	369 (100.00)	14.346***(.000)
	여	393 (47.24)	439 (52.76)	832 (100.00)	
	계	611 (50.87)	590 (49.13)	1,201 (100.00)	
아동/청소년	남	112 (30.35)	257 (69.65)	369 (100.00)	18.849***(.000)
	여	363 (43.63)	469 (56.37)	832 (100.00)	
	계	475 (39.55)	726 (60.45)	1,201 (100.00)	
여성	남	4 (1.08)	365 (98.92)	369 (100.00)	3.640†(.063)
	여	24 (2.88)	808 (97.12)	832 (100.00)	
	계	28 (2.33)	1,173 (97.67)	1,201 (100.00)	
부랑/노숙인	남	38 (10.30)	331 (89.70)	369 (100.00)	22.523***(.000)
	여	29 (3.49)	803 (96.51)	832 (100.00)	
	계	67 (5.58)	1,134 (94.42)	1,201 (100.00)	

†p<.10, *p<.05, **p<.01, ***p<.001

【연령에 따른 업무 대상자별 차이】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의 경우는 20~30대 사회복지사가, 노인·여성·부랑/노숙인을 대상의 경우는 40대 이상 사회복지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45〉 연령에 따른 업무대상자

(단위 : 명, %)

		해당여부[명(%)]		계	$\chi^2(p)$
		해당	해당없음		
노인	20~30대	76 (9.82)	698 (90.18)	774 (100.00)	18.767***(.000)
	40대 이상	75 (18.75)	325 (81.75)	400 (100.00)	
	계	151 (12.86)	1,023 (87.14)	1,174 (100.00)	
장애인	20~30대	390 (50.39)	384 (49.61)	774 (100.00)	0.014(.906)
	40대 이상	203 (50.75)	197 (49.25)	400 (100.00)	
	계	593 (50.51)	581 (49.49)	1,174 (100.00)	
아동/청소년	20~30대	340 (43.93)	434 (56.07)	774 (100.00)	17.015***(.000)
	40대 이상	126 (31.50)	274 (68.50)	400 (100.00)	
	계	466 (39.69)	708 (60.31)	1,174 (100.00)	
여성	20~30대	12 (1.55)	762 (98.45)	774 (100.00)	5.679*(.017)
	40대 이상	15 (3.75)	385 (96.25)	400 (100.00)	
	계	27 (2.30)	1,147 (97.70)	1,174 (100.00)	
부랑/노숙인	20~30대	34 (4.39)	740 (95.61)	774 (100.00)	5.683*(.017)
	40대 이상	31 (7.75)	369 (92.25)	400 (100.00)	
	계	65 (5.54)	1,109 (94.46)	1,174 (100.00)	

† p<.10, * p<.05, ** p<.01, *** p<.001

(3) 담당 업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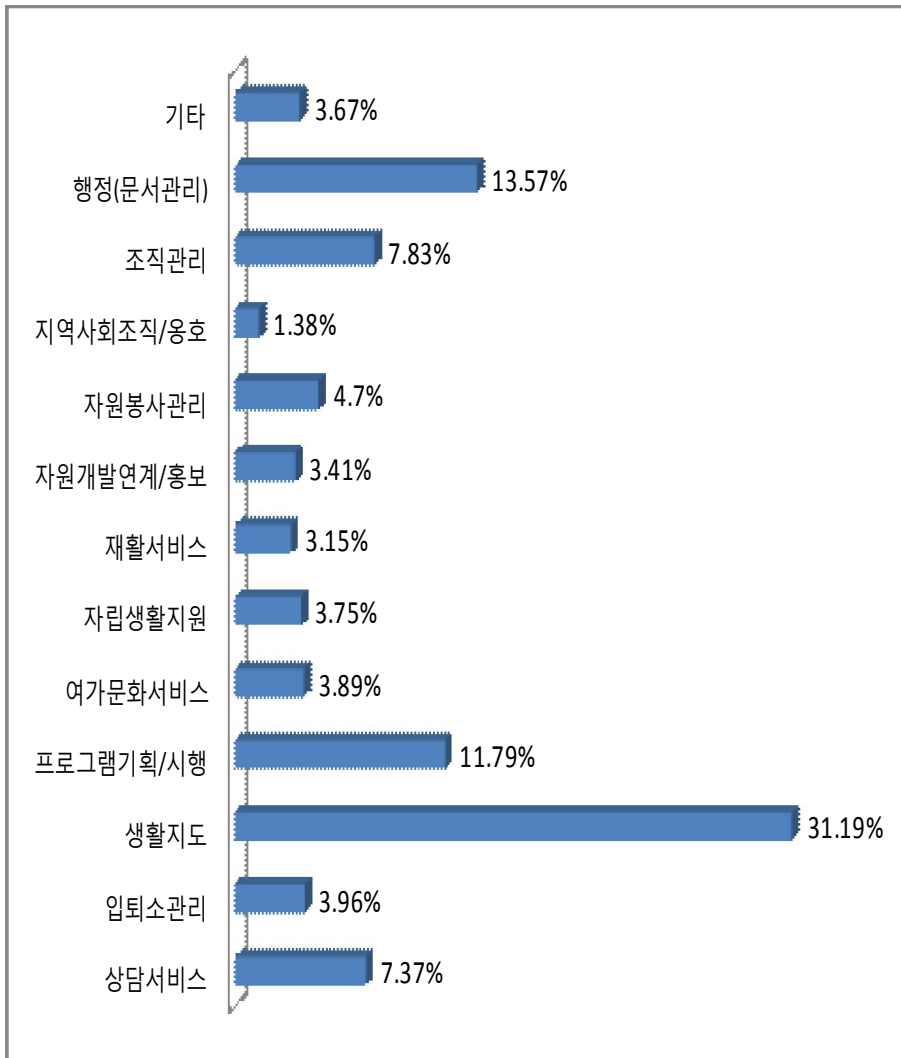
□ 전체 업무 중 ‘생활지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에 대해서는 생활지도가 평균 31.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 행정(문서관리)가 13.57%(이하 모두 평균), 프로그램기획/시행 11.79%, 조직관리 7.83%, 상담서비스 7.37%, 자원봉사관리 4.70%, 입퇴소관리 3.96%, 여가문화서비스 3.89%, 자립생활지원 3.75%, 기타 3.67%, 자원개발연계/홍보 3.41%, 재활서비스 3.15%, 지역사회조직/옹호 1.38%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46〉 업무의 비중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상담서비스	956	7.37	10.606	0	80
입퇴소관리	956	3.96	9.957	0	100
생활지도	956	31.19	34.088	0	100
프로그램기획/시행	956	11.79	14.978	0	100
여가문화서비스	956	3.89	6.267	0	50
자립생활지원	956	3.75	9.073	0	80
재활서비스	956	3.15	9.044	0	100
자원개발연계/홍보	956	3.41	8.194	0	80
자원봉사관리	956	4.70	10.064	0	85
지역사회조직/옹호	956	1.38	4.771	0	70
조직관리	956	7.83	18.218	0	100
행정(문서관리)	956	13.57	20.115	0	100
기타	956	3.67	12.589	0	100



[그림 2-28] 업무의 비중

【성별,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에 따른 담당 업무 비중의 차이】

■ 사회복지사의 성별에 따른 담당 업무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표47>과 같음

-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자원개발/연계 및 홍보, 지역사회조직 및 옹호, 기타 분야의 업무 비중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에 있어서 생활지도와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은 여성 사회복지사의 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원개발/연계 및 홍보, 지역사회조직 등 대외적인 업무의 경우 남성 사회복지사의 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담당 업무별 비중을 비교하면 <표48>과 같음³⁾

-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프로그램기획/시행, 자원개발/연계 및 홍보, 자원봉사 관리, 조직관리, 행정(문서관리) 분야의 업무에 있어서 자격 등급(1급과 2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에 있어서 생활지도는 2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담서비스, 프로그램기획/시행, 자원개발/연계 및 홍보, 자원봉사관리, 조직관리, 행정(문서관리) 업무의 경우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직위에 따른 담당 업무별 비중을 비교하면 <표49>와 같음⁴⁾

- 상담서비스, 입퇴소관리, 생활지도, 자원개발/연계 및 홍보, 지역사회조직 및 옹호, 조직관리, 행정(문서관리) 분야의 업무에 있어서 직장 내 직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에 있어서 생활지도는 실무자의 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담서비스, 입퇴소관리, 자원개발/연계 및 홍보, 지역사회조직 및 옹호, 조직관리, 행정(문서관리) 업무의 경우 관리자의 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3급 자격의 경우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1급과 2급 자격을 대상으로 평균을 비교하였음

4) 직장 내 직위는 관리자(시설장,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누어 비교하였음

〈표 2-47〉 성별에 따른 담당 업무의 비중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i>p</i>)
상담서비스	남	294	7.668	11.3805	.515
	여	659	7.185	10.2075	
	계	953	7.334	10.5796	
입퇴소관리	남	294	4.42	10.311	.334
	여	659	3.75	9.796	
	계	953	3.95	9.957	
생활지도	남	294	27.128	30.8576	.014*
	여	659	32.998	35.2376	
	계	953	31.187	34.0388	
프로그램기획 /시행	남	294	12.362	14.5156	.412
	여	659	11.501	15.1849	
	계	953	11.767	14.9793	
여가문화 서비스	남	294	4.073	6.1710	.562
	여	659	3.818	6.3181	
	계	953	3.897	6.2709	
자립생활지원	남	294	4.094	9.8658	.447
	여	659	3.609	8.7172	
	계	953	3.759	9.0846	
재활서비스	남	294	4.015	9.9408	.036*
	여	659	2.705	8.4152	
	계	953	3.109	8.9290	
자원개발/연 계홍보	남	294	4.099	8.8035	.090 †
	여	659	3.122	7.9113	
	계	953	3.423	8.2047	
자원봉사관리	남	294	3.959	8.6879	.122
	여	659	5.051	10.6269	
	계	953	4.714	10.0767	
지역사회조직 /옹호	남	294	1.845	5.7357	.045*
	여	659	1.173	4.2709	
	계	953	1.380	4.7780	
조직관리	남	294	7.90	16.746	.965
	여	659	7.84	18.882	
	계	953	7.86	18.241	
행정 (문서관리)	남	294	12.594	18.6859	.298
	여	659	14.064	20.7463	
	계	953	13.610	20.1349	
기타	남	294	4.82	14.305	.062 †
	여	659	3.17	11.749	
	계	953	3.68	12.60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2-48〉 자격 등급에 따른 담당 업무 비중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i>p</i>)
상담서비스	1급	330	8,203	.074 †
	2급	604	6,916	
	계	934	7,371	
입퇴소관리	1급	330	4,52	.246
	2급	604	3,73	
	계	934	4,01	
생활지도	1급	330	21,739	.000***
	2급	604	36,155	
	계	934	31,062	
프로그램기획 /시행	1급	330	13,233	.040*
	2급	604	11,120	
	계	934	11,867	
여가문화 서비스	1급	330	3,761	.548
	2급	604	4,019	
	계	934	3,928	
자립생활지원	1급	330	3,289	.215
	2급	604	4,067	
	계	934	3,792	
재활서비스	1급	330	2,768	.318
	2급	604	3,385	
	계	934	3,167	
자원개발/연 계홍보	1급	330	4,364	.015*
	2급	604	2,993	
	계	934	3,477	
자원봉사관리	1급	330	5,921	.012*
	2급	604	4,170	
	계	934	4,789	
지역사회조직 /옹호	1급	330	1,352	.868
	2급	604	1,406	
	계	934	1,387	
조직관리	1급	330	11,18	.000***
	2급	604	6,05	
	계	934	7,86	
행정 (문서관리)	1급	330	15,567	.012*
	2급	604	12,150	
	계	934	13,357	
기타	1급	330	3,77	.766
	2급	604	3,51	
	계	934	3,6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2-49〉 직장 내 직위에 따른 담당 업무 비중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i>p</i>)
상담서비스	관리자	278	9,547	11,6976	.000***
	실무자	671	6,521	10,0332	
	계	949	7,407	10,6313	
입퇴소관리	관리자	278	5,86	9,979	.000***
	실무자	671	3,07	9,162	
	계	949	3,89	9,489	
생활지도	관리자	278	11,155	19,1570	.000***
	실무자	671	39,509	35,4294	
	계	949	31,203	34,0745	
프로그램기획 /시행	관리자	278	11,723	15,2249	.869
	실무자	671	11,899	14,9292	
	계	949	11,848	15,0086	
여가문화 서비스	관리자	278	3,496	5,5776	.194
	실무자	671	4,078	6,5456	
	계	949	3,908	6,2802	
자립생활지원	관리자	278	3,529	8,9146	.694
	실무자	671	3,779	8,9231	
	계	949	3,706	8,9167	
재활서비스	관리자	278	2,594	6,6791	.212
	실무자	671	3,401	9,8893	
	계	949	3,164	9,0713	
자원개발/연 계홍보	관리자	278	4,678	8,0303	.003**
	실무자	671	2,909	8,2434	
	계	949	3,427	8,2169	
자원봉사관리	관리자	278	4,441	8,7332	.579
	실무자	671	4,841	10,6093	
	계	949	4,723	10,0930	
지역사회조직 /옹호	관리자	278	2,647	5,4685	.000***
	실무자	671	.864	4,3737	
	계	949	1,386	4,7872	
조직관리	관리자	278	18,39	23,278	.000***
	실무자	671	3,50	13,539	
	계	949	7,86	18,271	
행정 (문서관리)	관리자	278	17,360	17,7119	.000***
	실무자	671	11,877	20,6744	
	계	949	13,483	19,9996	
기타	관리자	278	4,19	13,218	.412
	실무자	671	3,45	12,344	
	계	949	3,67	12,604	

†*p*<.10, **p*<.05, ***p*<.01, ****p*<.001

(4)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 주 평균 근무시간은 50.3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 상 40시간 근무와 비교하였을 때,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50〉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1,080	50.26	14.522	30	120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에 따른 근무시간의 차이】

- 자격 등급에 따라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급 사회복지사가 1급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직위에 따라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무자가 관리자에 비하여 약 5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51〉 자격 등급에 따른 근무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p)
자격등급	1급	342	47.78	11.787	.000***
	2급	714	51.37	15.478	
	계	1,056	50.21	14.479	
직장 내 직위	관리자	323	46.90	9.188	.000***
	실무자	748	51.72	16.117	
	계	1,071	50.27	14.549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보수 및 근로실태

(1) 연봉(세전) 총액

□ 1인당 연봉(세전) 총액은 평균 2,75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값은 2,700만원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평균적인 경력인 7년 8개월(8호봉)의 평균적인 연봉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2-52〉 연봉총액

(단위 : 만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봉액	1,035	2,754.43	632,248	0	5,500
	25%		중위값 (50%)	75%	
	2,400		2,700	3,000	

【성별,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 연령에 따른 연봉의 차이】

- 사회복지사의 성별에 따라 연봉(평균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 사회복지사가 여성 사회복지사에 비해 약 142만원 더 많았음
-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에 따른 연봉(평균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급 사회복지사가 2급 사회복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봉 : 1급의 경우 평균 2,938만원, 2급의 경우 평균 2,666만원으로 약 272만원의 차이
- 직위에 따라 연봉(평균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리자가 실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봉을 받음 : 관리자는 평균 3,126만원, 실무자는 평균 2,598만원으로 약 528만원의 차이
- 연령에 따라 연봉(평균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40대 이상의 경우 평균 3,010만원, 20~30대의 경우 평균 2,625만원으로 약 384만원의 차이

〈표 2-53〉 성별에 따른 연봉

(단위 : 명, 만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i>p</i>)
성별	남	329	2851.44	604.637	.001**
	여	704	2709.11	640.889	
	계	1033	2754.44	632.765	
자격 등급	1급	332	2937.51	707.684	.000***
	2급	681	2665.88	576.085	
	계	1,013	2754.90	634.882	
직장 내 직위	관리자	308	3126.14	705.663	.000***
	실무자	720	2598.25	526.229	
	계	1,028	2756.41	633.450	
연령	20~30대	683	2625.46	517.359	.000***
	40대 이상	336	3009.54	755.447	
	계	1019	2752.11	632.26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월 기본급

-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은 약 160만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 평균 월기본급은 162만원이었으며, 중위값 월 기본급은 160만원으로 나타났음

〈표 2-54〉 월 기본급 수준

(단위 : 만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본급	746	162.21	49.058	70	335
	25%		중위값(50%)		75%
	129.75		160		193.50

【성별,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 연령에 따른 월 기본급의 차이】

- 사회복지사의 성별에 따라 기본급(평균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 사회복지사의 평균 기본급이 여성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약 13만원 더 많았음
-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에 따라 월 기본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급 사회복지사가 2급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월 기본급(약 1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직위에 따라 월 기본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리자가 실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월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관리자의 경우 평균 188만원, 실무자의 경우 평균 151만원으로 약 37만원의 차이가 있었음
- 연령에 따른 월 기본급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40대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20~30대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월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 이상 사회복지사의 경우 평균 185만원, 20~30대 사회복지사의 경우 평균 152만원으로 약 33만원의 차이가 있었음

〈표 2-55〉 특성에 따른 월 기본급

(단위 : 명, 만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i>p</i>)
성별	남	237	171.28	49.044	.001**
	여	509	157.99	48.537	
	계	746	162.21	49.058	
자격 등급	1급	249	172.36	54.290	.000***
	2급	481	157.70	45.411	
	계	730	162.70	49.080	
직장 내 직위	관리자	214	187.71	57.263	.000***
	실무자	526	151.86	41.294	
	계	740	162.23	49.203	
연령	20~30대	516	152.30	42.095	.000***
	40대 이상	222	185.12	55.846	
	계	738	162.18	48.993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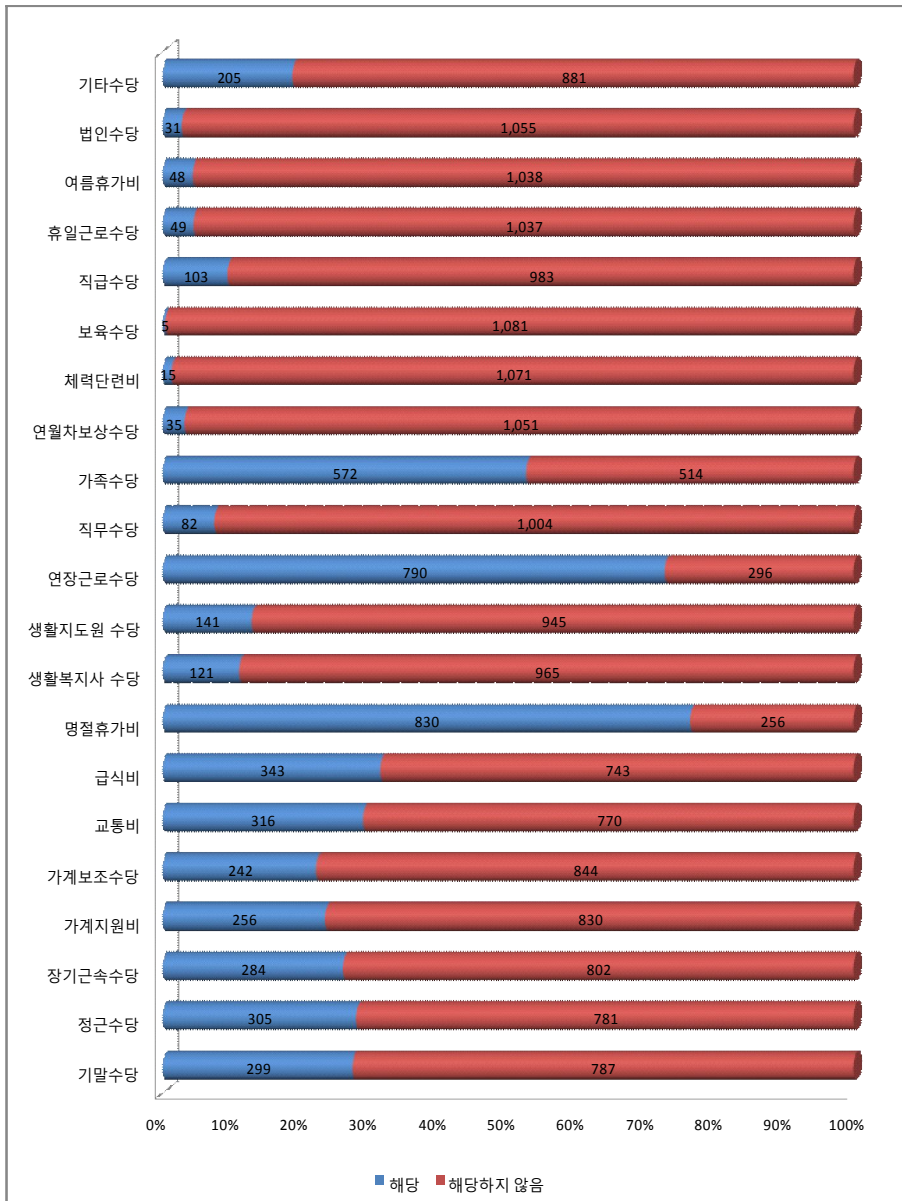
(3)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로는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지급받는 수당의 응답 비율’ 과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당의 응답 비율’ 간 차이가 있고, 특히 가족수당의 경우는 그 차이가 커서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시설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과 다름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로는 명절휴가비가 830명(76.4%)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가 지급받는 수당으로 나타났으며,
- 이어 연장근로수당 790명(72.7%), 가족수당 572명(52.7%), 급식비 343명(31.6%), 교통비 316명(29.1%), 정근수당 305명(28.1%), 기말수당 299명(27.5%), 장기근속수당 284명(26.2%), 가계지원비 256명(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56〉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단위 : 명, %)

수당의 종류	해당		해당하지 않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말수당	299	27.5	787	72.5	1,086	100.0
정근수당	305	28.1	781	71.9	1,086	100.0
장기근속수당	284	26.2	802	73.8	1,086	100.0
가계지원비	256	23.6	830	76.4	1,086	100.0
가계보조수당	242	22.3	844	77.7	1,086	100.0
교통비	316	29.1	770	70.9	1,086	100.0
급식비	343	31.6	743	68.4	1,086	100.0
명절휴가비	830	76.4	256	23.6	1,086	100.0
생활복지사 수당	121	11.1	965	88.9	1,086	100.0
생활지도원 수당	141	13.0	945	87.0	1,086	100.0
연장근로수당	790	72.7	296	27.3	1,086	100.0
직무수당	82	7.6	1,004	92.4	1,086	100.0
가족수당	572	52.7	514	47.3	1,086	100.0
연월차보상수당	35	3.2	1,051	96.8	1,086	100.0
체력단련비	15	1.4	1,071	98.6	1,086	100.0
보육수당	5	0.5	1,081	99.5	1,086	100.0
직급수당	103	9.5	983	90.5	1,086	100.0
휴일근로수당	49	4.5	1,037	95.5	1,086	100.0
여름휴가비	48	4.4	1,038	95.6	1,086	100.0
법인수당	31	2.9	1,055	97.1	1,086	100.0
기타수당	205	18.9	881	81.1	1,086	100.0



[그림 2-29]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4)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 응답자들은 현재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연봉수준에 대해서 평균 3,414만원(중위값 3,400만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앞서 응답한 실제 연봉액과 비교하였을 때(중위값 기준),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적절한 연봉수준으로 향상시키려면 약 700만원이 더 지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표 2-57〉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단위 : 만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적정임금수준	929	3,414.33	838.105	0	8,000
	25%		중위값(50%)		75%
	3,000		3,400		4,000

【성별,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 연령에 따른 적정 연봉수준의 차이】

■ 사회복지사의 성별에 따른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차이

- 성별에 따라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 사회복지사의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이 여성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약 341만원 더 많았음

■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에 따른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차이

- 자격 등급에 따라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급 사회복지사의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이 2급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약 246만원 더 많았음

■ 사회복지사의 직장 내 직위에 따른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차이

- 직위에 따라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리자의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이 실무자에 비하여 약 658만원 더 많았음

■ 연령에 따른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차이

- 연령에 따라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40대 이상 사회복지사의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이 20~30대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약 486만원 더 많았음

〈표 2-58〉 성별에 따른 적정 연봉수준(희망 연봉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i>p</i>)
성별	남	300	3645.07	917.189	.000***
	여	627	3304.46	775.622	
	계	927	3414.69	838.894	
자격 등급	1급	307	3576.33	887.562	.000***
	2급	601	3330.59	804.642	
	계	908	3413.67	841.192	
직장 내 직위	관리자	276	3872.80	896.978	.000***
	실무자	644	3214.79	729.667	
	계	920	3412.19	839.224	
연령	20~30대	633	3261.69	738.573	.000***
	40대 이상	281	3747.92	947.577	
	계	914	3411.18	838.66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5) 실제 연봉액과 적정 연봉수준의 차이

- 사회복지사들의 실제 연봉과 적정수준으로 생각하는 연봉 간에는 660~70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음
-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봉액의 평균은 2,754만원으로 적정 연봉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평균값 3,414만원과 660만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연봉액 중위값은 2,700만원으로 적정 연봉수준의 중위값 3,400만원과 700만원의 차이를 보였음

〈표 2-59〉 실제 연봉액과 적정 연봉수준의 차이

(단위 : 만원)

구분	연봉액 (A)	적정 연봉수준 (B)	차이 (B-A)
평균값	2,754	3,414	660
중위값	2,700	3,400	700

(6)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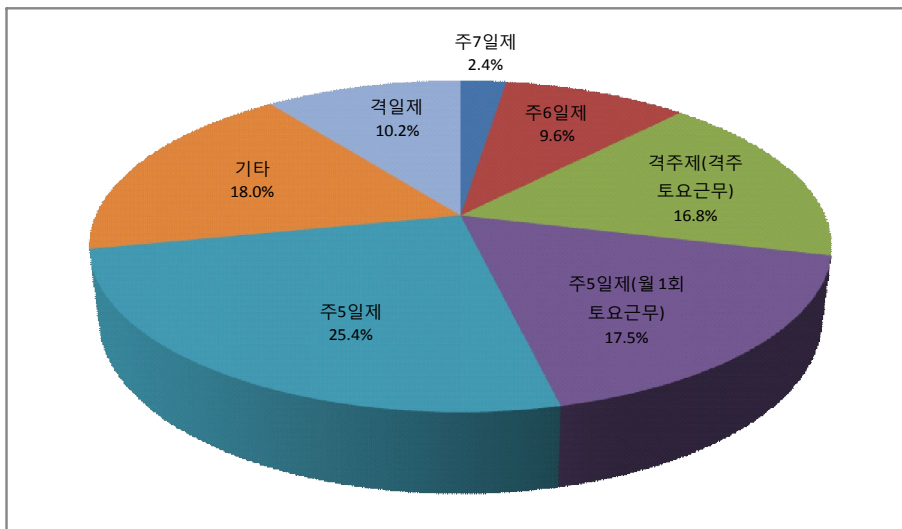
-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근무형태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무형태는 주 5일제가 288명(25.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기타로 204명(18.0%)에 이르고 있었음
- 이어 주5일제(월1회 토요근무) 199명(17.5%), 격주 토요근무 191명(16.8%), 격일제 근무 116명(10.2%), 주6일제 109명(9.6%), 주7일제 27명(2.4%) 등이었음
 - 기타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유형이 다양하고, 근무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근무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기타에는 ‘2박3일간 2교대’ , ‘2일 근무, 2일 휴무(48시간 교대)’ , ‘격주 일요일 근무’ , ‘변형된 3교대 근무’ , ‘변형된 주5일제 근무’ , ‘숙직 및 주말 일직’ , ‘주40시간 근무’ , ‘주야 교대’ , ‘주1회 24시간 당직’ , ‘탄력근무제’ 등 기존의 범주 구성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매우 다양한 근무형태들이 있었음

〈표 2-60〉 근무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7일제	27	2.4
주6일제	109	9.6
격주 토요일근무	191	16.8
주5일제(월1회 토요일근무)	199	17.5
주5일제	288	25.4
격일제 근무	116	10.2
기타	204	18.0
합계	1,134	100.0



[그림 2-30]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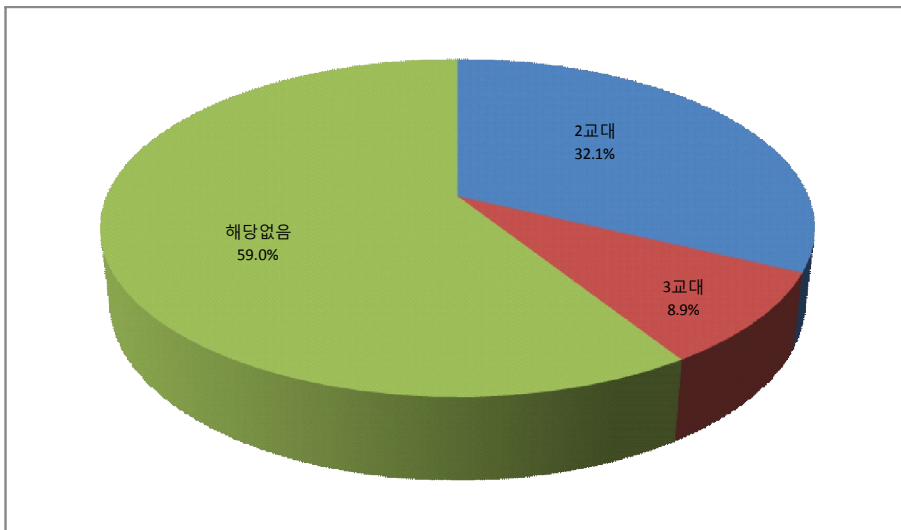
(7) 교대근무형태

- 교대근무 형태로는 '해당 없음'의 경우가 625명(59.0%)으로 가장 많았으며, 2교대 근무가 340명(32.1%), 3교대 근무가 94명(8.9%)으로 나타났음

〈표 2-61〉 교대근무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2교대	340	32.1
3교대	94	8.9
해당 없음	625	59.0
합계	1,059	100.0



[그림 2-31] 교대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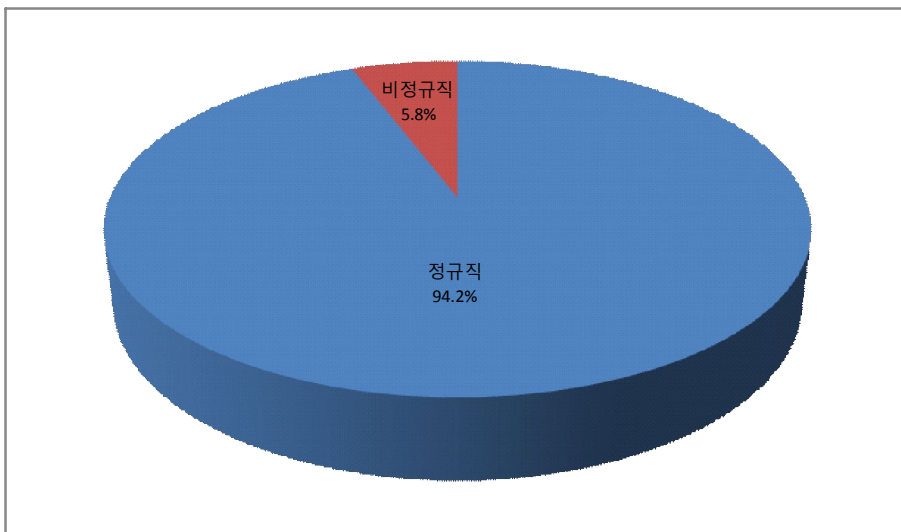
(8) 고용형태

-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1,117명(94.2%), 비정규직이 69명(5.8%)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62〉 고용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정규직	1,117	94.2
비정규직	69	5.8
합계	1,186	100.0



[그림 2-69] 고용형태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

■ 자격 등급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

- 자격 등급과 관계없이 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는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직위에 대하여 고용형태의 차이

- 직위와 관계없이 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관리자(시설장, 상급 관리자, 중간관리자)의 경우는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무자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3〉 자격 등급에 따른 고용형태

(단위 : 명, %)

		고용형태		계	$\chi^2(p)$
		정규직	비정규직		
자격 등급	1급	356 (96.22)	14 (3.78)	370 (100.00)	4.210***(.038)
	2급	733 (93.14)	54 (6.86)	787 (100.00)	
	계	1,089 (94.12)	68 (5.88)	1,157 (100.00)	
직장 내 직위	관리자	340 (97.98)	7 (2.02)	347 (100.00)	12.753***(.000)
	실무자	770 (92.66)	61 (7.34)	831 (100.00)	
	계	1,110 (94.23)	68 (5.77)	1,178 (100.00)	

[†]p<.10, *p<.05, **p<.01, ***p<.001

4) 인적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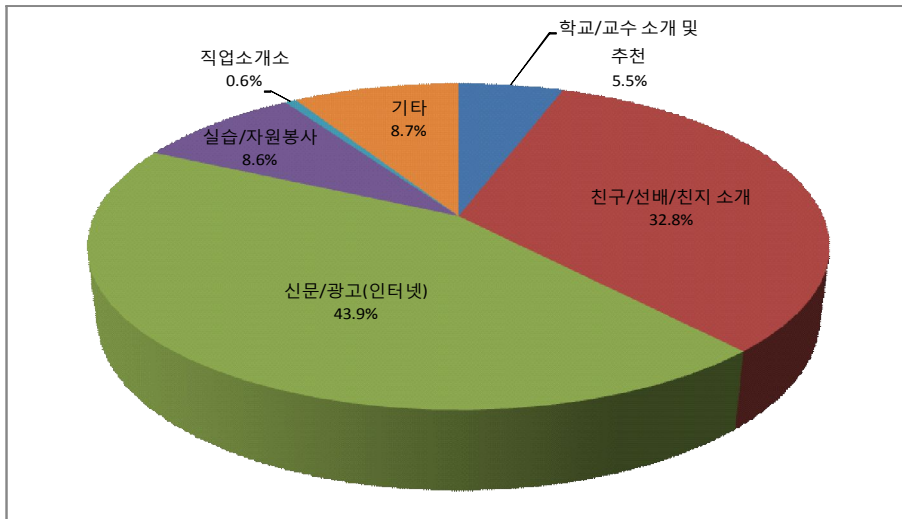
(1) 현 직장 입사경로

- 현 직장 입사경로로 신문/광고(인터넷 등)를 통해 입사한 경우는 521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배·친지의 소개를 통해 389명(32.8%), 기타 103명(8.7%), 실습·자원봉사를 통해 입사하게 된 경우 102명(8.6%), 학교·교수의 소개 및 추천 65명(5.5%), 직업소개소 7명(0.6%)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기타의 내용으로는 법인 내 인사 이동, (종교에 관련된 경우) 보좌소임 이동, 설립, 스카우트 등이 있었음

〈표 2-64〉 현 직장 입사경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학교/교수의 소개 및 추천	65	5.5
친구/선배/친지의 소개	389	32.8
신문/광고(인터넷 등)	521	43.9
실습/자원봉사	102	8.6
직업소개소	7	0.6
기타	103	8.7
합계	1,187	100.0



[그림 2-33] 현 직장 입사경로

【성별, 연령에 따른 입사경로의 차이】

■ 사회복지사의 성별에 따른 입사경로의 차이

- 사회복지사의 성별에 따라 입사경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친구/선배/친지의 소개를 통한 경우가 많았고,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문/광고(인터넷 등)를 통한 경우가 많았음

■ 사회복지사의 연령에 따른 입사경로의 차이

- 사회복지사의 연령에 따라 입사경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30대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문/광고(인터넷 등)를 통한 경우가 많았고, 40대 이상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친구/선배/친지의 소개를 통한 경우가 많았음

〈표 2-65〉 성별에 따른 입사경로

(단위 : 명, %)

구분	학교/ 교수소개 및 추천	친구/선배 /친지소개	신문/광고 (인터넷)	실습/ 자원봉사	직업 소개소	기타	전체	$\chi^2(p)$
남	19 (5.22)	142 (39.01)	133 (36.54)	30 (8.24)	4 (1.10)	36 (9.89)	364 (100.00)	16.436** (.006)
여	46 (5.62)	244 (29.79)	387 (47.25)	72 (8.79)	3 (0.37)	67 (8.18)	819 (100.00)	
계	65 (5.49)	386 (32.63)	520 (43.96)	102 (8.62)	7 (0.59)	103 (8.71)	1,183 (100.00)	

†p<.10, *p<.05, **p<.01, ***p<.001

〈표 2-66〉 연령에 따른 입사경로

(단위 : 명, %)

구분	학교/ 교수소개 및 추천	친구/선배 /친지소개	신문/광고 (인터넷)	실습/ 자원봉사	직업 소개소	기타	전체	$\chi^2(p)$
20~ 30대	44 (5.74)	211 (27.55)	389 (50.78)	71 (9.27)	4 (0.52)	47 (6.14)	766 (100.00)	56.507*** (.000)
40대 이상	21 (5.36)	164 (41.84)	123 (31.38)	28 (7.14)	3 (0.77)	53 (13.52)	392 (100.00)	
계	65 (5.61)	375 (32.38)	512 (44.21)	99 (8.55)	7 (0.60)	100 (8.64)	1,158 (100.00)	

†p<.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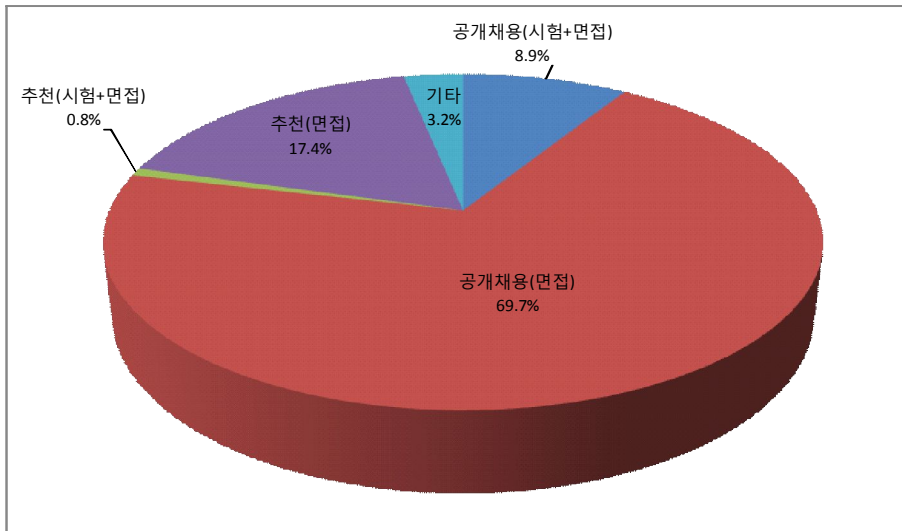
(2) 입사방법

- 입사 방법으로는 공개채용 시 면접을 본 후 입사한 경우가 832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그 다음으로는 추천을 받아 면접 후 입사한 경우 208명(17.4%), 공개채용 시 시험과 면접 과정을 모두 거치고 입사한 경우 106명(8.9%), 기타 38명(3.1%), 추천을 받아 시험과 면접과정을 모두 거치고 입사한 경우가 9명(0.8%)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기타 입사방법으로는 인사 이동, 설립, 2대 승계, '실습자원봉사를 통해' 등의 내용이 있었음

〈표 2-67〉 입사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공개채용(시험+면접)	106	8.9
공개채용(면접)	832	69.7
추천(시험+면접)	9	0.8
추천(면접)	208	17.4
기타	38	3.1
합계	1,193	100.0



[그림 2-34] 입사방법

【연령에 따른 입사방법의 차이】

■ 사회복지사의 연령에 따라 입사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30대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문/광고(인터넷 등)를 통한 경우가 많았고, 40대 이상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친구/선배/친지의 소개를 통한 경우가 많았음

〈표 2-68〉 성별에 따른 입사방법

(단위 : 명, %)

구분	공개채용 (시험+면접)	공개채용 (면접)	추천 (시험+면접)	추천 (면접)	기타	전체	$\chi^2(p)$
20~ 30대	66 (8.57)	588 (76.36)	2 (0.26)	101 (13.12)	13 (1.69)	770 (100.00)	59.117*** (.000)
40대 이상	36 (9.11)	228 (57.72)	7 (1.77)	100 (25.32)	24 (6.08)	395 (100.00)	
계	102 (8.76)	816 (70.04)	9 (0.77)	201 (17.25)	37 (3.18)	1,165 (100.00)	

† $p<.1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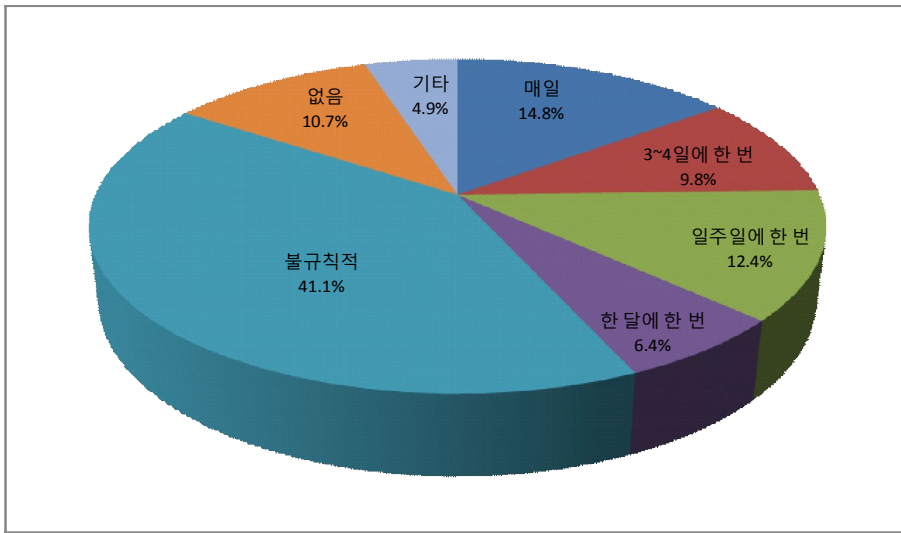
(3) 슈퍼비전의 빈도

- 슈퍼비전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1.1%), 슈퍼비전이 없는 경우도 1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슈퍼비전의 빈도를 살펴보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454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63명(14.8%),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137명(12.4%), 3-4일에 한 번인 경우가 108명(9.8%), 한 달에 한 번인 경우가 71명(6.4%), 기타 54명(4.9%)이었으며, 슈퍼비전이 없는 경우는 118명(10.7%)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69〉 슈퍼비전의 빈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일	163	14.8
3-4일에 한 번	108	9.8
일주일에 한 번	137	12.4
한 달에 한 번	71	6.4
불규칙적	454	41.1
없음	118	10.7
기타	54	4.9
합계	1,105	100.0



[그림 2-35] 슈퍼비전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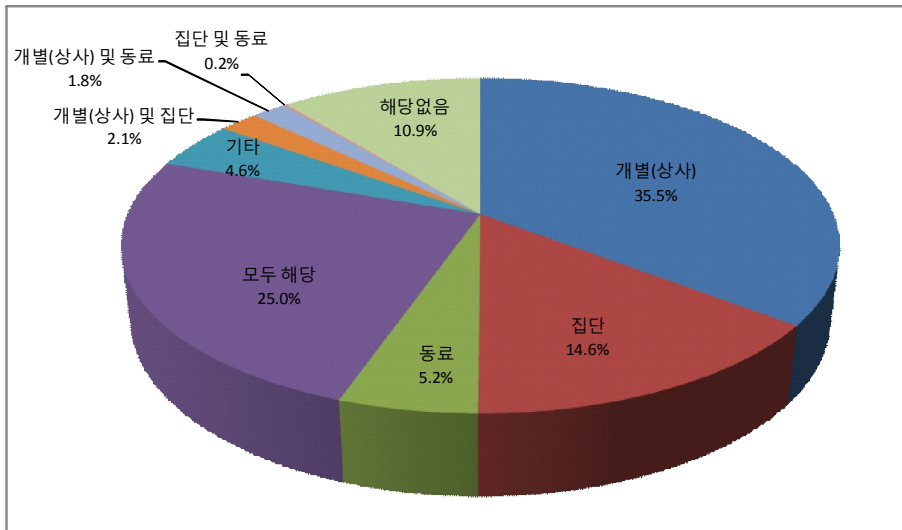
(4) 슈퍼비전의 유형

- 슈퍼비전의 유형으로는 상사로부터 개별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형태로 슈퍼비전을 받고 있거나 반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인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유추됨
- 슈퍼비전의 유형으로는 상사로부터 개별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가 385명(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개별·집단·동료 슈퍼비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272명(25.0%)으로 나타났다
- 이어 집단 슈퍼비전 159명(14.6%), 동료 슈퍼비전 57명(5.2%), 기타 50명(4.6%), 개별 및 집단 슈퍼비전 23명(2.1%), 개별 및 동료 슈퍼비전 20명(1.8%), 집단 및 동료 슈퍼비전 2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해당 없음(슈퍼비전이 없는 경우)’도 118명(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0〉 슈퍼비전의 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개별(상사)	385	35.5
집단	159	14.6
동료	57	5.2
모두 해당	272	25.0
개별(상사) 및 집단	23	2.1
개별(상사) 및 동료	20	1.8
집단 및 동료	2	0.2
기타	50	4.6
해당 없음	118	10.9
합계	1,086	100.0



[그림 2-36] 슈퍼비전의 유형

(5) 현 직장 만족도

□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는 ‘보통수준(3.07점)’ 으로 나타남

- 현 직장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1~5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직장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분석하였음
-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동료관계로 평균 3.63점이었으며, 두 번째는 상사관계로 3.34점이었음
 - 업무내용은 3.27점, 근무환경은 3.19점, 조직 발전 전망은 3.16점, 근무시간 3.13점, 슈퍼비전 3.10점, 민주적 의사결정 3.06점, 유관기관과의 관계 3.06점, 임금수준 2.83점, 승진전망 2.82점, 교육 2.69점, 복리후생 2.66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동료관계와 상사관계 등 조직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조직 발전 전망, 근무시간, 슈퍼비전,

민주적 의사결정,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의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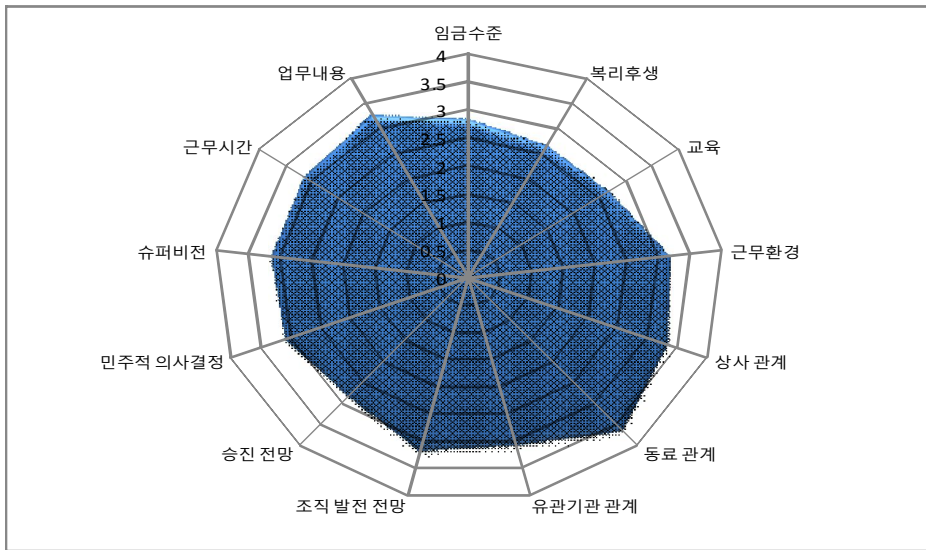
- 이에 반해 임금수준, 승진전망, 교육, 복리후생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개인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다소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평균 3.07점으로 보통을 미세하게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1〉 직장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임금수준	1,203	2.83	0.914	1	5
복리후생	1,202	2.66	0.898	1	5
교육	1,196	2.69	0.959	1	5
근무환경	1,204	3.19	0.857	1	5
상사 관계	1,202	3.34	0.864	1	5
동료 관계	1,203	3.63	0.720	1	5
유관기관 관계	1,202	3.06	0.753	1	5
조직 발전 전망	1,205	3.16	0.816	1	5
승진 전망	1,196	2.82	0.822	1	5
민주적 의사결정	1,202	3.06	0.853	1	5
슈퍼비전	1,197	3.10	0.793	1	5
근무시간	1,203	3.13	0.894	1	5
업무내용	1,204	3.27	0.770	1	5
전반적 만족도	1,177	3.07	0.571	1	5



[그림 2-37] 직장만족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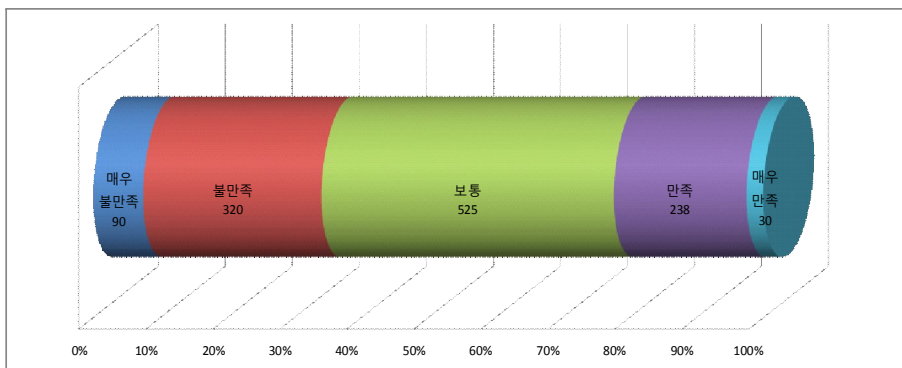
① 임금수준

-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525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나, 불만족 320명(26.6%), 만족 238명(19.8%), 매우 불만족 90명(7.5%), 매우 만족 30명(2.5%)의 순으로 나타남
-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72〉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90	7.5
불만족	320	26.6
보통	525	43.6
만족	238	19.8
매우 만족	30	2.5
합계	1,203	100.0



[그림 2-38]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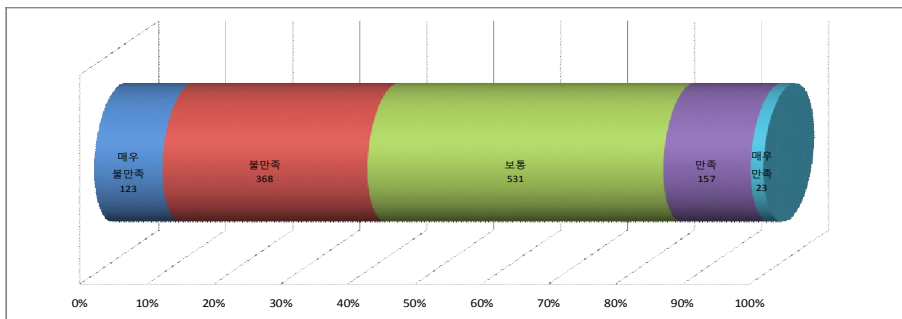
② 복리후생

-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531명(44.2%), 불만족 368명(30.6%), 만족 157명(13.1%), 매우 불만족 123명(10.2%), 매우 만족 23명(1.9%)의 순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임금수준과 마찬가지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3〉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23	10.2
불만족	368	30.6
보통	531	44.2
만족	157	13.1
매우 만족	23	1.9
합계	1,202	100.0



[그림 2-39]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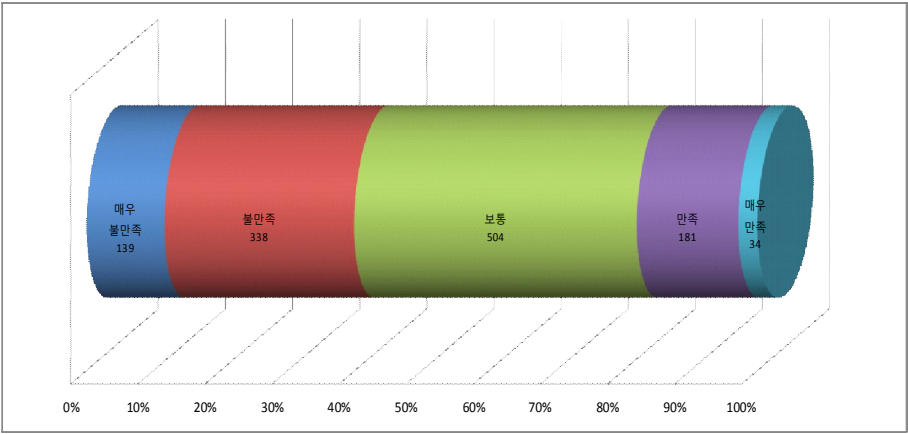
③ 교육

- 교육에 대한 만족도로는 보통 504명(42.1%), 불만족 338명(28.3%), 만족 181명(15.1%), 매우 불만족 139명(11.6%), 매우 만족 34명(2.8%)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만족한 경우보다 불만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4〉 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39	11.6
불만족	338	28.3
보통	504	42.1
만족	181	15.1
매우 만족	34	2.8
합계	1,196	100.0



[그림 2-40] 교육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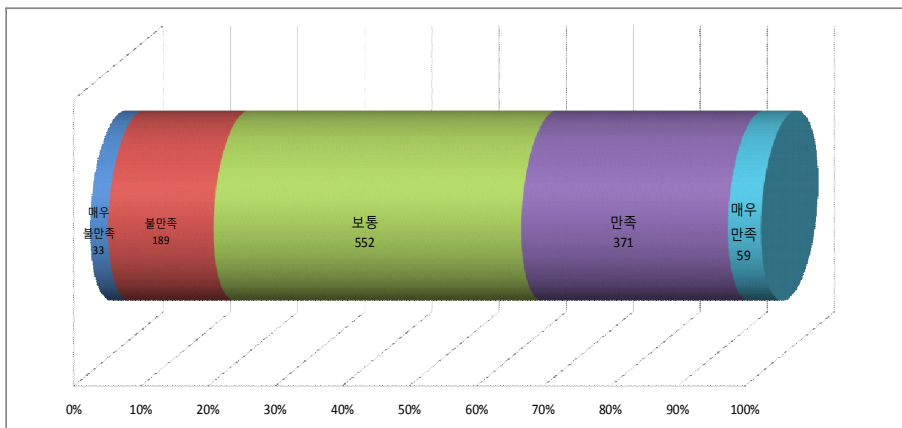
④ 근무환경

-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보통 552명(45.8%), 만족 371명(30.8%), 불만족 189명(15.7%), 매우 만족 59명(4.9%), 매우 불만족 33명(2.7%)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5〉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33	2.7
불만족	189	15.7
보통	552	45.8
만족	371	30.8
매우 만족	59	4.9
합계	1,204	100.0



[그림 2-41]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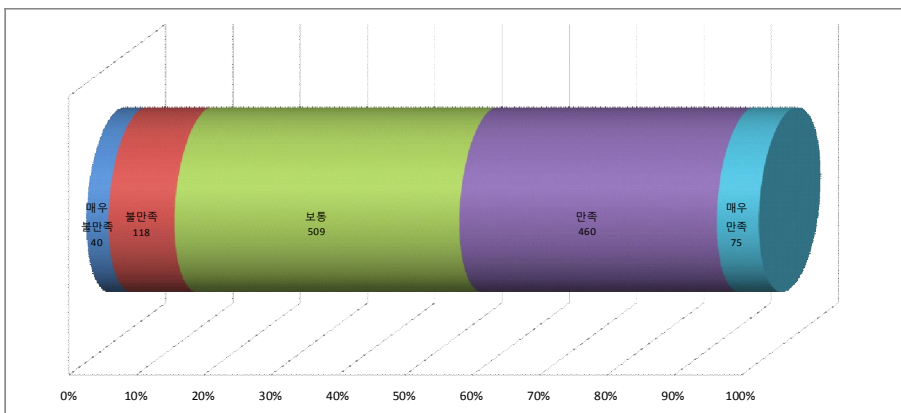
⑤ 상사와의 관계

-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9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460명(38.3%), 불만족 118명(9.8%), 매우 만족 75명(6.2%), 매우 불만족 40명(3.3%)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6〉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40	3.3
불만족	118	9.8
보통	509	42.3
만족	460	38.3
매우 만족	75	6.2
합계	1,202	100.0



[그림 2-42] 상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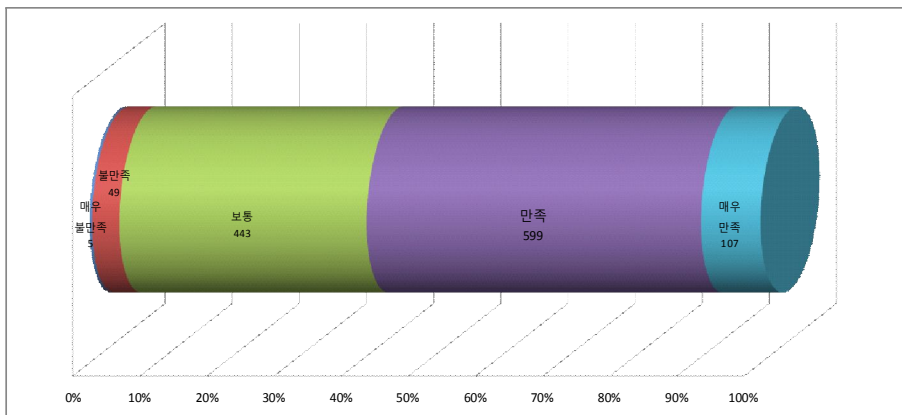
⑥ 동료와의 관계

- 동료와의 관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99명(49.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통 443명(36.8%), 매우 만족 107명(8.9%), 불만족 49명(4.1%), 매우 불만족 5명(0.4%)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직장만족도 중에서는 동료와의 관계가 다른 응답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7〉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5	0.4
불만족	49	4.1
보통	443	36.8
만족	599	49.8
매우 만족	107	8.9
합계	1,203	100.0



[그림 2-43]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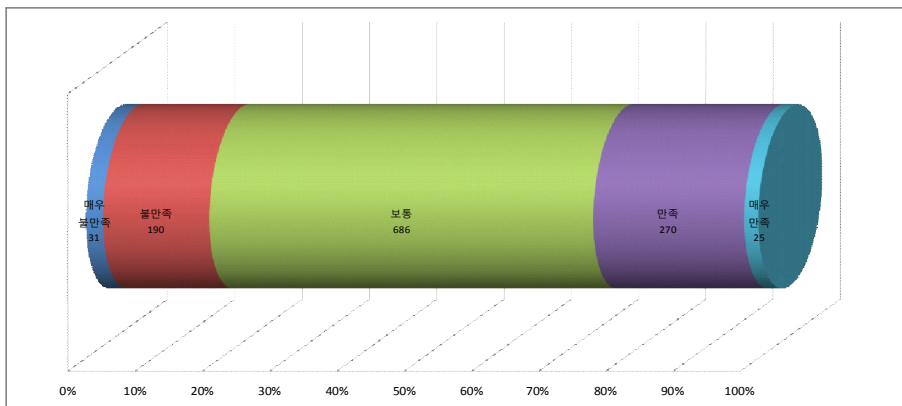
⑦ 유관기관과의 관계

-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보통에 응답한 경우가 686명(57.1%)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으며, 만족 270명(22.5%), 불만족 190명(15.8%), 매우 불만족 2.6%, 매우 만족 25명(2.1%)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78〉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31	2.6
불만족	190	15.8
보통	686	57.1
만족	270	22.5
매우 만족	25	2.1
합계	1,202	100.0



[그림 2-44]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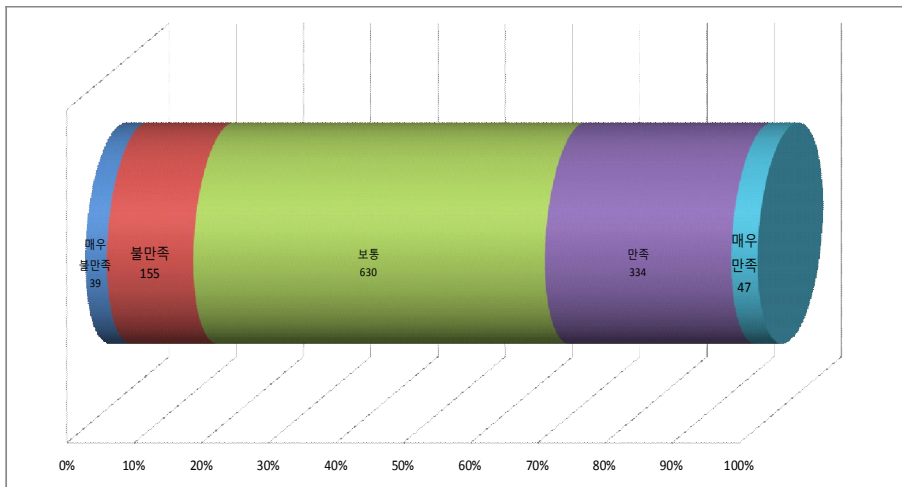
⑧ 조직 발전 전망

-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보통 630명(52.3%), 만족 334명(27.7%), 매우 만족 47명(3.9%), 매우 불만족 39명(3.2%)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생활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시설의 발전 전망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9〉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39	3.2
불만족	155	12.9
보통	630	52.3
만족	334	27.7
매우 만족	47	3.9
합계	1,205	100.0



[그림 2-45]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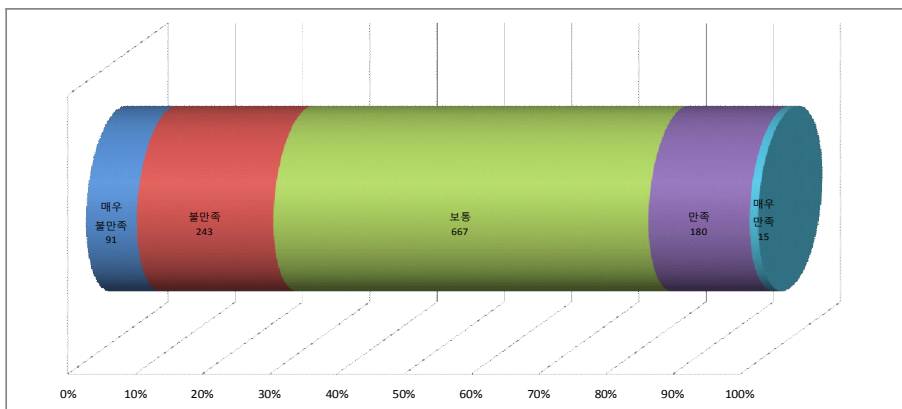
⑨ 승진 전망

- 승진 전망에 대해서는 보통 667명(55.8%), 불만족 243명(20.3%), 만족 180명(15.1%), 매우 불만족 91명(7.6%), 매우 만족 15명(1.3%)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승진 전망에 대해서는 만족보다는 불만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표 2-80〉 승진 전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91	7.6
불만족	243	20.3
보통	667	55.8
만족	180	15.1
매우 만족	15	1.3
합계	1,196	100.0



[그림 2-46] 승진 전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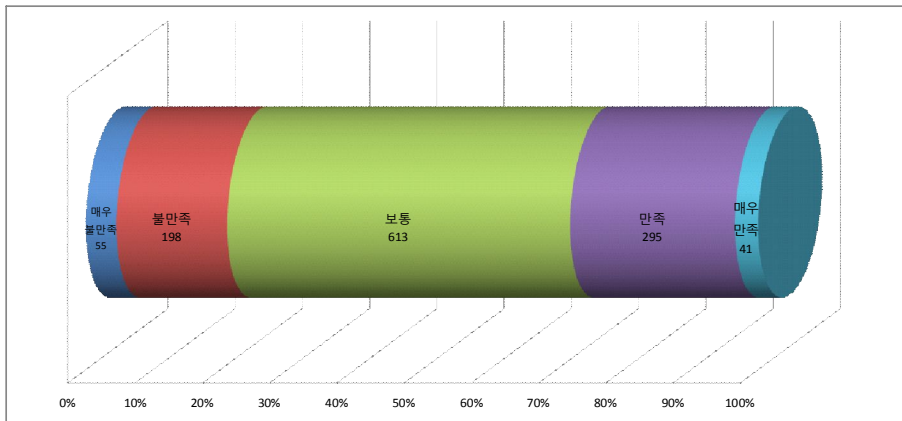
⑩ 민주적 의사결정

-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613명(51.0%), 만족 295명(24.5%), 불만족 198명(16.5%), 매우 불만족 55명(4.6%), 매우 만족 41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1〉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55	4.6
불만족	198	16.5
보통	613	51.0
만족	295	24.5
매우 만족	41	3.4
합계	1,202	100.0



[그림 2-47]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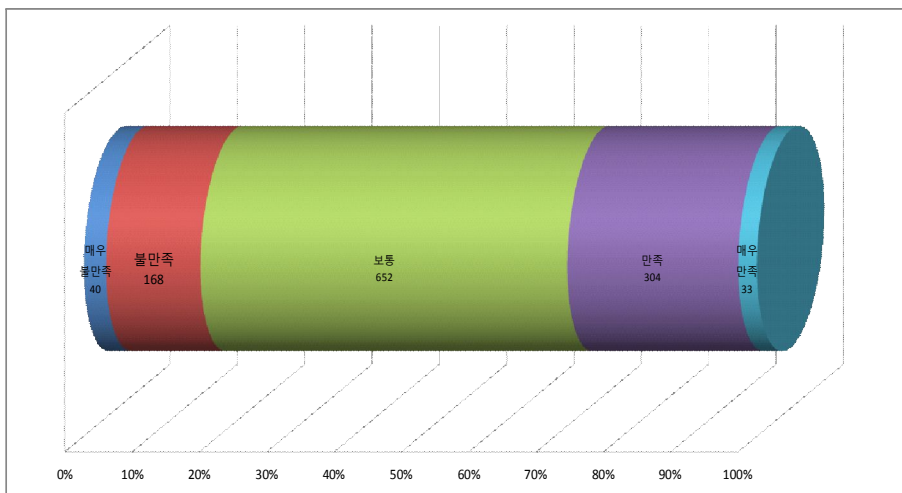
⑪ 슈퍼비전

-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652명(54.5%), 만족 304명(25.4%), 불만족 168명(14.0%), 매우 불만족 40명(3.3%), 매우 만족 33명(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2〉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40	3.3
불만족	168	14.0
보통	652	54.5
만족	304	25.4
매우 만족	33	2.8
합계	1,197	100.0



[그림 2-48]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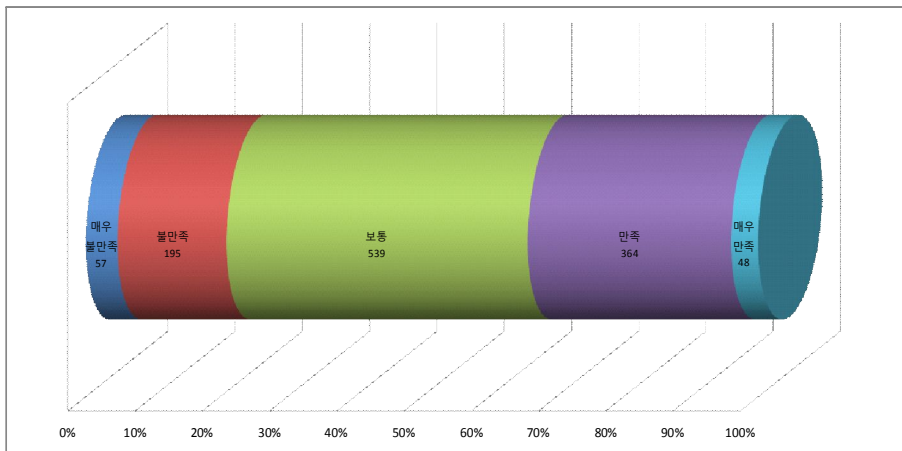
⑫ 근무시간

-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39명(44.8%), 만족 364명(30.3%), 불만족 195명(16.2%), 매우 불만족 57명(4.7%), 매우 만족 48명(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3〉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57	4.7
불만족	195	16.2
보통	539	44.8
만족	364	30.3
매우 만족	48	4.0
합계	1,203	100.0



[그림 2-49]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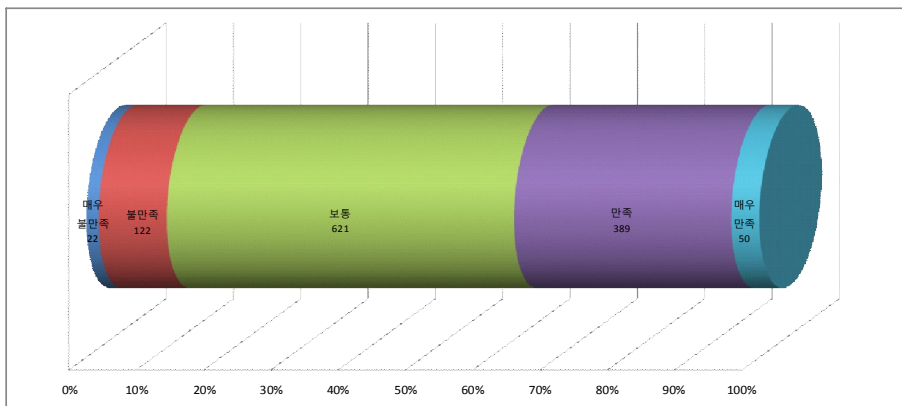
⑬ 업무내용

-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621명(51.6%), 만족 389명(32.3%), 불만족 122명(10.1%), 매우 만족 50명(4.2%), 매우 불만족 22명(1.8%)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내용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보다는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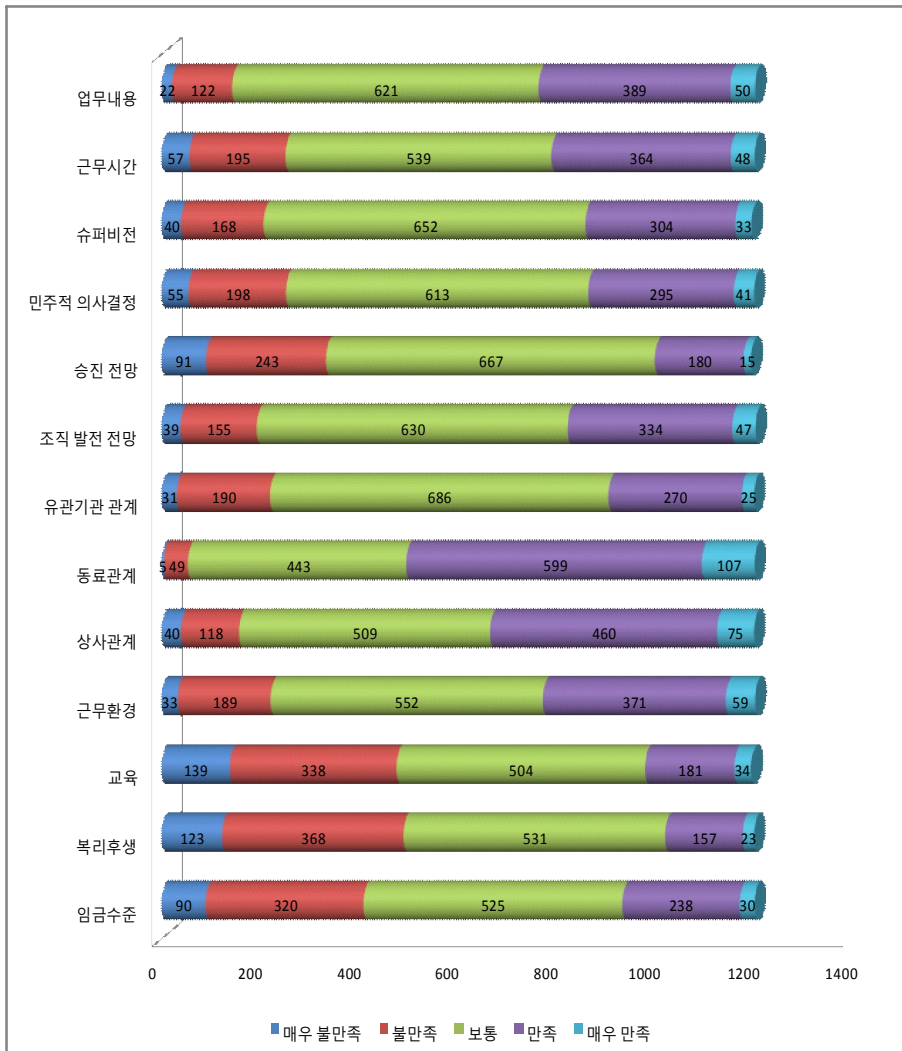
〈표 2-84〉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22	1.8
불만족	122	10.1
보통	621	51.6
만족	389	32.3
매우 만족	50	4.2
합계	1,204	100.0



[그림 2-50]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그림 2-51] 직장 만족도(종합)

5) 건강상태

(1) 주관적 건강상태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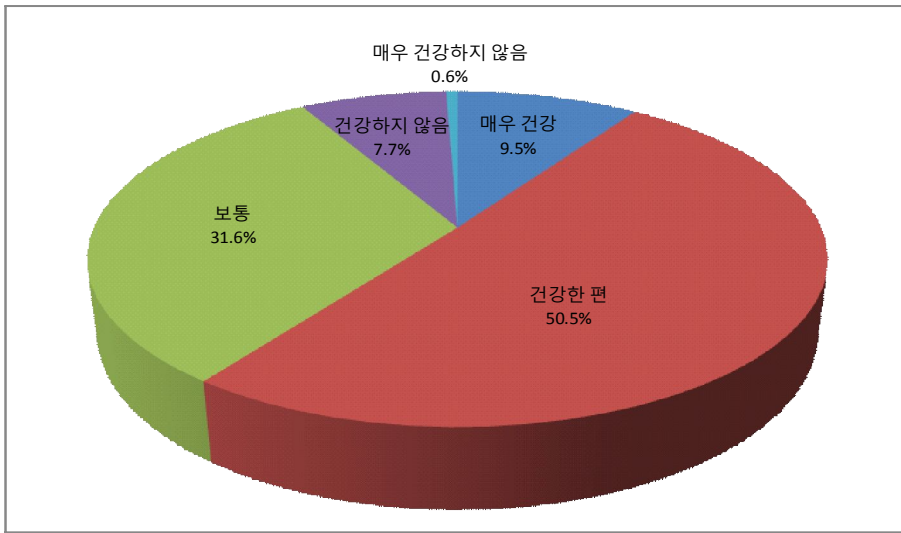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599명(50.5%)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13명(9.5%)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총 71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0.1%를 차지하였음
-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5명(31.6%)이었으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91명(7.7%),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0.6%)이었음
-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 점수는 2.39점으로 보통수준(3점)보다 건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1점에 가까울수록 건강)

〈표 2-85〉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건강	113			9.5	
건강	599			50.5	
보통	375			31.6	
건강하지 않음	91			7.7	
매우 건강하지 않음	7			0.6	
합계	1,185			100.0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건강상태	1,185	2.39	0.787	1	5

5)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1점)’ 부터 ‘매우 건강하지 않음(5점)’ 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음



[그림 2-52] 주관적 건강상태

(2) 지각된 스트레스

- 사회복지생활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Cohen 등(1983)이 고안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거나 또 다른 대처를 요구하는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인지상태를 사정하는 도구임(서초구립 반포종합복지관 외, 2007).
- 조사결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1.76점(0~4점,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임)으로 스트레스는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6〉 지각된 스트레스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각된 스트레스	1,194	1.76	0.4174	0	3.20

(3) 자아탄력성

-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것을 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음
- 조사 결과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은 2.72점(1~4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뛰어남)으로 보통수준인 2.5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7〉 자아탄력성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아탄력성	1,181	2.72	0.3036	1.57	3.93

(4) 주관적 행복도

- 주관적 행복도는 0점('나는 매우 불행하다')에서 10점('나는 매우 행복하다')까지의 범위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조사 결과 주관적 행복의 평균값은 7.08점으로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5점) 이상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8〉 주관적 행복도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행복도	1,176	7.08	1.660	0	10

6) 업무소진 및 이직

(1) 업무 소진

- 업무에 대한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영미(1991)가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조사 결과 소진에 대한 평균값은 1.82점(0~6점,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소진 상태임)으로, 응답자들의 소진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9〉 소진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진	1,134	1.82	0.752	0	4.36

(2) 이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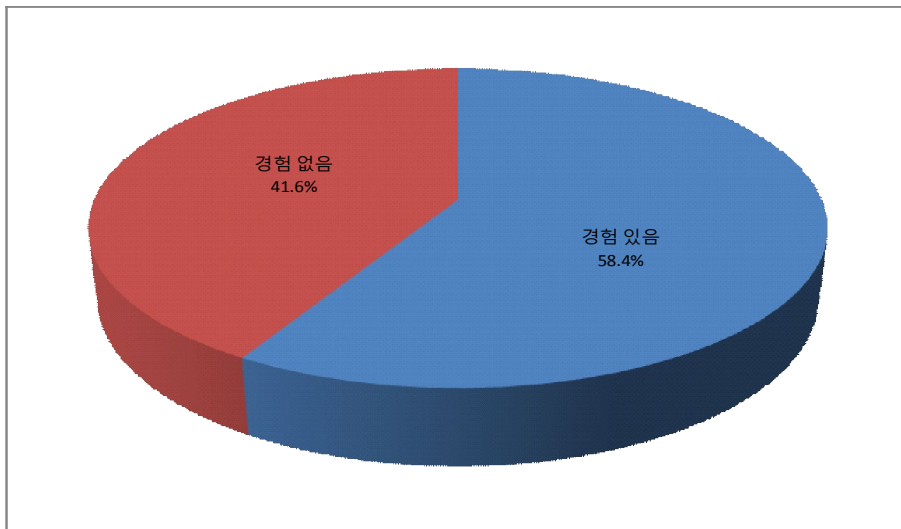
① 이직 경험 여부

- 이직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39명(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 이직 경험이 없는 경우는 456명(41.6%)으로 나타났다

〈표 2-90〉 이직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직 경험 있음	639	58.4
이직 경험 없음	456	41.6
합계	1,095	100.0



[그림 2-53] 이직 경험

② 직전 직장에서의 현 직장에서의 이직 형태

- 직전 직장에서의 현 직장에서의 이직 형태를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사가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민간 사회복지시설현장 내에서 이직을 하는 형태로 이동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353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영리)기업체 등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106명(16.9%), 사회복지부문 내의 기타 시설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78명(12.5%), 사회복지부문 외의 기타 시설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54명(8.6%), 일반 행정직 등의 공무원에서 현 직장으로 이동한 경우가 14명(2.2%), 사회복지부문 외의 비영리 조직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14명(2.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7명(1.1%) 순이었음

〈표 2-〉 이직 경험(직전 직장 → 현 직장)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사회복지 부문 내에서의 이동	공공(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현 직장	7	1.1
	민간(타 복지시설) → 현 직장	353	56.4
	기타 → 현 직장	78	12.5
사회복지 부문 외에서의 이동	공공(일반 행정직 등) → 현 직장	14	2.2
	비영리(시민단체 등) → 현 직장	14	2.2
	영리(기업체 등) → 현 직장	106	16.9
	기타 → 현 직장	54	8.6
합계		626	100.0

③ 이직 사유

- 이직 사유로는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응답되었음
 - 1순위로는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108명(18.5%), 기타 104명(17.8%),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 77명(13.2%),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61명(10.4%),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55명(9.4%) 등으로 나타났음
 - 이직사유 중 기타 응답이 많은 것은 설문지에 지표로 제시된 것 이외에도 개인별 욕구 및 이해관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기타으로 이사(거주지 이전), 비정규직 탈피, 계약기간 만료,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출퇴근 거리 문제(교통문제), 인사 이동, 업무 과부하, 휴식을 위해서 등이 있었음
 - 이직 사유 2순위로는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60명(13.2%),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 58명(12.8%),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53명(11.7%), 직장상사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52명(11.5%),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 전망의 불투명함 40명(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직 사유 3순위로는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63명(15.1%),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61명(14.7%),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 39명(9.4%),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의 불투명함 37명(8.9%), 복리후생제도 부족 36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1~3순위 모두에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의 문제가 모두 이직 사유 중 상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표 2-92〉 이직 사유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108	18.5	53	11.7	61	14.7
복리후생제도 부족	26	4.4	38	8.4	36	8.7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 부족	7	1.2	9	2.0	16	3.8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지원	22	3.8	25	5.5	27	6.5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55	9.4	52	11.5	27	6.5
동료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11	1.9	32	7.0	21	5.0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1	0.2	5	1.1	3	0.7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	77	13.2	58	12.8	39	9.4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 전망의 불투명함	39	6.7	40	8.8	37	8.9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15	2.6	27	5.9	24	5.8
전문적 슈퍼비전, 지도감독 부족	10	1.7	28	6.2	23	5.5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61	10.4	60	13.2	63	15.1
조직의 이미지가 좋은 곳을 선호	12	2.1	14	3.1	23	5.5
결혼/출산/육아 문제	16	2.7	0	0	0	0
개인사정	21	3.6	2	0.4	2	0.5
기타	104	17.8	11	2.4	14	3.4
합계	585	100.0	454	100.0	416	100.0

(3) 이직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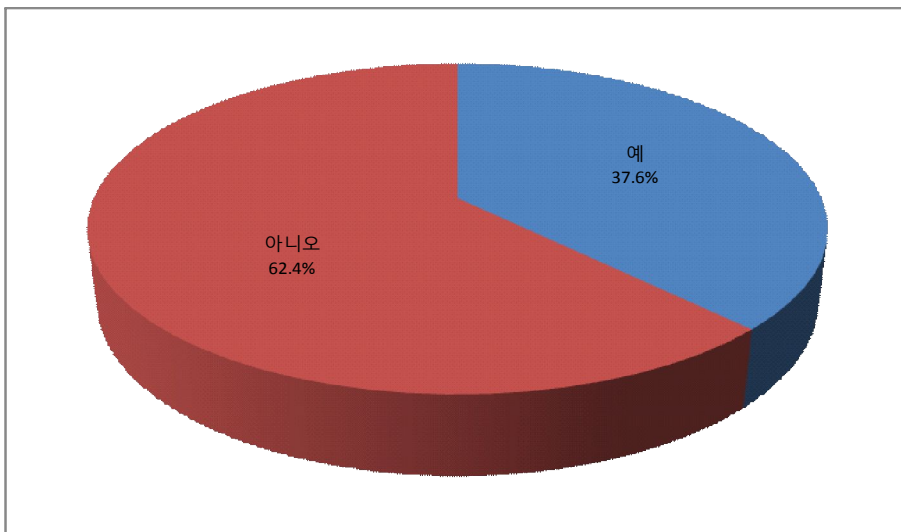
① 이직의도 여부

-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도에 대해서는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91명(37.6%)로 이직의도가 없는 경우 648명(62.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3〉 이직의도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직 의도 있음	391	37.6
이직 의도 없음	648	62.4
합계	1,039	100.0



[그림 2-54] 이직의도 여부

②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 등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분야

-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부문 내에서의 이직이 254명(71.5%)으로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부문 내에서의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직 희망분야로는 현 직장에서 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이직이 105명(29.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현 직장에서 사회복지부문 내의 기타 시설로의 이직이 80명(22.5%), 현 직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의 이직이 69명(19.4%)으로 나타남
- 이어 현 직장에서 사회복지부문 외의 기타 분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55명(15.5%), 현 직장에서 기업체 등의 영리조직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23명(6.5%), 현 직장에서 일반 행정직 등(공공)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17명(4.8%), 현 직장에서 사회복지부문 외의 비영리조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6명(1.7%)으로 나타남

〈표 2-94〉 이직을 희망하는 분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사회복지 부문 내에서의 이동	현 직장 → 공공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9	19.4
	현 직장 → 민간(타 복지시설)	105	29.6
	현 직장 → 기타	80	22.5
사회복지 부문 외에서의 이동	현 직장 → 공공(일반 행정직 등)	17	4.8
	현 직장 → 비영리(시민단체 등)	6	1.7
	현 직장 → 영리(기업체 등)	23	6.5
	현 직장 → 기타	55	15.5
합계		355	100.0

③ 이직의도 사유

-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의 적절성 문제와 복리후생제도 부족,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 전망의 불투명함,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등이 이직의도의 이유로서 응답되었음
- 현 직장에서의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1순위로는 임금수준의 적절성 문제가 72명(1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 전망의 불투명함 62명(16.7%),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46명(12.4%),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 45명(12.1%), 복리후생제도 부족 35명(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순위로는 복리후생제도 부족이 56명(1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44명(13.5%),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 전망의 불투명함 42명(12.9%), 임금수준의 적절성 문제 38명(11.7%),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28명(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3순위로는 복리후생제도 부족이 39명(12.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 전망의 불투명함 37명(12.1%),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35명(11.4%),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 부족 30명(9.8%), 임금수준의 적절성 문제 27명(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95〉 이직의도 사유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	72	19.4	38	11.7	27	8.8
복리후생제도 부족	35	9.4	56	17.2	39	12.7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 부족	3	0.8	17	5.2	30	9.8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지원	11	3.0	19	5.8	22	7.2
직장 상사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24	6.5	28	8.6	25	8.1
동료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11	3.0	8	2.5	17	5.5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문제	3	0.8	7	2.1	0	0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	45	12.1	23	7.1	19	6.2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 전망의 불투명함	62	16.7	42	12.9	37	12.1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3	0.8	22	6.7	16	5.2
전문적 슈퍼비전, 지도감독 부족	9	2.4	14	4.3	17	5.5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46	12.4	44	13.5	35	11.4
조직의 이미지가 좋은 곳을 선호	6	1.6	5	1.5	10	3.3
결혼/출산/육아 문제	4	1.1	0	0	0	0
개인사정	6	1.6	0	0	11	3.6
기타	32	8.6	3	0.9	2	0.7
합계	372	100.0	326	100.0	307	100.0

7)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1) 주관적 전문성 인식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정도는 평균 6.48점(1~10점,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성 높음)으로 보통수준(5.5점) 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2-96〉 주관적 전문성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전문성	1,130	6.48	1.568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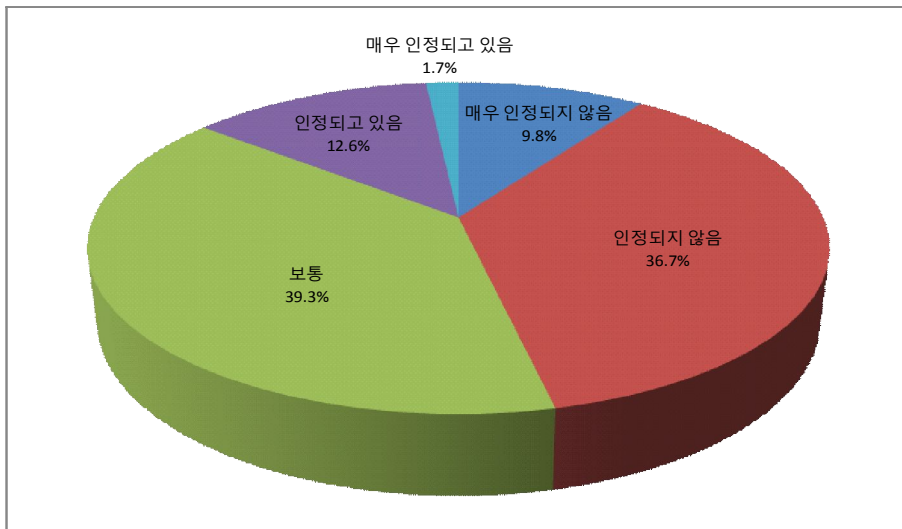
(2) 사회에서의 전문성 인정도

- 사회복지사가 사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436명(36.7%)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 116명(9.8%)은 ‘매우 인정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성 인정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66명(39.3%)이었으며,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9명(12.6%), 전문성이 매우 인정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명(1.7%)으로 나타났음
- 또한,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사 전문성 인식에 대한 평균값은 2.60점(1~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됨)으로 보통수준(3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앞선 질문에 대한 결과와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는 스스로를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을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2-97〉 사회에서의 전문성 인식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인정되지 않음	116		9.8		
인정되지 않음	436		36.7		
보통	466		39.3		
인정되고 있음	149		12.6		
매우 인정되고 있음	20		1.7		
합계	1,187		100.0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문성 인정도	1,187	2.60	0.888	1	5



[그림 2-55] 사회에서의 전문성 인식 정도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 사회복지 생활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도입, 대국민 인식개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강화 등에 전반적으로 많은 의견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사회복지사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로서의 모임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위상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음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 1순위로는 자격제도 개선이 446명(3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이어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도입 200명(17.1%), 대국민 인식개선 176명(15.0%),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강화 111명(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순위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도입이 263명(2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강화 164명(14.8%), 자격제도 개선 (13.6%), 대국민 인식개선 146명(13.2%), 현장실습교육 강화 135명(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3순위는 대국민 인식개선이 209명(1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강화 195명(18.4%), 현장실습 교육 강화 141명(13.3%), 전문사회복지사 자격도입 138명(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98〉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격제도 개선	446	38.0	150	13.6	101	9.5
전문사회복지사 자격도입	200	17.1	263	23.8	138	13.0
현장실습 교육 강화	81	6.9	135	12.2	141	13.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화	60	5.1	107	9.7	90	8.5
사회복지 교육인증제 도입	39	3.3	87	7.9	101	9.5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18	1.5	41	3.7	45	4.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강화	111	9.5	164	14.8	195	18.4
대국민 인식 개선	176	15.0	146	13.2	209	19.7
기타	42	3.6	14	1.3	39	3.7
합계	1,173	100.0	1,107	100.0	1,059	100.0

8)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1)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으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와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 보조금 지급 주체의 중앙 환원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건비 및 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응답됨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1순위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화가 468명(40.0%)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보조금 지급주체의 중앙 환원 258명(22.1%),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 108명(9.2%), 운영법인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의무화 108명(9.2%), 정부의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포괄보조금 방식에서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 지급방식으로 변경) 107명(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순위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이 230명(20.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198명(17.7%),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 179명(16.0%), 보조금 지급 주체의 중앙환원 161명(14.4%), 운영법인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의무화 158명(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3순위로는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이 212명(19.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종사자와의 인건비 협의 시스템 마련 169명(15.7%), 보조금 지급 주체의 중앙 환원 168명(15.6%), 운영법인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의무화 157명(14.6%), 사회복지사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129명(12.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99〉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468	40.0	198	17.7	123	11.4
정부의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107	9.2	230	20.6	110	10.2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	108	9.2	179	16.0	212	19.7
운영법인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의무화	108	9.2	158	14.1	157	14.6
사회복지사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46	3.9	106	9.5	129	12.0
보조금 지급 주체의 중앙 환원	258	22.1	161	14.4	168	15.6
종사자와의 인건비 협의 시스템 마련	55	4.7	82	7.3	169	15.7
기타	19	1.6	5	0.4	9	0.8
합계	1,169	100.0	1,119	100.0	1,077	100.0

(2) 처우개선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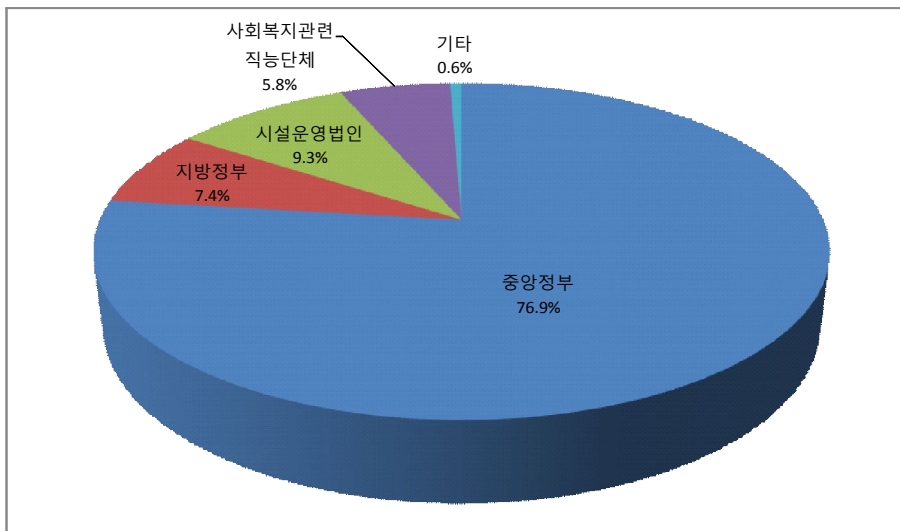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897명(76.9%)으로, 다수가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그 다음은 시설운영법인인 108명(9.3%), 지방정부 86명(7.4%),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 68명(5.8%), 기타 7명(0.6%)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00〉 처우개선의 주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중앙정부	897	76.9
지방정부	86	7.4
시설운영법인	108	9.3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	68	5.8
기타	7	0.6
합계	1,166	100.0



[그림 2-56] 처우개선의 주체

V. 요약 및 제언

- 전국의 사회복지생활시설 1,251개소 중 314개를 비례층화표집 등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196개소에서 회수(회수율 62.4%)되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시설용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시설에서 재직하는 사회복지사 1,209명에 대한 내용이 개인용으로 분석되었음
- 해당 시설에 대한 설문지(인사·회계 담당자가 시설당 1부 응답)와 그 시설에서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문지(모든 사회복지사 1인당 1부 응답)로 구분하여 동시 조사됨
- 시설용에서는 시설의 일반적 특성, 보수지급실태(수당과 복리후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개인용에서는 일반적 특성, 직무분석, 근로환경, 건강상태, 업무소진 및 이직,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제언 등의 내용이 조사되었음
- 시설용 분석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전체 종사자는 시설 1개소 당 평균 31.2명으로 대부분이 '정규직'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었음
 - 시설 유형에 따른 종사자 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평균 43.99명(이하 평균 인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랑/노숙인복지시설 37.10명, 정신보건복지시설 26.15명, 아동복지시설 24.60명, 노인복지시설 14.41명의 순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예산규모(2012년 당초 예산 기준)는 세입의 경우 평균 약 18억7천만 원, 세출의 경우 평균 약 18억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 간 규모 편차가 컸음

○ 종사자에 대한 보수 중 수당과 복리후생

-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주로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인 반면, ‘보육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거의 지급되지 않는 수당으로 나타났음
- 복리후생으로 ‘시설 내 식당 또는 식사 지원’(70.3%), ‘명절선물 지급’(61.5%)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다른 복리후생들의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였음
-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지급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았으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형태와 관련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41.1%)가 ‘수당 대신 휴가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19.5%) 보다 많았고 ‘매월 고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장 적게 나타났음(6.5%)
- 퇴직금 지급형태는 ‘퇴직연금’(81.5%)와 ‘퇴직금’(16.4%), 그리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하는 경우(1.5%)로서 거의 모든 시설에서 지급되고 있었음
- 급여 및 수당의 재원은 ‘정부보조금’(평균 88.6%)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자체부담’(평균 7.6%)이나 ‘법인부담’(평균 3.2%)은 매우 적었음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제언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 부족’(54.6%)과 ‘인력 부족’(53.1%) 등으로 나타났음
 - 직원 채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41.5%) ‘지리적 위치/교통불편’, ‘열악한 업무환경’, ‘낮은 보수’ 등이 이유로 나타났음
 - 인적자원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53.2%) ‘열악한 근무환경’, ‘예산의 부족’, ‘지리적 위치/교통불편’ 등이 이유로 나타났음
- 생활시설에서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근로기준법 준수’(67.7%)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57.9%)이 있었으나, 다른 복리후생들이 종사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았음

□ 개인용 분석

○ 일반적 특성

- 남성(30.8%)보다 여성(69.2%) 사회복지사가 두 배 이상 많았음
- 주로 20~40대의 연령층이 사회복지사로 종사하고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35.2세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48.9%)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51.1%)가 약간 많았으며 없는 이유로는 미혼(46.6%)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사회복지사의 72.5%가 종교를 갖고 있었음
-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46.5%), '2·3년제 대학 졸업'(41.0%)이 대부분 이었고, 대학원 이상도 약 11%여서 학력이 높았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은 68.0%가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1급과 2급 모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을 통한' 취득이 약 83%였음
- 직장 내 직위를 살펴보면 실무자(70.8%), 중간관리자(20.6%), 상급관리자(6.8%), 시설장(1.8%)의 구성 형태를 띠고 있었음. 자격 등급(1급, 2급)에 따라 직장 내 직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관리자(시설장,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354만6900원이었으며, 월평균 가구 총지출은 261만4900원이었음

○ 직무분석

-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경력으로는 평균 91.66개월(약 7년 8개월)이었으며, 현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의 재직기간은 평균 72.66개월(약 6년 1개월)이었음
- 업무상 주된 대상은 장애인(50.9%), 아동/청소년(39.5%), 노인(12.9%) 등이 주로 응답되었으며, 행정/정책(2.6%) 등은 낮은 비율에 차지하였음
 - 성별에 따라 업무 대상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과 부랑/노숙인에서, 여성 사회복지사는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리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전체 업무 중에서 '생활지도'(평균 31.19%), '행정(문서관리)'(평균 13.57%), '프로그램기획/시행'(11.79%), '조직관리

’(7.83%), ‘상담서비스’(7.37%)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성별,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에 따라 이러한 담당 업무 비중에서 차이를 보였음
- 주 평균 근무시간은 50.3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 상 40시간 근무와 비교하였을 때,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에 따라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수 및 근로실태

- 1인당 연봉(세전) 총액은 평균 2,754만원, 중위값은 2,700만원이었음. 이는 앞의 사회복지분야에서 평균 경력인 7년 8개월(8호봉)의 평균 연봉수준과 같은 수준이었음
- 성별,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 연령에 따른 연봉의 차이 : 남성 사회복지사가 여성 사회복지사에 비해 약 142만원 더 많았고, 1급 사회복지사가 2급 사회복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약 272만원의 격차), 관리자가 실무자에 비해 더 많았고(약 528만원의 격차), 40대 이상의 경우 평균 3,010만원, 20~30대의 경우 평균 2,625만원으로 약 384만원의 차이가 있었음
- 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은 평균 162만원, 중위값 160만원이었으며, 성별,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 연령에 따른 월 기본급의 차이 : 남성 사회복지사가 여성 사회복지사에 비해 약 13만원, 1급 사회복지사가 2급 사회복지사에 비해 약 15만원, 관리자가 실무자에 비해 약 37만원, 40대 이상 사회복지사가 20~30대 사회복지사에 비해 약 33만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급받는 수당으로는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지급받는 수당의 응답 비율’과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당의 응답 비율’ 간 차이가 있고, 특히 가족수당의 경우는 그 차이가 커서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시설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관련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많음을 추정

- 한편, 현재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연봉수준에 대해 평균 3,414만원(중위값 3,400만원)으로 응답하고 있어 실제 연봉수준과의 격차가 컸음
 - 성별,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 연령에 따른 적정 연봉수준의 차이 : 남성 사회복지사가 여성 사회복지사에 비해 약 341만원, 1급 사회복지사가 2급 사회복지사에 비해 약 246만원, 관리자가 실무자에 비해 약 658만원, 40대 이상 사회복지사가 20~30대 사회복지사에 비해 약 486만원 더 많은 수준에서 희망하고 있었음
- 이처럼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제 연봉과 적정수준으로 생각하는 연봉 간에는 660~700만원(평균 2,754만원, 중위값은 2,700만원) 가량 차이를 보였음
-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근무형태들이 병행되고 있고, 교대근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59.0%)가 더 많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용형태로는 정규직(94.2%)이 비정규직(5.8%)보다 더 많았으나, 자격 등급, 직장 내 직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자격 등급과 관계없이 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급의 경우보다 2급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고, 실무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현 직장 입사경로는 신문/광고/인터넷(43.9%)과 친구선배친지의 소개(32.8%) 등이 주를 차지하였으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남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친구/선배/친지의 소개인 반면,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신문/광고/인터넷 등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20~30대 사회복지사의 경우 신문/광고/인터넷 등의 방법인 반면, 40대 이상 사회복지사의 경우 친구/선배/친지의 소개가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음
 - 입사 방법으로는 ‘공개채용 시 면접을 본 후 입사’한 경우(69.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추천을 받아 면접 후 입사’한 경우(17.4%)는 그 다음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 슈퍼비전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41.1%)가 가장 많았으며, 슈퍼비전이 없는 경우(10.7%)도 일정정도 응답되었음

- 슈퍼비전의 유형으로는 상사로부터 개별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형태로 슈퍼비전을 받고 있거나 반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등도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컸음
-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인 평균 3.07점으로 나타났음
-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동료관계(평균 3.63점), 상사관계(평균 3.34점) 등이었으며, 반면 낮은 부분은 임금수준(평균 2.83점), 승진전망(평균 2.82점), 교육(평균 2.69점), 복리후생(평균 2.66점) 등이었음

○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절반 가량(50.5%)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2.39점(1점에 가까울수록 건강)에 이르고 있었음
-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1.76점(0~4점,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임)으로 스트레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 자이탄력성의 경우 평균 2.772점(1~4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이탄력성이 뛰어나)므로 보통수준 정도였음
- 주관적 행복은 평균 7.08점(10점 만점,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인식)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응답

○ 업무소진 및 이직

- 업무 소진에 대해 평균 1.82점(0~6점,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소진 상태임)으로 그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었음
-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58.4%)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 중 복지시설 간 이동이 56.4%였고, (영리)기업체 등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가 16.9%로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이직 사유로는 임금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조직의 발전 전망 및 비전 부족 등이었음
- 또한, 앞으로 다른 직장에서의 이직의도에 대해서는 있다는 경우(37.6%)보다 없다는 경우(62.4%)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있는 경우에도 다수가

사회복지부문 내에서의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때 이직 의도 사유로는 임금수준의 적절성 문제, 복리후생제도 부족, 승진 가능성 및 개인 발전 전망의 불투명함,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적절성 등이 주를 이루었음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평균 6.48점(1~10점,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성 높음)으로 높았으나, 사회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 이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도입, 대국민 인식개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강화 등을 높게 제시하였음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할 점으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 보조금 지급 주체의 중앙 환원, 인건비 및 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높게 응답하였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76.9%)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었음

-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전반에 대한 인적자원 특성을 조사하여 그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요구됨

CHAPTER

3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통계



I. 사회복지사 자격

1-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연도별 : 2003-2012

(단위: 명, %)

구분	연도	접수자	응시자	최종 합격자	응시자 증감률	응시율	합격률
제1회	2003년	6,114	5,190	3,487	-	84.9	67.2
제2회	2004년	9,082	7,233	4,543	39.4	79.6	62.8
제3회	2005년	10,287	8,635	3,731	19.4	83.9	43.2
제4회	2006년	14,617	12,151	5,056	40.7	83.1	41.6
제5회	2007년	20,580	16,166	4,006	33.0	78.6	24.8
제6회	2008년	27,017	19,493	9,034	20.6	72.2	46.3
제7회	2009년	29,770	22,753	7,081	16.7	76.4	31.1
제8회	2010년	26,587	23,050	9,700	1.3	86.7	42.1
제9회	2011년	25,471	21,868	3,119	-5.1	85.9	14.3
제10회	2012년	28,143	23,627	10,254	8.0	84.0	43.4
합 계		197,668	160,166	60,011	평 균	81.5	41.7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1-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 급수별, 연도별, 시도별 : 1996-2012

(단위: 건, %)

구분	합계	1급	비율	2급	비율	3급	비율
1996	21,244	10,863	51.1	4,193	19.8	6,188	29.1
1997	24,468	12,713	52.0	4,525	18.5	7,230	29.5
1998	28,619	15,176	53.0	4,855	17.0	8,588	30.0
1999	35,138	19,325	55.0	6,955	19.8	8,858	25.2
2000	42,292	23,748	56.2	9,447	22.3	9,097	21.5
2001	52,593	30,028	57.1	13,292	25.3	9,273	17.6
2002	69,323	40,515	58.5	19,365	27.9	9,443	13.6
2003	85,449	45,834	53.6	29,857	35.0	9,758	11.4
2004	104,645	50,878	48.6	43,579	41.7	10,188	9.7
2005	129,999	55,299	42.5	63,927	49.2	10,773	8.3
2006	163,314	60,354	37.0	91,798	56.2	11,162	6.8
2007	208,866	64,799	31.0	132,621	63.5	11,446	5.5
2008	269,073	73,969	27.5	183,314	68.1	11,790	4.4
2009	337,651	81,255	24.0	244,383	72.4	12,013	3.6
2010	412,815	90,988	22.0	309,612	75.0	12,215	3.0
2011	482,807	94,623	19.6	375,776	77.8	12,408	2.6
2012	560,530	104,457	18.7	443,498	79.1	12,575	2.2
서울	132,613	39,767	30.0	81,817	61.7	11,029	8.3
부산	36,535	6,761	18.5	29,405	80.5	369	1.0
대구	31,267	5,136	16.4	25,928	82.9	203	0.6
인천	15,365	3,048	19.8	12,279	79.9	38	0.2
광주	35,697	4,451	12.5	31,107	87.1	139	0.4
대전	24,149	4,379	18.1	19,674	81.5	96	0.4
울산	7,428	878	11.8	6,532	87.9	18	0.2
경기	68,766	10,925	15.9	57,700	83.9	141	0.2
강원	16,318	2,352	14.4	13,923	85.3	43	0.3
충북	22,301	3,448	15.5	18,756	84.1	97	0.4
충남	19,396	3,657	18.9	15,635	80.6	104	0.5
전북	31,041	5,361	17.3	25,555	82.3	125	0.4
전남	38,766	3,726	9.6	35,007	90.3	33	0.1
경북	42,326	5,671	13.4	36,590	86.4	65	0.2
경남	29,595	3,984	13.5	25,548	86.3	63	0.2
제주	8,967	913	10.2	8,042	89.7	12	0.1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1-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 급수별, 성별, 연도별 : 2001-2012

(단위: 건, %)

구분	합계			전체 성비 ¹⁾	1급		2급		3급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1	52,593	13,898	38,695	35.9	8,808	21,220	3,047	10,245	2,043	7,230
2002	69,323	17,884	51,439	34.8	11,662	28,853	4,114	15,251	2,108	7,335
2003	85,449	21,231	64,218	33.1	12,618	33,216	6,400	23,457	2,213	7,545
2004	104,645	25,498	79,147	32.2	13,571	37,307	9,565	34,014	2,362	7,826
2005	129,999	31,862	98,137	32.5	14,472	40,827	14,811	49,116	2,579	8,194
2006	163,314	40,796	122,518	33.3	15,482	44,872	22,599	69,199	2,715	8,447
2007	208,866	54,714	154,152	35.5	16,965	47,834	34,879	97,742	2,870	8,576
2008	269,073	71,251	197,822	36.0	19,061	54,908	49,185	134,129	3,005	8,785
2009	337,651	89,616	248,035	36.1	20,613	60,642	65,897	178,486	3,106	8,907
2010	412,815	109,492	303,323	36.1	22,762	68,226	83,515	226,097	3,215	9,000
2011	482,807	127,876	354,931	36.0	23,495	71,128	101,065	274,711	3,316	9,092
2012	560,530	148,024	412,506	35.9	25,880	78,577	118,735	324,763	3,409	9,166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주 1) 성비 :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남성/여성)×100

1-4.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 급수별, 성별, 시도별

(기준: 2012.12.31., 단위: 건, %)

구분	합계			전체 성비 ¹⁾	1급		2급		3급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560,530	148,024	412,506	35.9	25,880	78,577	118,735	324,763	3,409	9,166
서울	132,613	34,402	98,211	35.0	9,464	30,303	22,045	59,772	2,893	8,136
부산	36,535	9,054	27,481	32.9	1,803	4,958	7,103	22,302	148	221
대구	31,267	8,498	22,769	37.3	1,419	3,717	7,027	18,901	52	151
인천	15,365	4,016	11,349	35.4	708	2,340	3,302	8,977	6	32
광주	35,697	9,068	26,629	34.1	975	3,476	8,059	23,048	34	105
대전	24,149	6,944	17,205	40.4	1,191	3,188	5,716	13,958	37	59
울산	7,428	1,573	5,855	26.9	182	696	1,384	5,148	7	11
경기	68,766	17,808	50,958	34.9	3,035	7,890	14,729	42,971	44	97
강원	16,318	4,886	11,432	42.7	669	1,683	4,201	9,722	16	27
충북	22,301	5,538	16,763	33.0	846	2,602	4,659	14,097	33	64
충남	19,396	5,025	14,371	35.0	829	2,828	4,154	11,481	42	62
전북	31,041	8,629	22,412	38.5	1,376	3,985	7,217	18,338	36	89
전남	38,766	10,440	28,326	36.9	869	2,857	9,559	25,448	12	21
경북	42,326	11,731	30,595	38.3	1,535	4,136	10,178	26,412	18	47
경남	29,595	7,820	21,775	35.9	740	3,244	7,052	18,496	28	35
제주	8,967	2,592	6,375	40.7	239	674	2,350	5,692	3	9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주 1) 성비 :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남성/여성)×100

1-5.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¹⁾ - 급수별, 연도별, 시도별

(단위: 건, %)

	합계	증감률	1급	2급	3급
1996	2,658	—	1,373	343	942
1997	3,224	21.3	1,850	332	1,042
1998	4,151	28.8	2,463	330	1,358
1999	6,519	57.0	4,149	2,100	270
2000	7,154	9.7	4,423	2,492	239
2001	10,301	44.0	6,280	3,845	176
2002	16,730	62.4	10,487	6,073	170
2003	16,126	-3.6	5,319	10,492	315
2004	19,196	19.0	5,044	13,722	430
2005	25,354	32.1	4,421	20,348	585
2006	33,315	31.4	5,055	27,871	389
2007	45,552	36.7	4,445	40,823	284
2008	60,207	32.2	9,170	50,693	344
2009	68,578	13.9	7,286	61,069	223
2010	75,164	9.6	9,733	65,229	202
2011	69,992	-6.9	3,635	66,164	193
2012	77,723	11.0	9,835	67,721	167
서울	16,104	—	2,685	13,273	146
부산	4,846	—	726	4,102	18
대구	4,601	—	573	4,028	0
인천	3,045	—	481	2,564	0
광주	4,656	—	397	4,259	0
대전	3,266	—	410	2,856	0
울산	1,020	—	135	884	1
경기	12,436	—	1,546	10,888	2
강원	2,853	—	331	2,522	0
충북	3,587	—	407	3,180	0
충남	2,876	—	329	2,547	0
전북	3,840	—	482	3,358	0
전남	3,892	—	209	3,683	0
경북	5,687	—	571	5,116	0
경남	4,007	—	451	3,556	0
제주	1,007	—	102	905	0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주 1) 당해연도 자격증 발급 수는 해당 연도에 발급된 재교부를 제외한 신규와 승급 발급 수의 합계임

1-6.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구분별 발급 - 월별 : 2012년 1-12월

(단위: 건, %)

월	합계	신규 ¹⁾	승급 ²⁾	재교부 ³⁾
합계	79,624 (100)	72,205 (90.7)	5,518 (6.9)	1,901 (2.4)
1월	1,910 (100)	1,654 (86.6)	96 (5.0)	160 (8.4)
2월	16,169 (100)	15,915 (98.4)	44 (0.3)	210 (1.3)
3월	19,876 (100)	19,654 (98.9)	29 (0.1)	193 (1.0)
4월	13,416 (100)	9,541 (70.9)	3,723 (28.1)	152 (1.0)
5월	4,259 (100)	3,408 (80.0)	702 (16.5)	149 (3.5)
6월	2,610 (100)	2,160 (82.8)	276 (10.6)	174 (6.6)
7월	2,173 (100)	1,895 (87.2)	163 (7.5)	115 (5.3)
8월	3,215 (100)	2,981 (92.7)	107 (3.3)	127 (4.0)
9월	6,547 (100)	6,332 (96.7)	85 (1.3)	130 (2.0)
10월	4,468 (100)	4,178 (95.9)	99 (1.1)	191 (3.0)
11월	2,622 (100)	2,385 (91.0)	69 (2.6)	168 (6.4)
12월	2,359 (100)	2,102 (89.1)	125 (5.3)	132 (5.6)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주 1) 신규 : 자격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자

주 2) 승급 : 경력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승급되어 승급된 자격증을 신청하는 자

주 3) 재발급 : 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

1-7. 사회복지사 자격발급 불합격 사유 - 연도별, 월별 : 2008-2012

(단위: 건, %)

구분	총계	과목 미이수	실습기준 미충족 ¹⁾	학위 미취득	학점 미등록	경력일 부족	경력 미해당	서류 미제출 ²⁾	자격 미해당	기타
2008	417 (100)	266 (63.8)	-	41 (9.9)	18 (4.3)	49 (11.8)	8 (1.8)	-	14 (3.4)	21 (5.0)
2009	548 (100)	406 (74.1)	-	30 (5.5)	40 (7.3)	37 (6.8)	5 (0.9)	-	17 (3.0)	13 (2.4)
2010	635 (100)	525 (82.7)	-	25 (3.9)	43 (6.8)	25 (3.9)	7 (1.1)	-	5 (0.8)	5 (0.8)
2011	921 (100)	591 (64.2)	191 (20.7)	38 (4.1)	74 (8.0)	10 (1.1)	2 (0.2)	3 (0.3)	6 (0.7)	6 (0.7)
2012	1,094 (100)	709 (64.8)	226 (20.7)	23 (2.1)	100 (9.1)	6 (0.5)	0 (0)	2 (0.2)	15 (1.4)	13 (1.2)
1월	29 (100)	8 (27.6)	9 (31)	2 (6.9)	8 (27.6)	2 (6.9)	0 (0)	0 (0)	0 (0)	0 (0)
2월	134 (100)	87 (65.0)	33 (24.6)	2 (1.5)	10 (7.5)	1 (0.7)	0 (0)	0 (0)	1 (0.7)	0 (0)
3월	180 (100)	116 (64.4)	44 (24.4)	3 (1.7)	9 (5)	0 (0)	0 (0)	1 (0.6)	0 (0)	7 (3.9)
4월	228 (100)	145 (63.6)	54 (23.7)	1 (0.4)	16 (7)	2 (0.9)	0 (0)	0 (0)	5 (2.2)	5 (2.2)
5월	97 (100)	69 (71.1)	10 (10.3)	5 (5.2)	11 (11.3)	0 (0)	0 (0)	0 (0)	1 (1)	1 (1)
6월	82 (100)	46 (56.1)	20 (24.4)	2 (2.4)	12 (14.7)	0 (0)	0 (0)	0 (0)	2 (2.4)	0 (0)
7월	64 (100)	42 (65.6)	10 (15.6)	1 (1.6)	10 (15.6)	0 (0)	0 (0)	0 (0)	1 (1.6)	0 (0)
8월	59 (100)	39 (66.0)	9 (15.3)	4 (6.8)	4 (6.8)	0 (0)	0 (0)	1 (1.7)	2 (3.4)	0 (0)
9월	71 (100)	51 (71.8)	9 (12.7)	0 (0)	9 (12.7)	0 (0)	0 (0)	0 (0)	2 (2.8)	0 (0)
10월	74 (100)	51 (68.9)	20 (27)	0 (0)	2 (2.7)	0 (0)	0 (0)	0 (0)	1 (1.4)	0 (0)
11월	49 (100)	33 (67.4)	7 (14.3)	1 (2)	7 (14.3)	1 (2)	0 (0)	0 (0)	0 (0)	0 (0)
12월	27 (100)	22 (81.5)	1 (3.7)	2 (7.4)	2 (7.4)	0 (0)	0 (0)	0 (0)	0 (0)	0 (0)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주 1) '실습기준 미충족' 은 2011년부터 추가된 항목임

주 2) '서류 미제출' 은 2011년부터 추가된 항목임

1-8. 사회복지사 민간 분야별 자격 발급 - 연도별 : 2005-2012

(단위: 명)

연도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2005	91	—
2006	182	—
2007	119	—
2008	143	286
2009	63	80
2010	73	87
2011	100	71
2012	60	64
합계	831	588

출처 : 2012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2012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안내 책자

1-9.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신규취득 - 연도별 : 2002-2009

(단위: 명)

연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합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2002	29	135	36	491	26	76	793
2003	2	144	57	373	28	57	661
2004	40	152	88	362	42	76	760
2005	30	188	171	399	43	73	904
2006	42	185	142	422	44	98	933
2007	72	187	236	389	53	81	1,018
2008	82	212	175	399	56	99	1,023
2009	70	210	159	462	59	99	1,059
합계	367	1,413	1,064	3,297	351	659	7,151

출처 : 2010년,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1-10.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등록누계¹⁾ - 연도별 : 2002-2009

(단위: 명)

연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합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2002	102	503	143	2,219	258	386	3,611
2003	104	647	200	2,590	286	443	4,270
2004	144	799	288	2,951	328	519	5,029
2005	174	987	457	3,346	369	592	5,925
2006	216	1,172	599	3,767	413	690	6,857
2007	288	1,358	834	4,153	466	771	7,870
2008	370	1,570	1,008	4,549	522	869	8,888
2009	440	1,780	1,167	5,011	581	968	9,947

출처 : 2010년,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주 1) 등록누계는 말소자 제외한 수치임.

1-1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정원현황 - 시도별

(기준: 2012.02.10., 단위: 명)

시도	과 정 명							총 합 계
	정신보건 간호사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서울	129	3	—	91	19	25	51	318
부산	17	—	3	39	3	4	13	79
대구	38	—	—	28	4	10	30	110
인천	10	—	—	21	—	8	3	42
광주	35	8	—	9	—	4	11	67
대전	25	—	—	14	—	2	3	44
울산	—	—	—	3	—	—	4	7
경기	53	—	—	60	7	12	33	165
강원	30	—	—	9	—	5	7	51
충북	—	—	—	16	—	5	4	25
충남	28	—	—	29	—	4	8	69
전북	23	—	—	35	—	4	9	71
전남	28	—	—	23	—	—	8	59
경북	—	—	—	18	—	—	9	27
경남	30	—	—	13	—	3	6	52
제주	13	—	—	4	—	5	1	23
합계	459	11	3	412	33	91	200	1,209

출처 : 2012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 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희망대상자 - 연도별 : 2009-2012

(단위: 명)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이수자		
	합계	의무대상자	희망대상자	합계	의무대상자	희망대상자
2009	49,101	38,884	10,217	42,415	38,682	3,733
2010	52,654	33,601	19,053	36,235	32,696	3,539
2011	61,340	37,721	23,619	42,951	36,655	6,296
2012 ¹⁾	66,962	41,860	25,102	46,132	39,499	6,633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주 1) 2012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연장교육이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2012년 최종 이수현황은 2013년 3월 중 집계됨

2-2.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희망대상자 - 시설유형별

(기준 : 2012.01.01.~2012.12.31., 단위: 명)

시설유형	보수교육 등록자			보수교육 이수자		
	합계	의무대상자	희망대상자	합계	의무대상자	희망대상자
법인	5,999	3,271	2,728	3,841	3,045	796
생활시설	18,919	13,309	5,610	12,958	12,391	567
이용시설	35,129	25,280	9,849	25,620	24,063	1,557
기타 ¹⁾	6,915	—	6,915	3,713	—	3,713
합계	66,962	41,860	25,102	46,132	39,499	6,633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주 1)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2-3.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희망대상자 - 성별

(기준 : 2012.01.01.~2012.12.31., 단위: 명)

성별	보수교육 등록자			보수교육 이수자		
	합계	의무대상자	희망대상자	합계	의무대상자	희망대상자
남성	20,713	13,760	6,948	14,959	13,040	1,919
여성	46,249	28,095	18,154	31,173	26,459	4,714
합계	66,962	41,860	25,102	46,132	39,499	6,633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2-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록 교육강사¹⁾ - 교육영역별, 종사영역별
: 2009-2012년

(기준 : 2009.01.01.~2012.12.31., 단위: 명)

종사영역 \ 교육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 조사연구	사회복지 행정	합 계
공무원	68	65	47	5	40	225
교수	325	331	231	72	241	1,200
사회복지 실무자	372	373	218	68	268	1,299
기타 ²⁾	245	245	136	37	169	832
합 계	1,010	1,014	632	182	718	3,556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주 1) 각 교육영역별로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포함.

주 2) '기타'영역에는 사회복지 외 타전공 혹은 타분야 전문가 등 포함.

2-5.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강사¹⁾ - 교육영역별, 종사영역별

(기준: 2012.01.01.~ 2012.12.31., 단위: 명)

종사영역 교육영역	공무원	교수	사회복지 실무자	기타	총합계
교육 강사 수	44	227	270	143	684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41	221	265	142	669
사회복지 실천	40	224	268	141	673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29	123	115	77	344
사회복지 조사연구	2	27	30	14	73
사회복지 행정	22	140	170	80	412
합 계	134	735	848	454	2,171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주 1) 각 교육영역별로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포함.

2-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기관 - 시도별, 연도별 : 2009-2012

(단위: 개)

연도 시도	2009	2010	2011	2012
총합계	44	42	41	43
서울	14	18	17	19
부산	2	1	1	1
대구	2	2	2	2
인천	2	1	1	1
광주	2	2	2	2
대전	2	2	2	2
울산	2	1	1	1
경기	2	2	2	2
강원	2	1	1	1
충북	2	2	2	2
충남	2	2	2	2
전북	2	2	2	2
전남	2	1	2	2
경북	2	2	1	1
경남	2	2	2	2
제주	2	1	1	1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2-7.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집합교육 과정 - 월별

(기준: 2012.01.01.~ 2012.12.31., 단위: 개)

월 평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합계
2		1		3				3			7
3	1	1		3		2		2			9
4		7	6	2	6			1	3	9	34
5				1		2					3
6	1	1	1			1	1	1	3	2	11
8	8	65	71	78	76	34	109	121	147	70	779
총합계	10	75	78	87	82	39	110	128	153	81	843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2-8. 2012년 보수교육 집합교육 과정 - 교육영역별, 평점별

(기준: 2012.01.01.~ 2012.12.31., 단위: 개)

평점	교육영역	평점						총합계
		2평점	3평점	4평점	5평점	6평점	8평점	
단 일 교 육	사회복지 윤리와가치		3					3
	사회복지실천	5	4	17		6		32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2	1					3
	사회복지조사 연구			2				2
	사회복지행정		1	2		1		4
복 수 교 육	실천, 행정					2		2
	실천, 정책			3				3
	윤리, 실천			5			148	155
	윤리, 정책			3		1		4
	윤리, 조사				1			1
	윤리, 행정			2		1		3
	윤리, 실천, 정책						188	188
	윤리, 실천, 조사						42	42
	윤리, 실천, 행정						350	350
	윤리, 정책, 행정							0
	윤리, 실천 정책, 행정						41	41
	윤리, 실천 조사, 행정						3	3
	윤리, 실천 조사, 정책						7	7
	총합계	7	9	34	3	11	779	843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Ⅲ.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및 실습

3-1. 전국 사회복지(관련) 전공개설 현황 - 연도별 비교 : 2007년, 2010년

(단위 : 개)

구분		사회복지 (사업)전공 학과		사회복지 관련전공 학과		소계	
		2007년	2010년	2007년	2010년	2007년	2010년
전문대학		51	71	60	434	111	505
대학교		116	147	93	335	209	482
대학원	일반대학원	51	65	10	162	61	227
	특수대학원	90	118	81	189	171	307
	전문대학원	8	10	16	12	24	22
사이버 대학	전문대학(2년)	2	1	6	7	8	8
	대학교(4년)	13	11	12	38	25	49
합 계		331	423	278	1,177	609	1,600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3-2. 사회복지 현장실습¹⁾ 평균 인원

(단위 : 개)

구 분		학교 수	%
한 학기 평균 실습인원 (빈도 = 479)	평균(표준편차)	67.11(95.88)	
교수 1인당 평균 실습지도인원	10명 이하	100	20.9
	11명~30명	209	43.7
	31명~50명	106	22.2
	51명~100명	53	11.1
	100명 초과	10	2.1
	합 계	478	100.0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주 1) 2010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실태조사’의 내용을 발췌함.

3-3. 학교유형별 현장실습 인원(한 학기 평균)

(단위 : 개, 명)

구 분		학교 수	평균 실습인원	표준편차
실습 인원	전문대학	121	108.03	84.21
	사이버전문대학	5	620.00	383.41
	대학교	144	58.90	39.64
	사이버대학교	15	182.00	102.90
	일반대학원	47	18.19	22.16
	전문대학원	22	14.64	11.68
	특수대학원	58	16.67	17.60
	평생교육기관	66	39.36	59.06
	기타	1	20.00	.
	합 계	479	67.11	95.88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3-4. 기관형태별 실습지도 인원

(단위 : 개, %)

구 분		기관형태			
		이용 시설	생활 시설	기타	합계
실습지도 인원	5명 미만	123 (32.1)	54 (27.3)	35 (60.3)	212 (33.2)
	5명 이상~10명 미만	102 (26.6)	52 (26.3)	14 (24.1)	168 (26.3)
	10명 이상~15명 미만	79 (20.6)	57 (28.8)	4 (6.9)	140 (21.9)
	15명 이상~20명 미만	43 (11.2)	12 (6.1)	2 (3.4)	57 (8.9)
	20명 이상~25명 미만	24 (6.3)	8 (4.0)	2 (3.4)	34 (5.3)
	25명 이상	12 (3.1)	15 (7.6)	1 (1.7)	28 (4.4)
	합 계	383 (100.0)	198 (100.0)	58 (100.0)	639 (100.0)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3-5. 기관형태별 실습시간

(단위 : 개, %)

구 분		기관형태			
		이용 시설	생활 시설	기타	합 계
실습시간	평일오전(09시~12시)	13 (3.4)	5 (2.5)	0 (0.0)	18 (2.8)
	평일오후(12시~18시)	30 (7.9)	6 (3.0)	0 (0.0)	36 (5.7)
	평일오전오후(09시~18시)	323 (84.6)	165 (83.8)	55 (96.5)	543 (85.4)
	평일야간(18시 이후)	2 (0.5)	0 (0.0)	1 (1.8)	3 (0.5)
	주말(토요일, 일요일)	3 (0.8)	10 (5.1)	1 (1.8)	14 (2.2)
	기타	11 (2.9)	11 (5.6)	0 (0.0)	22 (3.5)
	합 계	382 (100.0)	197 (100.0)	57 (100.0)	636 (100.0)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3-6. 기관형태별 실습기간

(단위 : 개, %)

구 분		기관형태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합 계
학기 중 총 실습기간	주 1회 15주 이상	121 (57.1)	45 (29.8)	11 (39.3)	177 (45.3)
	주 2회 15주 이상	58 (27.4)	71 (47.0)	11 (39.3)	140 (35.8)
	월 2회 15주 이상	6 (2.8)	25 (16.6)	0 (0.0)	31 (7.9)
	기타	27 (12.7)	10 (6.6)	6 (21.4)	43 (11.0)
	합 계	212 (100.0)	151 (100.0)	28 (100.0)	391 (100.0)
방학 중 총 실습기간	3주	58 (16.8)	60 (33.1)	12 (24.5)	130 (22.6)
	4주	255 (73.7)	84 (46.4)	30 (61.2)	369 (64.1)
	6주	19 (5.5)	30 (16.6)	1 (2.0)	50 (8.7)
	기타	14 (4.0)	7 (3.9)	6 (12.2)	27 (4.7)
	합 계	346 (100.0)	181 (100.0)	49 (100.0)	576 (100.0)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3-7. 기관형태별 평균 수퍼비전 시간

(단위 : 개, %)

구 분		기관형태			
		이용 시설	생활 시설	기타	합계
평균 수퍼비전 시간	10분 이하	29 (7.6)	17 (8.9)	5 (8.6)	51 (8.1)
	30분 이하	186 (48.8)	119 (62.0)	29 (50.0)	334 (52.9)
	60분 이하	138 (36.2)	44 (22.9)	20 (34.5)	202 (32.0)
	90분 이하	19 (5.0)	7 (3.6)	3 (5.2)	29 (4.6)
	120분 이하	9 (2.4)	5 (2.6)	1 (1.7)	15 (2.4)
	합계	381 (100.0)	192 (100.0)	58 (100.0)	631 (100.0)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Ⅳ. 사회복지사 취업 및 종사영역

4-1.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 - 연도별 : 2009-2012

(단위: 명)

연도	총계	민간) ¹⁾				공공
		사회복지 시설	법인		기타 관련기관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기타 ³⁾		
2009	66,790	46,757	4,766	652	4,280	10,335
2010	68,361	48,890	4,040	747	4,188	10,496
2011	72,981	51,042	4,280	1,320	5,700	10,639
2012	73,619	51,642	4,371	1,316	5,955	10,335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주 1) 민간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후 종사여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현재 파악되지 않은 종사자 존재 가능

주 2)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외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주 3)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법인 외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

4-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연도별 : 2004-2011

(단위: 명)

시도별	정원	현원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2004	7,159	7,136	6,306	772	58
2005	9920	9,094	7,860	1,163	71
2006	10,110	9,805	8,446	1,312	47
2007	10,515	10,113	8,675	1,389	49
2008	10,706	9,945	8,570	1,353	22
2009	12,270	10,334	8,788	1,505	41
2010	11,634	10,496	8,921	1,522	53
2011	11,170	10,639	8,991	1,603	45
서울	1,451	1,380	1,260	120	-
부산	780	729	630	97	2
대구	468	456	393	63	-
인천	481	475	416	56	3
광주	291	291	255	36	-
대전	313	271	247	23	1
울산	160	158	136	22	-
경기	1,898	1,753	1,427	323	3
강원	550	521	433	80	8
충북	432	412	331	79	2
충남	660	646	572	73	1
전북	736	710	647	62	1
전남	955	922	682	238	2
경북	961	905	752	150	3
경남	890	879	725	135	19
제주	144	131	85	46	-

출처 :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4-3.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규모 - 연도별 : 2012-2014

(단위: 명)

구분		계	2011년 ¹⁾	3개년 계획			
				계	2012년 (50%)	2013년 (30%)	2014년 (20%)
계		7,000	1,060	5,940	3,000	1,800	1,140
복지직 신규 충원	소계	5,200	1,060	4,140	2,100	1,300	740
	신규 충원	4,400	1,060	3,340	1,800	1,000	540
	자연 결원 충원	800	-	800	300	300	200
행정직 배치		1,800	-	1,800	900	500	400

출처 : 2012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주 1) '11년도 충원 계획 : 1,060명 = 510명(사회복지직 순증) + 550명(결원충원분, 현원 개념)

4-4. 2012년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현황

(기준: 2012.07., 단위: 명, %)

'12년도 전체			신규 복지직 ¹⁾			행정직 재배치			자연감소 대체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028	2,626	86.7	1,803	1,746	96.9	913	704	77.7	312	176	56.4

출처 : 2012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주 1) '12년 신규복지직 확충 목표 인원 1,803명 중 1,746명 임용·배치 완료. 다만, 임용포기 등으로 충원되지 못한 58명은 '13년 신규복지직 충원시 확충 예정

4-5.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종사자 수 - 연도별 : 2001-2011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2001	929	19,188
2002	941	20,464
2003	1,015	24,743
2004 ¹⁾	942	23,813
2005	1,459	29,752
2006	1,836	35,027
2007	2,296	39,781
2008	2,921	51,562
2009 ²⁾	3,770	62,183
2010	4,983	77,640
2011	5,340	85,023
장애인복지	490	13,367
아동복지 ³⁾	280	5,369
노인복지 ⁴⁾	4,469	63,439
부랑인	37	804
정신요양시설	59	1,942
결핵 및 한센	5	102

출처 :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주 1) 2004년 이후 여성복지시설 제외

주 2) 2007~2008 한부모가족 포함(남녀 구분 미상으로 계와 불일치)되었으나 2010년 여성가족부 이관으로 2009년 통계에서 한부모가족 제외

주 3) 아동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제외한 생활시설 수입

주 4)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이 제외된 생활시설 수입

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및 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복지종사자수
- 전국 및 시도별

(단위 : 명)

구분	이용시설 종사자수(A)	생활시설 종사자수(B)	전체인구수 (C)	인구10,000명당 법정 민간복지종사자수 {(A+B)/C }×10,000
전국	32,465	42,725	49,773,145	15,107
서울	6,894	4,493	10,208,302	11,155
부산	2,439	2,994	3,543,030	15,334
대구	1,157	2,042	2,489,781	12,849
인천	1,609	1,750	2,710,579	12,392
광주	2,033	1,695	1,433,640	26,004
대전	1,259	1,384	1,484,180	17,808
울산	320	647	1,114,866	8,674
경기	4,465	6,140	11,460,610	9,253
강원	1,472	2,306	1,512,870	24,972
충북	1,443	3,039	1,527,478	29,342
충남	1,739	2,843	2,037,582	22,487
전북	1,989	3,400	1,854,508	29,059
전남	2,090	2,968	1,913,004	26,44
경북	1,559	3,534	2,669,876	19,076
경남	1,763	2,492	3,250,176	13,092
제주	234	998	562,663	21,896

출처 :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요 복지통계,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7.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세부 사업명		2011 예산		2012 예산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보건복지부		564,322	83,574	724,079	95,192
방문도우미사업		14,251	1,680	14,251	1,680
노인돌봄서비스		100,217	13,573	102,733	16,224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31,612	2,750	32,296	2,75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4,467	2,145	28,312	2,543
아동안전지킴이		7,190	2,270	7,190	2,270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5,775	696	6,913	832
장애아동가족지원		48,111	3,700	56,681	3,7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5,300	19,850	134,500	19,353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5,154	24,000	309,878	35,000
의료급여 사례관리		11,854	570	—	—
지역자활센터 운영		33,939	1,580	—	—
정신보건센터운영 ¹⁾		12,065	760	—	—
장애인 일자리 지원 ²⁾	장애인복지일자리	6,048	6,500	31,087	10,800
	장애인행정도우미	18,339	3,500	—	—
	시각장애인안마(신규)	—	—	—	—
민간사회복지지원 육성,지원 (신규)		—	—	238	40

출처 : 2012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주 1) '12년부터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에서 제외

주 2) '11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 '12년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각장애인안마 사업 포함) 으로 통합 변경

4-8.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기관 종사자

(기준: 2009년, 단위: 명)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직)		10,515
사회보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1,25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40
	국민연금공단	4,8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9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14
	근로복지공단	3,348
	소 계	21,868
합계		32,383

출처 : 강혜규 외(2010). 보건복지분야 고용현황 및 창출전략, 보건복지부사회복지 관련직 고용 전망

4-9. 사회복지 관련직 고용 전망

(단위 : 천명, %)

직업명	취업자 수			증감률			증감 인원		
	2008	2013	2018	'08-'13	'13-'18	'08-'18	'08-'13	'13-'18	'08-'18
사회복지사	57	73	96	5.2	5.6	5.4	2.9	4.1	3.1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6	8	9	4.5	2.9	3.7	0.3	0.2	0.2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32	39	47	4.1	3.5	3.8	1.3	1.4	1.2
시민단체 활동가	3	3	4	4.6	3.2	3.9	0.1	0.1	0.1
보육교사	155	187	238	3.8	5	4.4	5.9	9.3	6.8
육아도우미	75	91	102	4	2.4	3.2	3	2.2	2.4

출처 : 2010년, 직업별 인력수요전망, 한국고용정보원

4-10. 사회복지시설 현황

(기준: 2011년 말, 단위: 개, 명)

구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부랑· 노숙인	결핵· 한센	지역 자활 센터	종합 사회 복지관	어린 이집
전 체 시 설	시설수	55,638	7,524	4,314	2,813	320	140	5	247	433	39,842
	종사자	409,355	104,162	14,176	27,579	3,083	1,507	91	1,859	8,263	248,635
	생활자	181,907	116,791	17,105	25,345	13,200	9,034	432	-	-	-
생 활 시 설	시설수	5,576	4,493 ¹⁾	317 ²⁾	490 ³⁾	219	52	5	-	-	-
	정원	224,331	142,755	24,153	29,419	16,531	10,498	975	-	-	-
	현원	181,907	116,791	17,105	25,345	13,200	9,034	432	-	-	-
	종사자	86,593	64,143	5,504	13,367	2,518	970	91	-	-	-
이 용 시 설	시설수	50,062	3,031 ⁴⁾	3,997 ⁵⁾	2,323 ⁶⁾	101	88	-	247	433	39,842
	종사자	322,762	40,019	8,672	14,212	565	537	-	1,859	8,263	248,635

출처: 2012년,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주 1) 노인생활시설: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2) 아동생활시설: 양육시설,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 제외)

주 3)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주 4) 노인이용시설: 노인재가시설, 노인복지관(*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제외)

주 5) 아동이용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주 6) 장애인이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4-11.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단위: 개)

시설 종류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주거			의료		합계	여가 복지	재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양로	공동 생활	복지 주택	요양	공동 가정		복지관		
소계	4,493	303	87	24	2,489	1,590	3,056	281	2,750	25
서울	475	21	—	11	237	206	429	41	385	3
부산	151	6	—	2	90	53	182	17	163	2
대구	184	5	—	—	71	108	133	11	121	1
인천	249	17	6	1	157	68	132	18	113	1
광주	99	3	—	—	73	23	248	9	238	1
대전	103	5	2	—	60	36	87	6	80	1
울산	44	1	1	—	32	10	56	8	47	1
경기	1,317	111	26	6	693	481	481	48	430	3
강원	242	19	11	1	131	80	132	9	121	2
충북	260	21	14	—	115	110	118	16	100	2
충남	270	17	13	—	139	101	122	13	108	1
전북	224	13	3	2	151	55	194	20	173	1
전남	292	26	4	—	156	106	297	29	266	2
경북	303	22	3	1	180	97	179	13	164	2
경남	230	14	4	—	160	52	204	17	186	1
제주	50	2	—	—	44	4	62	6	55	1
세종	—	—	—	—	—	—	—	—	—	—

출처: 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2011.12.31.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 : 2010. 4월 설치현황

4-12.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아동복지시설

(단위: 개)

시설 종류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양육	직업 훈련	보호 치료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종합	지역아동 센터	전용 시설	상담소
소계	280	242	1	10	12	12	3	4,003	3	9
서울	47	34	1	2	3	5	2	395	-	-
부산	22	19	-	1	1	1	-	192	-	-
대구	22	18	-	1	2	1	-	173	-	-
인천	11	9	-	-	-	2	-	183	1	5
광주	11	9	-	-	1	1	-	276	1	1
대전	14	12	-	1	1	-	-	146	-	-
울산	1	1	-	-	-	-	-	55	-	1
경기	30	27	-	1	-	2	-	729	-	2
강원	10	9	-	-	-	-	1	163	-	-
충북	13	11	-	1	1	-	-	201	-	-
충남	15	14	-	-	1	-	-	210	-	-
전북	16	14	-	1	1	-	-	289	-	-
전남	23	21	-	1	1	-	-	397	-	-
경북	15	15	-	-	-	-	-	254	-	-
경남	25	24	-	1	-	-	-	256	1	-
제주	5	5	-	-	-	-	-	72	-	-
세종	-	-	-	-	-	-	-	12	-	-

출처: 2012 아동복지시설 현황(2011.12.31. 기준), 개인양육시설 37개 제외.

지역아동센터 : 2012. 6월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 2009. 10월 설치현황

4-13.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

(단위: 개)

시설 종류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중증	영유아	복지관	직업 재활	지역사회 재활
소계	490	39	15	9	226	191	10	199	456	1,652
서울	43	3	3	1	13	21	2	43	106	351
부산	24	4	1	1	10	6	2	14	22	98
대구	18	3	—	—	6	8	1	6	30	63
인천	22	2	1	1	5	12	1	8	26	69
광주	15	3	1	—	9	2	—	4	15	40
대전	17	1	1	—	7	7	1	5	14	70
울산	7	—	—	1	1	5	—	3	12	42
경기	118	10	3	3	61	40	1	26	66	309
강원	24	1	1	—	12	10	—	10	33	86
충북	23	1	2	1	8	11	—	9	16	66
충남	27	—	—	—	13	14	—	12	14	65
전북	47	3	1	—	30	12	1	11	16	78
전남	22	3	1	1	13	4	—	14	15	57
경북	41	3	—	—	16	22	—	12	30	104
경남	30	2	—	—	16	11	1	17	33	122
제주	12	—	—	—	6	6	—	5	8	32
세종	—	—	—	—	—	—	—	—	—	—

출처: 2012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11.12월 말)

4-14.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정신보건, 부랑·노숙인복지시설

(단위: 개)

시설 종류	정신보건			부랑·노숙인			
	생활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 요양	사회복귀 (입소, 공동생활)	사회복귀	법인	개인	쉼터	상담 보호
소계	59	26	230	37	14	75	10
서울	3	4	82	4	6	38	5
부산	3	—	12	3	1	6	2
대구	3	—	16	1	—	5	1
인천	2	—	10	1	3	3	—
광주	4	1	6	1	—	1	—
대전	4	5	13	1	—	4	1
울산	1	—	2	—	—	1	—
경기	6	5	26	3	—	9	—
강원	—	2	3	3	—	4	—
충북	4	2	10	2	—	1	—
충남	11	3	11	1	—	1	—
전북	4	3	15	3	—	2	—
전남	4	1	2	6	1	—	—
경북	5	—	16	2	3	—	—
경남	4	—	4	4	—	—	—
제주	1	—	2	2	—	—	1
세종	—	—	—	—	—	—	—

출처: 2011년도 정신요양시설 현황(2011.12월 말), 2011년도 사회복귀시설 현황(2011.12월 말)
 부랑·노숙인복지시설 : 2011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

4-15.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기타 사회복지시설

(단위: 개)

시설 종류	복합시설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 복지관
	결핵·한센				
	한센인	중앙	광역	지역	
소계	6	1	7	247	434
서울	—	1	1	31	98
부산	—	—	1	18	52
대구	—	—	1	9	25
인천	—	—	1	11	20
광주	—	—	—	9	18
대전	—	—	—	5	21
울산	—	—	—	5	8
경기	1	—	1	32	59
강원	—	—	1	16	17
충북	—	—	—	12	12
충남	—	—	—	15	17
전북	—	—	1	18	17
전남	1	—	—	22	16
경북	3	—	—	20	15
경남	1	—	—	20	29
제주	—	—	—	4	9
세종	—	—	—	—	1

출처: 2012년 자활사업안내(2012.1.17.), 2012 전국사회복지관현황(2012.11월)

4-16. 운영법인별 종합사회복지관 수 - 연도별, 시도별 : 2002-2011

(단위: 개)

구분	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2002	360	260	64	17	19
2003	369	268	65	17	19
2004	379	274	65	18	22
2005	391	289	58	22	22
2006	397	289	61	26	23
2007	408	298	61	26	23
2008	414	298	62	26	28
2009	419	305	61	25	28
2010	425	311	60	24	30
2011	433	316	61	24	32
서울	96	76	10	10	-
부산	52	43	4	4	1
대구	25	23	2	-	-
인천	20	13	6	1	-
광주	19	16	2		1
대전	21	18	2	1	-
울산	8	4	1	-	3
경기	59	45	7	7	-
강원	16	12	-	-	4
충북	12	7	3	-	2
충남	17	10	3	-	4
전북	17	16	1	-	-
전남	16	6	9	-	1
경북	15	9	4	-	2
경남	31	11	6	1	13
제주	9	7	1	-	1
세종	-	-	-	-	-

출처: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V. 사회복지사 보수 및 근로환경

5-1. 산업평균에 따른 사회복지부문 종사자의 월평균임금 - 연도별 :
2007-2011

(단위: 만원, %)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월 평균 임금	전 산업 평균 대비
전 산업	256	100.0	264	100.0	264	100.0	281	100.0	284	100.0
사회복지 서비스업 ¹⁾	163	63.7	168	63.8	167	63.3	174	61.8	157	55.3
교육서비스업	271	106.1	273	103.5	311	118.0	315	112.1	298	104.9
사업서비스업	232	90.6	254	96.5	175	66.4	187	66.3	176	62.0
보건업	264	103.3	269	102.0	290	110.3	300	106.7	293	103.2
숙박 및 음식점업	173	67.4	182	69.1	139	52.8	146	51.9	165	58.1

출처 : 통계청, KOSIS, 각년도(07-08년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연평균)(09-11년도)

주 1)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거주복지시설업, 비거주복지시설(보육시설, 상담센터, 재해구호시설, 봉사단체 포함)업으로 구분

5-2. 사회복지 관련직 직업정보

(단위: 천명, 년, 세, %)

세부 분류명	전체종사자				
	종사자수 (천명)	평균 학력 (년)	평균 연령 (세)	여성 비율 (%)	평균 근속 년수 (년)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7.7	15.3	45.8	66.1	7.6
간병인	139.0	10.5	51.0	96.2	1.8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50.7	11.2	46.8	85.2	2.1
사회복지사	48.7	15.4	34.7	70.8	4.5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17.3	15.6	38.2	81.3	3.3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	23.0	14.1	45.2	31.6	4.7
시민 단체 활동가	2.8	15.7	46.5	41.5	9.2
보육교사	218.8	14.4	35.2	98.6	2.9
육아 도우미	111.8	9.3	54.8	97.8	2.8
기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원	18.3	14.8	43.0	64.2	5.0
전체 합계	24,053.7	12.3	43.7	41.8	8.4

출처: 한국직업정보시스템(www.work.go.kr)

5-3. 사회복지 관련직 직업정보 - 월평균소득

(단위: 천명, 만원, %)

세분류명	임금근로자 종사자		월평균소득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천명, %)		평균소득 (만원)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1.9	24.7	279.8
간병인	136.0	97.8	90.1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48.9	96.5	81.3
사회복지사	47.1	96.5	169.3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16.8	96.7	153.1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	12.1	52.5	196.9
시민 단체 활동가	2.8	100.0	221.8
보육교사	190.3	87.0	119.7
육아 도우미	51.4	46.0	72.2
기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원	15.2	83.1	156.4
전체 합계	16,709.5	69.5	202.8

출처: 한국직업정보시스템(www.work.go.kr)

5-4.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단위: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 의사
				선임	직원			
1호봉	1,927	1,695	1,585	1,532	1,484	1,303	1,397	2,290
2호봉	2,010	1,774	1,639	1,590	1,529	1,350	1,443	
3호봉	2,096	1,857	1,696	1,634	1,576	1,397	1,489	
4호봉	2,185	1,943	1,757	1,695	1,624	1,444	1,535	
5호봉	2,273	2,031	1,839	1,777	1,671	1,493	1,581	
6호봉	2,374	2,124	1,924	1,861	1,772	1,585	1,673	
7호봉	2,472	2,217	2,011	1,948	1,815	1,634	1,723	
8호봉	2,572	2,312	2,099	2,032	1,874	1,683	1,770	
9호봉	2,673	2,408	2,185	2,113	1,929	1,752	1,839	
10호봉	2,773	2,500	2,269	2,192	2,002	1,821	1,908	
11호봉	2,870	2,590	2,349	2,270	2,072	1,884	1,969	
12호봉	2,946	2,662	2,414	2,333	2,130	1,928	2,012	
13호봉	3,019	2,730	2,476	2,393	2,186	1,970	2,053	
14호봉	3,087	2,794	2,534	2,450	2,240	2,014	2,095	
15호봉	3,152	2,856	2,590	2,505	2,291	2,057	2,134	
16호봉	3,213	2,913	2,644	2,558	2,341	2,110	2,187	
17호봉	3,271	2,968	2,695	2,607	2,390	2,155	2,230	
18호봉	3,325	3,021	2,744	2,655	2,435	2,198	2,270	
19호봉	3,377	3,070	2,790	2,702	2,480	2,240	2,313	
20호봉	3,425	3,117	2,833	2,746	2,522	2,284	2,354	
21호봉	3,471	3,161	2,875	2,788	2,562	2,349	2,416	
22호봉	3,514	3,203	2,915	2,828	2,601	2,390	2,459	
23호봉	3,555	3,243	2,953	2,866	2,638	2,433	2,498	
24호봉	3,594	3,280	2,989	2,903	2,673	2,477	2,539	
25호봉	3,630	3,316	3,023	2,938	2,706	2,519	2,582	
26호봉	3,664	3,350	3,056	2,973	2,737	2,563	2,623	
27호봉	3,695	3,382	3,084	3,001	2,763	2,607	2,664	
28호봉	3,722	3,409	3,110	3,028	2,788	2,620	2,676	
29호봉	3,748	3,434	3,135	3,054	2,813	2,663	2,718	
30호봉	3,773	3,459	3,159	3,079	2,836	2,677	2,729	

출처: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5-5.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¹⁾

(단위: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 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 (보수월액) $\times 1/209 \times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출처: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주 1)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times 1/226 \times 1.5$ 적용

5-6. 복지관(사회, 노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 사회복지직¹⁾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	2,271	2,018	1,793	1,717	1,554
2	2,312	2,063	1,821	1,768	1,588
3	2,358	2,109	1,868	1,821	1,637
4	2,408	2,155	1,916	1,856	1,689
5	2,445	2,195	1,964	1,908	1,740
6	2,510	2,262	2,012	1,979	1,807
7	2,584	2,324	2,103	2,050	1,871
8	2,689	2,417	2,195	2,117	1,932
9	2,794	2,517	2,285	2,180	2,010
10	2,899	2,614	2,372	2,239	2,065
11	3,000	2,708	2,456	2,270	2,116
12	3,080	2,783	2,524	2,333	2,130
13	3,156	2,854	2,588	2,393	2,186
14	3,227	2,921	2,650	2,450	2,240
15	3,295	2,985	2,708	2,505	2,291
16	3,359	3,046	2,764	2,558	2,341
17	3,419	3,103	2,817	2,607	2,390
18	3,477	3,158	2,868	2,655	2,435
19	3,530	3,209	2,916	2,702	2,480
20	3,581	3,258	2,962	2,746	2,522
21	3,629	3,305	3,006	2,788	2,562
22	3,674	3,349	3,047	2,828	2,601
23	3,717	3,390	3,087	2,866	2,638
24	3,757	3,430	3,125	2,903	2,673
25	3,795	3,467	3,161	2,938	2,706
26	3,831	3,502	3,195	2,973	2,737
27	3,863	3,536	3,224	3,001	2,763
28	3,892	3,564	3,251	3,028	2,788
29	3,918	3,590	3,277	3,054	2,813
30	3,944	3,616	3,302	3,079	2,836

출처: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주 1)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5-7. 복지관(장애인)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 일반직

(단위 : 천원)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1	2,271	2,018	1,793	1,693	1,623	1,554
2	2,312	2,063	1,821	1,764	1,663	1,588
3	2,358	2,109	1,868	1,829	1,710	1,637
4	2,408	2,155	1,916	1,892	1,782	1,689
5	2,445	2,195	1,964	1,959	1,848	1,740
6	2,510	2,262	2,012	2,021	1,908	1,807
7	2,584	2,324	2,103	2,097	1,978	1,871
8	2,689	2,417	2,195	2,138	2,042	1,932
9	2,794	2,517	2,285	2,195	2,119	2,010
10	2,899	2,614	2,372	2,241	2,159	2,065
11	3,000	2,708	2,456	2,291	2,216	2,116
12	3,080	2,783	2,524	2,359	2,277	2,130
13	3,156	2,854	2,588	2,397	2,317	2,186
14	3,227	2,921	2,650	2,437	2,357	2,240
15	3,295	2,985	2,708	2,482	2,397	2,291
16	3,359	3,046	2,764	2,522	2,439	2,341
17	3,419	3,103	2,817	2,574	2,491	2,390
18	3,477	3,158	2,868	2,620	2,533	2,435
19	3,530	3,209	2,916	2,660	2,576	2,480
20	3,581	3,258	2,962	2,703	2,620	2,522
21	3,629	3,305	3,006	2,742	2,660	2,562
22	3,674	3,349	3,047	2,788	2,703	2,601
23	3,717	3,390	3,087	2,831	2,742	2,638
24	3,757	3,430	3,125	2,885	2,788	2,673
25	3,795	3,467	3,161	2,930	2,831	2,706
26	3,831	3,502	3,195	2,960	2,871	2,737
27	3,863	3,536	3,224	3,003	2,915	2,763
28	3,892	3,564	3,251	3,022	2,929	2,788
29	3,918	3,590	3,277	3,034	2,940	2,813
30	3,944	3,616	3,302	3,077	2,990	2,836

출처: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5-8. 2012년 복지관 직원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직원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부양의무자와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	매월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효도휴가비	직 원	지급시기마다 월봉급액의 50%	연2회 (설날, 추석)		
시간외 근무수당	직 원	$[\text{통상임금(보수월액)} \times 1/209 \times 1.5]$	매월		

출처: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5-9.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¹⁾

직책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관장
연한	만 3(4년차) 이상	만 5년(6년차) 이상	만 7년(8년차) 이상	해당사항 없음

출처: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주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에 준하여 1월, 4월, 7월, 10월 시행.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10. 2012 미국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 MSW¹⁾

(단위: US 달러 / 년)

경력	임금 수준		
	낮은 수준	중간	높은 수준
1년 미만	43,253	50,753	58,253
1~4년	47,093	55,093	63,093
5~9년	53,375	61,875	70,375
10~19년	57,354	66,354	75,354
20년 이상	59,999	69,999	79,999

출처 : NASW 인력연구센터(<http://workforce.socialworkers.org/>) 자료를 재구성

주 1) MSW(Master of social work) : Specialist, 사회복지전문가, 대학원 과정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음. 임상사회복지사(Clinical social worker)의 경우는 반드시 MSW 자격을 소유해야 함

5-11. 2012 미국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 BSW²⁾

(단위: US 달러 / 년)

경력	임금 수준		
	낮은 수준	중간	높은 수준
1년 미만	33,099	40,599	48,099
1~4년	39,412	45,162	50,912
5~9년	37,494	45,994	54,494
10~19년	41,716	50,716	59,716
20년 이상	44,132	54,132	64,132

출처 : NASW 인력연구센터(<http://workforce.socialworkers.org/>) 자료를 재구성

주 2) BSW(Bachelor of social work) : Generalist, 대학 학부과정 졸업 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에서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위

Ⅵ. 한국사회복지공제회

6-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 성별

(기준: 2012.12.31.,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분포
남자	755	44
여자	958	56
계	1,713	100

출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내부자료

6-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 연령별

(기준: 2012.12.31.,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분포
20대	199	12
30대	599	35
40대	603	35
50대	261	15
60대	51	3
계	1,713	100

출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내부자료

6-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 납입기간별

(기준: 2012.12.31.,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분포	만기이율 (복리)
5년	1,093	64	4.56
7년	77	4	4.78
10년	374	22	5.02
20년	107	6	5.49
30년	62	4	5.76
계	1,713	100	5.12

출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내부자료

6-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 직종별, 구좌별

(기준: 2012.12.31., 단위: 명, %, 만원)

구분	인원수	분포	인당 가입금액
사회복지사	1,137	66.4	80,000
보육교사	95	5.5	110,000
요양보호사	44	2.5	100,000
간호(조무)사	27	1.6	110,000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5	2.6	110,000
특수교사	10	0.6	70,000
치료사	38	2.2	50,000
직업훈련교사	27	1.6	100,000
직업재활사	3	0.2	30,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9	2.3	70,000
기타	248	14.5	90,000
합계 / 평균	1,713	100	83,636

출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내부자료

Ⅶ. 사회복지사 관련 기타 자료

7-1. 2010년 6.2 지방선거 당선 사회복지사

(단위: 명)

구분		광역 단체장	기초 의회	광역의원		기초의회		교육 감	교육 의원
				지역	비례	지역	비례		
계	528	—	12	82	23	319	90	1	1
서울	95	—	—	19	3	64	9	—	—
부산	37	—	1	3	3	21	8	1	—
대구	24	—	—	2	2	16	4	—	—
인천	15	—	1	1	—	7	5	—	1
광주	21	—	—	2	1	13	5	—	—
대전	23	—	2	4	2	13	2	—	—
울산	12	—	—	5	1	5	1	—	—
경기	98	—	2	19	4	61	2	—	—
강원	20	—	2	2	1	12	3	—	—
충북	20	—	1	4	2	11	2	—	—
충남	26	—	1	2	1	14	7	—	—
전북	29	—	—	3	1	20	5	—	—
전남	50	—	1	6	1	32	10	—	—
경북	29	—	1	6	—	15	7	—	—
경남	28	—	—	2	1	15	10	—	—
제주	2	—	—	2	—	—	—	—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7-2.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참여¹⁾

(단위: 명)

연도	합계	미 국	일 본	유 럽	호 주	캐 나 다	영 국	독 일	스 웨 덴	영 국 / 프 랑 스	호 주 / 뉴 질 랜 드	미 국 / 캐 나 다	프 랑 스	뉴 질 랜 드	일 본 / 대 만	태 국
2001	33	9	12	12	-	-	-	-	-	-	-	-	-	-	-	-
2002	72	35	12	13	6	6	-	-	-	-	-	-	-	-	-	-
2003	57	29	-	-	6	-	11	5	6	-	-	-	-	-	-	-
2004	54	17	-	-	-	-	7	12	-	6	12	-	-	-	-	-
2005	57	22	6	-	6	-	13	5	-	-	-	5	-	-	-	-
2006	63	19	-	6	7	6	19	6	-	-	-	-	-	-	-	-
2007	73	35	14	-	9	-	15	-	-	-	-	-	-	-	-	-
2008	76	17	8	-	9	-	8	14	-	-	-	-	6	6	8	-
2009	79	40	16	-	-	-	8	15	-	-	-	-	-	-	-	-
2010	69	54	-	-	-	-	8	7	-	-	-	-	-	-	-	-
2011	80	34	25	7	-	-	-	7	-	-	-	-	-	-	-	7
합계	713	311	93	38	43	12	89	71	6	6	12	5	6	6	8	7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주 1) 지도자 해외연수 149명은 제외, 방문기관은 총 826개소임.

CHAPTER

부록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 조사
설문지**



1. 시설용 설문지

2012년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 조사 설문지(시설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발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및 실태, 업무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시설용)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인용 설문지와는 별도로 시설장 및 상급관리자 또는 총무부서 담당자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누락되는 질문 없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에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조성철

문 의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전화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담당	연락처	e-mail
	연구원 유재운	070-7122-1024	aerin21@kasw.or.kr
	연구원 김효정	070-7122-1041	hyojung@kasw.or.kr

A. 시설의 특성

1-1. 시설 소재지	__ ① 서울 __ ② 부산 __ ③ 대구 __ ④ 인천 __ ⑤ 광주 __ ⑥ 대전 __ ⑦ 울산 __ ⑧ 경기 __ ⑨ 강원 __ ⑩ 충북 __ ⑪ 충남 __ ⑫ 전북 __ ⑬ 전남 __ ⑭ 경북 __ ⑮ 경남 __ ⑯ 제주 __ ⑰ 세종				
1-2. 기초단체	__ ① 시 __ ② 군 __ ③ 구				
2. 시설 관할지 ¹⁾	__ ① 서울 __ ② 부산 __ ③ 대구 __ ④ 인천 __ ⑤ 광주 __ ⑥ 대전 __ ⑦ 울산 __ ⑧ 경기 __ ⑨ 강원 __ ⑩ 충북 __ ⑪ 충남 __ ⑫ 전북 __ ⑬ 전남 __ ⑭ 경북 __ ⑮ 경남 __ ⑯ 제주 __ ⑰ 세종				
3. 생활시설 유형	__ ① 노인복지시설 __ ② 아동복지시설 __ ③ 청소년복지시설 __ ④ 장애인복지시설 __ ⑤ 영유아복지시설 __ ⑥ 정신보건복지시설 __ ⑦ 부랑·노숙인시설 __ ⑧ 기타()				
4. 주요 서비스 대상자	__ ①노인 __ ②정신장애인 __ ③장애인 __ ④아동/청소년 __ ⑤여성 __ ⑥가족 __ ⑦부랑인/노숙인 __ ⑧교정 __ ⑨저소득층 __ ⑩지역사회/주민 __ ⑪일반의료환자 __ ⑫행정/정책 __ ⑬교육/학생/연구조사 __ ⑭기타()				
5. 모법인 형태	__ ① 영리법인 __ ② 사회복지법인 __ ③ 사단법인 __ ④ 재단법인 __ ⑤ 학교법인 __ ⑥ 기타()				
6. 종사자 현황	구분	전체 종사자(A)* (A=B+C)	관리자(B) (중간관리자 이상)	실무자(C)	사회복지사**
	정규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비정규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정 원	_____명	현 원	_____명	
7. 올해 ²⁾ 예산 규모	세입 _____원 / 세출 _____원				

*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 수

** 시설에서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

1) 시설관할지와 시설소재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관할하는 시설일 수 있음.

2) 2012년 당초 예산

C.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제언

14-1. 귀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___① 예산의 부족 ___② 인력의 부족
___③ 홍보 및 자원개발의 어려움 ___④ 지역사회 또는 클라이언트와의 갈등
___⑤ 조직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___⑥ 공무원과의 관계
___⑦ 행정능력 및 관련 지식(재무관리, 인사관리 등)의 부족
___⑧ 기타 ()

14-2. 귀 시설의 직원(사회복지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___ ① 아니오
- ___ ② 예 (어려운 점: _____)

14-3. 귀 시설의 인적자원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___ ① 아니오
- ___ ② 예 (어려운 점: _____)

15. 귀 시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응답)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근로기준법 준수
-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지원
- ☐ 종사자 인건비 및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안전설비, 상해보험 가입 등)
- ☐ 종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복리후생제도 마련
- ☐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
- ☐ 기타 ()

16. 기타 제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개인용 설문지

2012년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 조사 설문지(개인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발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및 실태, 업무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개인용)의 대상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귀 시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귀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누락되는 질문 없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조성철

문 의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전화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담당	연락처	e-mail
	연구원 유재운	070-7122-1024	aerin21@kasw.or.kr
	연구원 김효정	070-7122-1041	hyojung@kasw.or.kr

A. 인적사항

1. 성별	___① 남 ___② 여	
2. 출생년월	□□□□년 □□월	
3. 혼인여부	___① 미혼 ___② 유배우 ___③ 이혼 ___④ 별거 ___⑤ 사별 ___⑥ 기타	
4. 종교	___① 불교 ___② 개신교 ___③ 천주교 ___④ 기타 ___⑤ 없음	
5. 최종학력	학교	___① 고등학교 ___② 대학(3년제이하) ___③ 대학(4년제이상) ___④ 대학원(특수·야간) 이상 ___⑤ 대학원(일반·주간) 이상
	졸업 여부	___① 재학 ___② 중퇴 ___③ 휴학 ___④ 수료 ___⑤ 졸업
6.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	___① 1급 ___② 2급 ___③ 3급
	취득 경로	___① 대학 졸업 후 무시험 1급 자격 취득 ___②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으로 1급 취득 ___③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 후 2급 자격 취득 ___④ 평생교육과정 이수 후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으로 1급 취득 ___⑤ 평생교육과정 이수 후 2급 자격 취득 ___⑥ 법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3급 취득 ___⑦ 기타()
7. 직장 내 직위	___① 시설장 ___② 상급관리자(사무국장, 부장 등) ___③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___④ 실무자	
8. 월평균 가구 총소득/지출	가구 총소득 월 _____ 만원 가구 총지출(생활비) 월 _____ 만원	

C. 근로환경

14. 현 직장 연봉액	14-1. 연봉 _____만원 (예시) 연봉 = 기본급 × 12개월 + 상여금(수당 등) (세전 총액)	
	14-2. 기본급 _____만원 + 아래의 수당(해당사항 모두 응답) ☐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장기근속수당 ☐ 가계지원비 ☐ 가계보조수당 ☐ 교통비 ☐ 급식비 ☐ 명절휴가비 ☐ 생활복지사수당 ☐ 생활지도원수당 ☐ 연장근로수당 ☐ 직무수당 ☐ 가족수당 ☐ 연월차보상수당 ☐ 체력단련비 ☐ 보육수당 ☐ 직급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여름휴가비 ☐ 법인수당 ☐ 기타수당	
15. 귀하의 업무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임금수준은?		연봉 _____만원
16. 현 직장 입사경로	____①학교/교수의 소개 및 추천 ____②친구/친지/선배 등의 소개로 ____③신문/광고(인터넷 포함)를 통해 ____④실습/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____⑤직업소개소를 통해 ____⑥기타()	
17. 입사방법	____① 공개채용(시험+면접) ____② 공개채용(면접) ____③ 추천(시험+면접) ____④ 추천(면접) ____⑤ 기타()	
18. 근무형태	18-1. ____① 주 7일제(기관 상주) ____② 주 6일제 ____③ 격주제(격주 토요일근무) ____④ 주 5일제(월1회 토요일근무) ____⑤ 주 5일제 ____⑥ 기타()	
	18-2. ____① 2교대 ____② 3교대 ____③ 해당 없음	
19. 고용형태	____① 정규직 ____② 비정규직	
20. 슈퍼비전	빈도	____① 매일 ____② 3~4일에 한 번 ____③ 일주일에 한 번 ____④ 한 달에 한 번 ____⑤ 불규칙적 ____⑥ 없음 ____⑦ 기타()
	유형	____① 개별(상사) ____② 집단(case conference 등) ____③ 동료 ____④ 모두 해당 ____⑤ 기타()

21. 귀하의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주시요.					
문 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가. 임금수준의 적정성	☐	☐	☐	☐	☐
나. 복리후생제도의 충분성	☐	☐	☐	☐	☐
다.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	☐	☐	☐	☐	☐
라.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지원	☐	☐	☐	☐	☐
마. 직장상사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	☐	☐	☐	☐
바. 동료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	☐	☐	☐	☐
사. 유관기관 종사자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	☐	☐	☐	☐
아. 조직의 발전전망 및 비전	☐	☐	☐	☐	☐
자. 승진가능성 등 개인의 발전 전망	☐	☐	☐	☐	☐
차.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	☐	☐	☐	☐
카. 수퍼비전 및 지도감독	☐	☐	☐	☐	☐
타. 근무시간의 적절성	☐	☐	☐	☐	☐
파. 업무내용의 만족성	☐	☐	☐	☐	☐

D. 건강상태

22. 주관적 건강 상태	___① 매우 건강하다 ___② 건강한 편이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___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23. 지난 한달 동안 아래의 문항들에 대한 귀하의 상태에 대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상당히 자주 있었다
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혼란스러웠던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	☐	☐	☐
나. 생활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신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	☐	☐	☐
다. 신경질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	☐	☐	☐
라.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는데 능숙하게 잘 처리한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	☐	☐	☐
마.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간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	☐	☐	☐
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	☐	☐	☐
사.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화(짜증)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	☐	☐	☐
아.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간다고 느끼신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	☐	☐	☐
자.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로 화(분노)가 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	☐	☐	☐
차. 자신이 극복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	☐	☐	☐	☐

24.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는 칸에 표시해주시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 나는 내 친구나 동료에게 너그럽다	☐	☐	☐	☐
나.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	☐	☐	☐
다.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	☐	☐	☐
라.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	☐	☐	☐
마.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	☐	☐	☐
바.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	☐	☐	☐
사.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다른 여러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	☐	☐	☐
아.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	☐	☐	☐
자.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	☐	☐	☐
차.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	☐	☐	☐
카.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	☐	☐
타. 나의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로 가득하다.	☐	☐	☐	☐
파.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	☐	☐	☐
하.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	☐	☐	☐

25. 귀하가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도 질문입니다.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주시시오.

나는 매우 불행하다					←————→		나는 매우 행복하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E. 업무소진 및 이직

26. 각 문항을 읽고 이러한 느낌들을 귀하가 업무에서 얼마나 자주 느끼시는지 아래의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0	1	2	3	4	5	6				
전혀 없다	일 년에 한두 번 혹은 그 이하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 이하	한 달에 몇 번	일주일 에 한 번	일주일 에 몇 번	매일				
문 항				0	1	2	3	4	5	6
가. 나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 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다룬다.										
라. 나는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진다.										
마. 직업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바. 사회복지를 선택한 후로, 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										
사. 직업으로 인해 내가 감정적으로 무뎌질까봐 걱정이다.										
아. 내가 매우 활동적이라고 느낀다.										
자.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차.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카. 클라이언트와 친밀하게 일하고 나면 매우 흐뭇해진다.										
타. 내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성취해왔다.										
파. 일을 할 때 나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하. 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문제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낀다.										

F.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29. 귀하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귀하의 전문성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주시시오.

전문성
낮음

←

→

전문성
높음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

30.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매우 그렇지 않다 ___② 그렇지 않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그렇다 ___⑤ 매우 그렇다

3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등급 구분 없이 국가시험 통한 단일자격제도)

②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도입(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등)

③ 현장실습교육의 강화

④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강화

⑤ 사회복지교육인증제 도입

⑥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⑦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강화

⑧ 대국민 인식 개선

⑨ 기타 ()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발 행 일 2012년 12월

발 행 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전화 02-786-0845~7 / 팩스 02-786-0191

홈페이지 <http://www.welfare.net>

후 원 보건복지부

